

| |
|--------|
| 발간등록번호 |
| |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의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2. 8

보 건 복 지 부
육아정책연구소

| |
|--------|
| 발간등록번호 |
| |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의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서 문 희(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양 미 선(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 미 화(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 혜 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육아정책연구소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의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 | |
|------------------------------------|------------|
| 요 약 | 10 |
| I. 서론 | 17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
| 2. 연구 내용 | 18 |
| 3. 연구 방법 | 19 |
| 4. 선행연구 | 21 |
| II. 어린이집 보육비용 지원 현황 | 23 |
| 1. 중앙정부 지원 제도 | 23 |
| 2. 시도 특수보육시책 지원 현황 | 34 |
| III. 어린이집 운영 특성 | 56 |
| 1. 어린이집 정원과 정원 충족률 | 56 |
| 2. 어린이집 반 운영 | 57 |
| IV. 어린이집 재정 운영 실태 분석 | 63 |
| 1. 20~27인 | 63 |
| 2. 39인 | 70 |
| 3. 49인 | 70 |
| 4. 79인 | 89 |
| 5. 99인 | 96 |
| V. 어린이집 모형별 수입과 지출 구조 | 103 |
| 1.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모형별 수입과 지출 | 103 |

| | |
|-------------------------------|------------|
| 2. 민간·가정어린이집 모형별 수입 | 124 |
| 3. 영아전담어린이집 모형별 수입과 지출 | 133 |
| 4.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모형별 수입과 지출 | 137 |
| 5. 공공형어린이집 모형별 수입과 지출 | 144 |
| 6. 농어촌어린이집 모형별 수입과 지출 | 152 |
| 7. 지방정부시책별 차이 | 157 |
| 8. 지역규모별 차이 | 159 |
| VI. 정책 대안 검토 | 161 |
| 1. 기본 방향 | 161 |
| 2. 인건비 지원 비율 조정 가능성 검토 | 161 |
| 3. 기타 정책적 대안 | 175 |
| 4. 맺는 말 | 176 |
| 참고문헌 | 178 |

표 차례

| | |
|--|----|
| 〈표 II-1-1〉 1999년 표준보육단가 항목별 구성비율 | 19 |
| 〈표 II-1-2〉 최근 연도별 지원단가 | 19 |
| 〈표 II-1-3〉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2012 | 20 |
| 〈표 II-1-4〉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 23 |
| 〈표 II-1-5〉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기준 | 24 |
| 〈표 II-1-6〉 직장보육시설 주당 근로시간 대비 인건비 보조금 | 25 |
| 〈표 II-1-7〉 보육비용 구성 | 26 |
| 〈표 II-2-1〉 사업유형별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2012년 | 30 |
| 〈표 II-3-1〉 사립기관 운영 재원(2010) | 50 |
| 〈표 III-1-1〉 다빈도 정원 비율 및 평균 | 51 |
| 〈표 III-1-2〉 현원 비율 | 52 |
| 〈표 III-1-3〉 지역규모별 정원충족률 | 53 |
| 〈표 III-1-4〉 39인 이하 어린이집 반 구성 | 54 |
| 〈표 III-1-5〉 49인 이상 어린이집 반 구성 | 56 |
| 〈표 IV-1-1〉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국공립(20인 영아전담) | 58 |
| 〈표 IV-1-2〉 어린이집 수입 비율: 국공립(20인 영아전담) | 59 |
| 〈표 IV-1-3〉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국공립(20인 영아전담) | 59 |
| 〈표 IV-1-4〉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20인 영아전담) | 59 |
| 〈표 IV-1-5〉 어린이집 운영 현황: 가정(20인) | 60 |
| 〈표 IV-1-6〉 어린이집 수입 비율: 가정(20인) | 61 |
| 〈표 IV-1-7〉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가정(20인) | 61 |
| 〈표 IV-1-8〉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가정(20인) | 62 |
| 〈표 IV-1-9〉 어린이집 운영 현황: 민간개인(27인) | 63 |
| 〈표 IV-1-10〉 어린이집 수입 비율: 민간(27인) | 63 |
| 〈표 IV-1-11〉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민간(27인) | 64 |
| 〈표 IV-1-12〉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민간(27인) | 64 |
| 〈표 IV-2-1〉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국공립(39인) | 65 |
| 〈표 IV-2-2〉 어린이집 수입 비율: 국공립(39인) | 66 |

| | |
|--|----|
| 〈표 IV-2-3〉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국공립(39인) | 66 |
| 〈표 IV-2-4〉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39인) | 67 |
| 〈표 IV-2-5〉 어린이집 운영 현황: 법인(39~40인) | 68 |
| 〈표 IV-2-6〉 어린이집 수입 비율: 법인(39~40인) | 68 |
| 〈표 IV-2-7〉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법인(39~40인) | 69 |
| 〈표 IV-2-8〉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법인(39~40인) | 69 |
| 〈표 IV-2-9〉 어린이집 운영 현황: 민간개인(39인) | 70 |
| 〈표 IV-2-10〉 어린이집 수입 비율: 민간(39인) | 71 |
| 〈표 IV-2-11〉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민간(39인) | 71 |
| 〈표 IV-2-12〉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민간(39인) | 72 |
| 〈표 IV-2-13〉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국공립 영아전담(39~40인) | 73 |
| 〈표 IV-2-14〉 어린이집 수입 비율: 국공립 영아전담(39~40인) | 73 |
| 〈표 IV-2-15〉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국공립 영아전담(39~40인) | 73 |
| 〈표 IV-2-16〉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 영아전담(39~40인) | 74 |
| 〈표 IV-3-1〉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국공립(49인) | 75 |
| 〈표 IV-3-2〉 어린이집 수입 비율: 국공립(49인) | 75 |
| 〈표 IV-3-3〉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49인) | 76 |
| 〈표 IV-3-4〉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49인) | 76 |
| 〈표 IV-3-5〉 어린이집 운영 현황: 법인(49인) | 77 |
| 〈표 IV-3-6〉 어린이집 수입 비율: 법인(49인) | 77 |
| 〈표 IV-3-7〉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법인(49인) | 78 |
| 〈표 IV-3-8〉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법인(49인) | 78 |
| 〈표 IV-3-9〉 어린이집 운영 현황: 민간개인(49인) | 79 |
| 〈표 IV-3-10〉 어린이집 수입 비율: 민간개인(49인) | 80 |
| 〈표 IV-3-11〉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민간개인(49인) | 80 |
| 〈표 IV-3-12〉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민간개인(49인) | 81 |
| 〈표 IV-3-13〉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국공립 영아전담(49~50인) | 82 |
| 〈표 IV-3-14〉 어린이집 수입 비율: 국공립 영아전담(49~50인) | 82 |
| 〈표 IV-3-15〉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국공립 영아전담(49~50인) | 82 |
| 〈표 IV-3-16〉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 영아전담(49~50인) | 83 |
| 〈표 IV-4-1〉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국공립(79인) | 84 |

| | |
|---|-----|
| 〈표 IV-4-2〉 어린이집 수입 비율: 국공립(79인) | 85 |
| 〈표 IV-4-3〉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79인) | 85 |
| 〈표 IV-4-4〉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79인) | 85 |
| 〈표 IV-4-5〉 어린이집 운영 현황: 법인(79~80인) | 86 |
| 〈표 IV-4-6〉 어린이집 수입 비율: 법인(79~80인) | 87 |
| 〈표 IV-4-7〉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법인(79~80인) | 87 |
| 〈표 IV-4-8〉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법인(79~80인) | 88 |
| 〈표 IV-4-9〉 어린이집 운영 현황: 민간개인(79~80인) | 89 |
| 〈표 IV-4-10〉 어린이집 수입 비율: 민간개인(79~80인) | 89 |
| 〈표 IV-4-11〉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민간개인(79~90인) | 89 |
| 〈표 IV-4-12〉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민간개인(79~80인) · 90 | |
| 〈표 IV-5-1〉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국공립(99인) | 91 |
| 〈표 IV-5-2〉 어린이집 수입 비율: 국공립(99인) | 92 |
| 〈표 IV-5-3〉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99인) | 92 |
| 〈표 IV-5-4〉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99인) | 92 |
| 〈표 IV-5-5〉 어린이집 운영 현황: 법인(99인) | 93 |
| 〈표 IV-5-6〉 어린이집 수입 비율: 법인(99인) | 94 |
| 〈표 IV-5-7〉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법인(99인) | 94 |
| 〈표 IV-5-8〉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법인(99인) | 95 |
| 〈표 IV-5-9〉 어린이집 운영 현황: 민간개인(99인) | 96 |
| 〈표 IV-5-10〉 어린이집 수입 비율: 민간개인(99인) | 96 |
| 〈표 IV-5-11〉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민간개인(99인) | 96 |
| 〈표 IV-5-12〉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민간개인(99인) | 97 |
| 〈표 V-1-1〉 소규모 어린이집 반 구성 기본가정 | 99 |
| 〈표 V-1-2〉 49인 이상 어린이집 반 구성 기본가정 | 99 |
| 〈표 V-1-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인건비 운영 모형 | 100 |
| 〈표 V-1-4〉 20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지출 구조 : 누리과정 미적용 | 101 |
| 〈표 V-1-5〉 27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지출 구조 : 누리과정 미적용 및 3~5세 누리과정 적용 | 103 |
| 〈표 V-1-6〉 3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지출 구조 | |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및 3-5세 누리과정 적용 | 105 |
| 〈표 V-1-7〉 | 4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지출 구조 : 누리과정 미적용 및 3~5세 누리과정 적용 | 107 |
| 〈표 V-1-8〉 | 7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지출 구조 : 누리과정 미적용 및 적용 | 109 |
| 〈표 V-1-9〉 | 9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 누리과정 미적용 및 적용 | 111 |
| 〈표 V-1-10〉 | 131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지출 구조 : 누리과정 미적용 및 적용 | 113 |
| 〈표 V-1-11〉 | 150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지출 구조 : 누리과정 미 적용 및 적용 | 115 |
| 〈표 V-1-12〉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누리지원금 규모 | 118 |
| 〈표 V-2-1〉 |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건비 운영 모형 | 119 |
| 〈표 V-2-2〉 | 20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 구조 | 120 |
| 〈표 V-2-3〉 | 27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 구조 | 121 |
| 〈표 V-2-4〉 | 39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 구조 | 121 |
| 〈표 V-2-5〉 | 49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 구조 | 122 |
| 〈표 V-2-6〉 | 79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 구조 | 123 |
| 〈표 V-2-7〉 | 99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 적용과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 구조 .. | 124 |
| 〈표 V-2-8〉 | 131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 구조 | 125 |
| 〈표 V-2-9〉 | 150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 구조 | 126 |
| 〈표 V-2-10〉 | 민간개인 어린이집 기본수입 대비; 누리지원금 규모 | 127 |
| 〈표 V-2-11〉 | 어린이집 규모, 정원충족률 및 누리과정 도입별 수입구조 비교 · | 127 |
| 〈표 V-3-1〉 | 영아전담어린이집 규모 | 129 |
| 〈표 V-3-2〉 | 민간·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 다 빈도 정원 | 129 |
| 〈표 V-3-3〉 | 소규모 어린이집 반 구성 기본 가정 | 130 |
| 〈표 V-3-4〉 | 민간·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 인건비 운영 모형 | 131 |
| 〈표 V-3-5〉 | 20인 민간·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 131 |
| 〈표 V-3-6〉 | 39인 민간·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 132 |
| 〈표 V-4-1〉 | 장애아전담어린이집 규모 | 133 |
| 〈표 V-4-2〉 |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반 수 | 133 |

| | |
|---|-----|
| 〈표 V-4-3〉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반 구성 기본 가정: 2012년 5세 누리과정 | 134 |
| 〈표 V-4-4〉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 모형 | 134 |
| 〈표 V-4-5〉 39인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 135 |
| 〈표 V-4-6〉 48인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 137 |
| 〈표 V-4-7〉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누리지원금 규모 | 138 |
| 〈표 V-5-1〉 공공형어린이집 규모 | 139 |
| 〈표 V-5-2〉 공공형어린이집 반 구성 기본 가정(민간과 동일) | 140 |
| 〈표 V-5-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기준 | 141 |
| 〈표 V-5-4〉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운영 모형 | 141 |
| 〈표 V-5-5〉 20인 공공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 141 |
| 〈표 V-5-6〉 39인 공공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 142 |
| 〈표 V-5-7〉 49인 공공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 143 |
| 〈표 V-5-8〉 79인 공공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 144 |
| 〈표 V-5-9〉 99인 공공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 145 |
| 〈표 V-5-10〉 공공형어린이집 누리지원금 규모 | 146 |
| 〈표 V-6-1〉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인건비 운영 모형 | 147 |
| 〈표 V-6-2〉 79인 농어촌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 148 |
| 〈표 V-6-3〉 99인 농어촌어린이집 누리과정 적용과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 150 |
| 〈표 V-6-4〉 농어촌어린이집 누리지원금 규모 | 151 |
| 〈표 V-7-1〉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 중 일반 운영비 지원 사례 | 153 |
| 〈표 V-8-1〉 1999년 표준보육비용 산출시 운영비 내역별 비율 | 154 |
| 〈표 V-8-2〉 2004년 보육시설 규모별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 구성 | 154 |
| 〈표 VI-2-1〉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규모별 각 기준 대비 3-5세 누리지원금 비율: 2012년 수준 | 157 |
| 〈표 VI-2-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시설규모 및 정원충족률별 3-5세 누리과정 도입 시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 159 |
| 〈표 VI-2-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규모 및 정원충족률별 운영비 부족 정도: 39인 이하 | 159 |
| 〈표 VI-2-4〉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규모 및 정원충족률별 운영비 부족 정도: 49인 이상 | 160 |
| 〈표 VI-2-5〉 어린이집 규모, 정원충족률 및 누리과정 도입별 수입구조 비교 | 162 |

| | |
|---|-----|
| 〈표 VI-2-6〉 39인 이하 어린이집 규모 및 누리과정 도입별 지출구조 정원충족률 100% …… | 163 |
| 〈표 VI-2-7〉 49인 이상 어린이집 규모 및 누리과정 도입별 지출구조 정원충족률 100% …… | 164 |
| 〈표 VI-2-8〉 39인 이하 어린이집 규모 및 누리과정 도입별 지출구조 정원충족률 85% …… | 166 |
| 〈표 VI-2-9〉 49인 이상 어린이집 규모 및 누리과정 도입별 지출구조 정원충족률 85% …… | 168 |

그림 차례

| | |
|---|-----|
| [그림 IV-1-1] 인건비 지출 비율: 국공립(20인 영아전담) | 65 |
| [그림 IV-1-2] 인건비 지출 비율: 가정(20인) | 67 |
| [그림 IV-1-3] 인건비 지출: 민간개인(27인) | 69 |
| [그림 IV-2-1] 인건비 지출: 국공립(39인) | 72 |
| [그림 IV-2-2] 인건비 지출: 법인(39~40인) | 75 |
| [그림 IV-2-3] 인건비 지출: 민간개인(39인) | 77 |
| [그림 IV-2-4] 인건비 지출: 국공립 영아전담(39~40인) | 79 |
| [그림 IV-3-1] 인건비 지출: 국공립(49인) | 81 |
| [그림 IV-3-2] 인건비 지출: 법인(49인) | 83 |
| [그림 IV-3-3] 인건비 지출: 민간개인(49인) | 86 |
| [그림 IV-3-4] 인건비 지출: 국공립 영아전담(49~50인) | 88 |
| [그림 IV-4-1] 인건비 지출: 국공립(79인) | 91 |
| [그림 IV-4-2] 인건비 지출 비율: 법인(79~80인) | 93 |
| [그림 IV-4-3] 인건비 지출 비율: 민간개인(79~80인) | 95 |
| [그림 IV-5-1] 인건비 지출 비율: 민간개인(99인) | 98 |
| [그림 IV-5-2] 인건비 지출 비율: 법인(99인) | 100 |
| [그림 IV-5-3] 인건비 지출 비율: 민간개인(99인) | 102 |
| [그림 V-1-1] 20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 구조 누리과정 미적용 | 107 |
| [그림 V-1-2] 27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 구조 3~5세 누리과정 적용 | 108 |
| [그림 V-1-3] 3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 구조 3~5세 누리과정 적용 | 110 |
| [그림 V-1-4] 4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 구조 3~5세 누리과정 적용 | 112 |
| [그림 V-1-5] 7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 구조 3~5세 누리과정 적용 | 115 |
| [그림 V-1-6] 9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 구조 3~5세 누리과정 적용 | 117 |
| [그림 V-1-7] 131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 구조 3~5세 누리과정 적용 | 119 |
| [그림 V-1-8] 150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 구조 3~5세 누리과정 적용 | 121 |
| [그림 V-8-1] 보육시설 규모별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 구성 | 160 |
| [그림 VI-2-1]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규모별 각 기준 대비 3~5세 누리지원금 유아 반 인건비 지원금 대비 비율 | 162 |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누리과정 추진과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가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의 시설보조금을 통한 보육비용 지원 근거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사업 기준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적정규모 도출 및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정책 현황을 검토함
 - 어린이집 운영 유형을 분석하여 어린이집 규모별로 연령별 반 운영 형태를 분류하고 본 연구를 위한 분석 모형을 설정함.
 - 인건비 지원 여부별 어린이집 실제 재정 운영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재정 운영상 차이를 파악함
 - 어린이집 운영 분석 유형에 따라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원의 증가로 인한 재정 상태의 변화를 분석함.
 - 인건비 지원정책 관련 대안을 모색함

다. 연구 방법

-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및 국·내외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정책 현황을 분석함.
- 보육비용 지원 외국 사례 검토

- 보육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유형별로 다빈도 정원 및 연령 반 구성모형을 탐색하여 분석의 기준이 되는 어린이집 기본 모형을 설정함.
- 어린이집 100여곳의 재정 운영 실태 분석함
- 3~5세 누리과정 및 0~2세 무상보육 실시를 가정하여 모형별 시뮬레이션 실시함.
 - 각 조건별로 수입을 산출하고, 수입 증가의 추이를 파악하였으며, 인건비 지출 수준을 고정시킨 채 지출 항목별 비중을 제시하였음.
- 보육 서비스 이용 보호자, 보육교사, 담당 지자체 공무원, 시설장등 전문가 회의로 의견을 수렴하였음.

2. 어린이집 재정 운영 현황 자료 분석

- 2012년 4월 기준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재정 자료를 어린이집 정원, 유형, 지역 규모별로 추출하여 수입 비율과 인건비 지출 비율을 분석함.
- 정원 20명의 영아전담 국공립어린이집은 수입의 95% 이상을 보육료와 보조금으로 충당함. 이들 수입의 68% 정도를 기본급여로 지출함.
 - 정원 20명의 가정어린이집과 27명의 민간개인어린이집은 총 수입의 90% 이상을 보육료와 보조금으로 충당함. 보육료와 총 보조금 대비 기본급여 지출 비율은 40~50% 적정수준 이하임.
- 정원 39명의 4~5개반을 운영하는 국공립과 영아전담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은 보육료와 보조금이 총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함.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급여 비율은 국공립 65%, 영아전담 70%, 법인 80%대로 39인 정부 지원시설 중 법인어린이집의 재정구조가 가장 불안정함.
 - 민간개인어린이집은 총 수입의 70~90%가 보육료와 보조금 수입임. 필요경비 등 기타수입으로 편차가 큼. 보육료와 총 보조금 대비 기본급여는 50~60%로 인건비가 적정 수준 이하로 지출되고 있음.
- 총 5개반 49명 정원의 국공립, 영아전담 국공립, 법인, 민간개인어린이집은 수입의 80~90% 이상을 보육료와 보조금으로 충당함.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보조금 대비 기본급여 비율이 65%대로 재정구조가 안정적임.

- 민간개인어린이집은 55~75% 정도로 필요경비 등의 기타수입으로 인건비 비율의 편차가 큼.
- 79명 정원, 총 7개반을 운영하는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의 보육료와 보조금 수입은 총 수입의 70~90% 정도임. 보육료와 총 보조금 대비 기본급여 비율은 국공립 50~65%, 법인 60%로 비슷한 수준임.
 - 민간개인어린이집은 총 수입의 80~90%가 보육료와 보조금 수입임. 보육료와 총 보조금 대비 기본급여는 40~60%대로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보다 낮음.
- 정원 99명의 총 8개반을 운영하는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은 총 수입의 80% 정도를 보육료와 보조금으로 충당함. 이들 수입의 60~70%를 기본급여로 지출함.
 - 민간개인어린이집은 수입의 70~80%를 보육료와 보조금으로 충당함. 나머지는 필요경비 등으로 보완함. 보육료와 총 보조금 대비 기본급여 비율은 65% 이하로 국공립, 법인어린이집보다 10%p 이상 낮음.

3. 어린이집 모형별 수입·지출 구조 분석

- 다빈도 정원별로 반 모형을 설정하여 가정한 유형별 어린이집의 수입, 지출 분석 결과를 2012년 기준으로 3~5세 누리과정 도입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음.
 - 국공립어린이집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시 79인 기준으로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2012년 단가 기준으로 정원충족률에 따라 수입의 8~6.5%가 증가하는데, 이는 유아반 인건비 지원금 대비 134~80%가 됨.
 - 민간·가정어린이집은 49인 기준으로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2012년 단가 기준으로 수입의 8~9%가 증가함. 그러나 수입액의 국공립어린이집 수입액 대비 비율이 정원충족률에 따라 75%~59%에 불과함.
 - 어린이집 규모가 커지면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수입 차액이 줄어들음.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 100%시 수입의 53%가 인건비 지원금이고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의 비율은 49% 수준임.
 -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 100%시 수입의 70% 이상이 인건비 지원금이고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의 비율은 87% 수준임. 3~5세 누리과정 도입시 유아

반 인건비 대비 보조금 비율은 8%에 불과함.

- 공공형 어린이집은 3~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 49인 기준으로 정원충족률 100% 적용시 총 승비는 7% 정도 증가하는데, 공공형 지원액이 총 수입의 13% 정도이고 누리과정 지원금은 7% 정도임. 누리과정 지원금의 공공형 지원금 대비 비율은 54%임..
- 농어촌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은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79인 기준으로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2012년 단가 기준으로 정원충족률에 따라 수입의 8~6%가 증가하는데, 이는 정원충족률에 따라 전체 인건비 보조금의 19~11%, 유아반 인건비 지원금 대비 83~50%가 됨.
- 지역별 특수시책으로 인한 재정 증가는 전체적으로 약 1조원 정도이지만 운영비 지원의 비중은 높지 않아서 인건비 조정에 반영하기 어려움.
 - 전체적으로는 국고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임.
- 지역규모별 차이는 농어촌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의 차이로 귀결되므로 인건비 추가지원 대상 규모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4. 정책 대안 검토

가. 인건비 지원 조정 대상

- 3~5세 누리과정 지원금이 2012년 지원 기준으로도 반 구성에 따라 13%까지 수입 증가를 가져옴.
 -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대비 비율이 대규모 어린이집은 정원 100%시 150%까지 달함.
- 인건비 지원 비율 감축을 고려할 경우에는 영아반 인건비 조정은 적절하지 않고, 유아반 인건비 지원 비율만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현재 표준보육비용 단가는 각 반이 독립 재정 방식으로 구성한 하였으며,
 -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수입 구조에 영향을 안 받는 영아반 보육하는 어린이 집도 상당수이기 때문임.

나. 인건비 지원 조정 수준

- 평균 정원 대비 현원비율이 85% 이상인 수준인 경우에는 유아반 인건비 대비 수입 증가가 80~112%임. 즉, 27인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유아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누리과정 지원 이전의 수입 수준은 보장됨
 - 소규모 어린이집을 고려하고 교재교구비 구입으로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감안하여도 인건비 지원 비율을 50%를 낮춘 15% 정도로의 조정은 가능함.
- 정원 충족률이 60% 수준으로 낮은 어린이집은 유아반 인건비 지원금의 50~70%의 수입 증가가 있으므로 1/3를 낮춘 20% 정도의 인건비 지원으로도 수입구조상으로는 종전보다 낮아지지 않음.
 - 정원 충족률이 높은 어린이집과는 차등화된 정책이 필요함.
- 누리과정 보육료가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현재 지원 수준의 50%까지 증가될 예정이므로 이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재고가 필요함.

다. 정원충족률 낮은 어린이집 차등 지원 방안

- 낮은 정원충족률로 부족한 운영비는 인건비 지원 비율 자체의 조정보다는 총액 대비 적정 비율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는 영아반과 유아반의 구성을 반영하여 산정함.
 - 현재 인건비는 영아는 80%, 유아는 30%를 지원하는데 각 어린이집별로 반 구성이 다르므로 운영비 부족분을 일률적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그러면 영아는 100%를 넘는 경우도 발생하고 유아반 인건비 비율로만 조정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음.
 - 1인당으로 산출한 운영비 부족분은 정원 충족률 85%에서는 정원 150인이 되어야 200만원 정도이고, 정원 충족률 60%가 되면 정상적 운영에 비하여 200만원~500만원이 부족함.
- 대안으로 놓어준 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시설규모별로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함.

- 소규모 어린이집은 1인,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100인 미만까지는 2인, 그 이상은 3인 등으로 그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함.
-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는 교사 중 1인 인건비 100% 지원으로, 실제로 교사 인건비의 70%를 더 지원하는 셈이며, 액수로는 7호봉을 적용하면 122만원 정도가 됨.

라.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기준

-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의 인건비 기준선을 1호봉 이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고, 그 이하를 적절한 가이드라인으로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특별활동 등의 부가적 수입이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언급하는 것 역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민간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39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39인은 영아반이 4반, 유아반이 1반으로 총 5반으로 가정했을 때, 총 수입을 비교를 해보면 국공립 대비 비율이 누리과정 미적용, 5세누리, 3-5세 누리과정 적용시 모두 정원 대비 현원율이 100%이면 71~72%, 85%이면 65% 내외이고 60% 수준을 낮아지면 50% 아래로 차이가 난다.
 - 정원충족률이 100%이어도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는 국공립 대비 70% 수준으로 밖에는 지출할 수 없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기준 7호봉 월 지급액이 1,748,950원의 70%는 1,224,265원으로 1호봉인 1,392,280원에 미치지 못함.
- 2016년 누리과정 지원 수준이 30만원으로 증가한다면 이때는 인건비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마. 기타 어린이집 관련

- 공공형 어린이집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시 지원시 공공형 지원금의 약 54% 정도를 차지하므로 이 정도의 수입 증가가 발생하므로 공공형 지원금 수준 조정이 가능함.
- 농어촌 어린이집의 문제는 정원충족률의 차이로 귀결되므로 인건비 추가지원 대상 규모로 조정함.

바. 누리지원금을 활용한 보조교사의 배치

- 앞에서는 단순하게 누리과정으로 증가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 조정을 검토하였으나, 그러나 그보다는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출의 증가에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
- 가장 적절한 방법은 보육교사의 추가 배치임. 누리 지원금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형편에 따라 종일제 또는 단시간제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교재교구 구입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임.
 - 서울시는 월 70만원 추가 지원하면서 단시간 보조교사 채용을 권장하고 있음.

사. 인건비 지원 비율 산정 방법 개선안

- 현재 영아반교사는 80%, 유아반교사는 30%를 지원하므로 호봉이 높은 교사가 영아반을 담당하게 되는데, 누리과정 도입으로 경력이 높은 교사를 누리과정 교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번 방향에 부응하지 못함.
- 개선방안은 제1안은 호봉수가 높은 순서대로 80%를 영아반 수만큼 지원하고 그 나머지 유아반 수만큼은 30%를 지원하는 방안임. 이 경우 각각의 교사가 자신의 인건비가 몇% 지원되는 알기 때문에 문제발생 소지는 있음.
- 제2안은 영아반과 유아반 교사 수에 각 지원 비율을 곱하여 평균 지원 비율을 자동으로 산정하여 총 인건비 대비 이 평균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 어린이집의 반 구성마다 적용 비율이 달라지지만 행정상 문제 없으며, 교사들 간의 갈등 소지 사라짐.

5. 맺는 말

- 증가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은 현재로서는 인건비 지원시설의 인건비 감축보다는 인건비 지원시설의 서비스의 질 제고에 활용하고, 2016년 누리과정 기준 단가 30만원으로 증가 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2년부터 5세 누리과정 및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3, 4세로 확대될 예정이다. 만5세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 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며, 2013년에 3,4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지원 단가도 만5세아 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증가될 예정이다. 2012년 0~2세아 보육료는 전액 지원되지만 지원 단가는 변동 없다.

누리과정 시행으로 오후반 비로 월 7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이중 일부를 교사 수당으로 사용하고 그 이외 비용은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여 어린이집에 운영비로 지원된다. 즉, 교육청에서 만5세아 당 7만원을 곱한 금액을 시·도로 배분하면 시도에서는 만 5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시·군·구별로 취합하여 산출, 이를 배분된 비용 총액에서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시·도에 있는 전체 만 5세아 수로 나누어 만5세 1인당 지원 금액을 산출하여 아동 1인당 지원 금액을 어린이집에 지급된다. 교사 처우개선비는 단독 연령반은 교사당 월 30만원이고, 연령 혼합반 교사는 월 20만원이므로 어린이집별로 만 5세 아동당 4~5만원 지급되는 것이고, 이를 5세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로 명명하고 있다.

이 운영비는 5세 누리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식비 등 연령별 사용 구분이 어려운 경우, 연령 구분하지 않고 급식비 등 항목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누리과정이 3, 4세로 확대되면 유아 전체 아동 대비 4~5만원이 운영비로 추가 지원되는 것인데, 지원 단가 상승으로 이 비용도 점차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추가 지원은 인건비 지원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존에 지원되는 인건비에 추가적인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져 중복 지원의 소지가 있다. 현재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건비 지원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인건비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경우, 인건비 지원 시설은 이중 지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건비 지원 시설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영유아 보육

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정책 요구가 늘어나면서 취약보육 인건비,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인건비 등으로 인건비 지원 사업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향후에도 인건비 지원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소요예산도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 인건비 지원인 보육돌봄서비스 예산은 '10년 349,528백만원, '11년 395,023백만원, '12년 422,653백만원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에 서울시, 인천시 등 일부 지방정부가 국공립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별로 2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보를 추진하며 2012년에 95개 신규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¹⁾ 전국경제인연합회, 생명보험협회사회공헌위원회, 각 기업복지재단 등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크겠으나 인건비 지원에 따른 저렴한 보육료와 최소의 추가 비용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선호 이유로 저렴한 비용이 54.1%로 신뢰 43.2%보다 10%가 높았다.

이처럼 누리과정 추진과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가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의 시설보조금을 통한 보육비용 지원 근거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육비용 지원의 점진적 확대 추세에 따라 어린이집 재정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인건비 지원 대상·지원 비율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사업 기준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적정규모 도출 및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정책 현황을 검토한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 산정 방식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보육지원 단가 조정 및 인건비 지원 비율 조정 사례를 검토한다.

1) 건물 매입 및 신축 16개소, 민간어린이집 매입 11개소, 공동주택/기관 32개소, 기업이나 단체 기여 36개소로 추진하며 예산은 2012년 95억원임.

둘째, 어린이집 운영 유형을 분석하여 어린이집 규모별로 연령별 반 운영 형태를 분석하고 본 연구를 위한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셋째, 인건비 지원 여부별 어린이집 실제 재정 운영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재정 운영상 차이를 파악한다. 어린이집의 유형별·지역별·규모별 수입 지출 규모 및 재정 수지를 파악한다.

넷째, 어린이집 운영 분석 유형에 따라 규모별로 5세 누리과정 및 2013년 시행 예정인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원의 증가로 인한 재정 상태의 변화를 분석한다. 분석시 정원충족률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인건비 지원정책 관련 대안을 모색한다. 원장, 유아·영아반 교사의 인건비 지원 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정 인건비 지원 수준을 제시하며, 인건비 지원 승인이 필요한 신규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차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검토

어린이집 보육교육원 인건비 등 시설보조금 지원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및 국·내외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나. 보육비용 지원 외국 사례 검토

주요 국가별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례를 검토하고 장·단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원 방법 모색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 어린이집 운영 모형 설정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협조로 어린이집 단위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유형별로 다빈도 정원 및 연령 반 구성 모형을 탐색하여 분석의 기준이 되는 어린이집 기본 모형을 설정하였다.

라. 어린이집 재정 운영 실태 분석

2012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어린이집지원시스템과 지자체 재무회계 보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어린이집 자료는 시설 유형(국공립, 법인, 가정, 민간),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및 규모별(20인 이하, 50인, 80인 3종)로 어린이집 사례를 총 100건 수집하여 수입·지출 수지, 수입원, 인건비 지출 등 분석하였다.

분석은 종 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순 보육료 수입과 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을 산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마. 재정 운영 모형 시뮬레이션

3~5세 누리과정 및 0~2세 무상보육 실시를 가정한 어린이집 재정운영 모형 설정하고, 모형별 인건비 비중 시뮬레이션 실시하였다.

1) 1단계 조건 설정

1단계로는 먼저 시설유형별로 어린이집 정원 분포를 분석하였다. 어린이집 정원이나 현원은 평균은 그 나뉠대로 의미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균보다 빈도를 기준 설정의 기초로 사용하였다. 먼저 정원 빈도가 높은 규모를 설정하였다. 시설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국공립, 법인, 민간 어린이집은 49인, 79인, 99인에 공동적으로 빈도가 높다. 이외에 가정어린이집은 20인 규모가 최빈치이며 개인어린이집은 27인, 39인 시설이 다수이며, 대규모 어린이집 131인과 150인 어린이집을 기준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2단계로 각 시설유형별 규모별 어린이집의 연령별 반 배치 형태를 파악하여 빈도가 높은 반 배치 유형을 선정하였다.

또한 각 시설유형별로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검토하여 현원률 수준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각 시설유형별로 지원과 보육료 수입 기준 및 조건을 확정하였다

2) 조건별 수입, 지출 시뮬레이션

각 조건별로 수입을 산출하고, 수입 증가의 추이를 파악하였으며, 인건비 지출 수준을 고정시킨 채 지출 항목별 비중을 제시하였다.

바. 간담회 및 자문회의

보육 서비스 이용 보호자, 보육교사, 담당 지자체 공무원, 시설장을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4. 선행연구

보육비용 지원과 관련이 있는 국내 선행연구는 보육료 지원 체계 전반에 관한 연구, 영아 기본보조금에 관한 연구, 공공형 어린이집 등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사업 관련 연구 등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육료 지원 체계 전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변용찬 외, 2001)에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의 재정 지원 및 운영 상태를 검토하고 시설 유형 간의 재정 운영상 불균형을 지적하고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건의한 바 있다. 후속 연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문희 외, 2003) 연구에서는 인건비 지원 시설과 그 이외 시설간의 보육 비용 차이를 분석하고 시설별 및 아동별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원방식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보육료를 민간 보육시설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시설별 지원금을 아동별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006년 영아 기본보조금 도입과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기본보육료 관련 연구가 추진되었다.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 외, 2006)에서 2006년에 3개 지역에서 실시된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영역은 적절성과 효과성으로 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 제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효과, 보육교사 급여 등 인력에 대한 급여와 처우의 성과, 이용 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 및 만족도 등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평가결과, 기본보조금 지원은 그 지원이 여러 가지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조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서비스 수준 제고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나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조세연구원(조병구 외, 2007)에서 영아 기본보조금 사업을 평가하였다. 시설 측면에서 교사 일인당 영아수 감소, 교사 임금 증가 효과가 나타나서 기본보조금 10,7000원 지급시 교사 비용 최대 54,000원이 증가한다고 평가하였다. 영아보육은 활성화되었으나 모의 노동참여 및 근로시간, 부모의 보육료 부담, 보육에 대한 만족도는 변화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앞서서 조세연구원(김현숙, 2006)에서는 영유아 보육재정 지출방식으로 영아 기본보조금 사업 검토하고 도입 자체의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관련 연구

서울형 등 공인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로 제갈현숙·김송이(2010)가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공보육 확대를 위한 원칙이라는 제목 하에 공인 과정, 프로그램 변화, 보육교사 노동 조건 등은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부분적으로 성과도 있으나 여러 가지 지도 감독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임에서 오는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공인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최혜선, 2010)에서는 어린이집과 부모 설문조사를 통하여 서울형과 부산형 어린이집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재정 투자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결론짓고,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서울형보다는 어린이집 건물 소유 형태 등을 반영하는 부산형 모형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양미선·송신영, 2010)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였다. 공공형 지정으로 교사 급여 상승효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선정된 어린이집 일부는 공공성 수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도의 성공 조건으로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수준을 개선하며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II. 어린이집 보육비용 지원 현황

1. 중앙정부 지원 제도

중앙정부 어린이집 이용 비용 지원의 내용과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을 검토하였다.²⁾

가. 보육비용 개념과 실제

보육비용과 관련하여 정부지원단가, 보육료, 표준보육비용, 필요경비 등의 개념이 있다.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지원단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지원하기로 한 연령별 기준 비용이다. 이는 국공립, 법인 등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이외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곧 이들 어린이집의 보육료이다.

정부는 보육사업을 실시한 이래 표준보육단가는 1999년까지 산정하여 '보육사업지침'으로 제시하다가 그 이후 표준보육단가 고시는 각 시·도에 위임하였고,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의 표준보육단가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여 정부의 지원기준 보육료로 사용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단가는 인건비 지원시설의 보육료가 된다. 그러므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에 관한 마지막 근거는 1999년 표준보육단가 체계이다. 이 단가의 항목별 구성비는 <표 II-1-1>과 같다. 오늘날 이러한 항목별 비용 구성은 실제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 어린이집 수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표 II-1-2>는 2004년 이후 연도별 지원 기준액이다. 2005년도 이후 부분적인 변경이 있었다.

2005년도에 인건비 지원 비율을 원장 및 영아반 교사는 90%에서 80%로, 유아반 교사는 45%에서 30%로 조정하고 그 개산이 지원단가를 0,1세 42,000원, 2세아 38,000원, 유아 18,000원을 증액하였다.

2) 우리나라 육아 비용 지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비용 지원, 농어민 자녀 보육·교육 및 육아 비용 지원,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조세지원 등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비용 지원임.

2006년도에는 0세아 교사대 아동 비율 1:5에서 1:3으로의 조정을 반영하여 0세아 기준액을 따로 설정하였고, 2007년도에는 만3세아 교사대 아동비율 1:15를 반영하여 만3세아 기준을 따로 정하였다.

〈표 II-1-1〉 1999년 표준보육단가 항목별 구성비율

단위: %, 원

| 구분 | 2세 미만아반 | 2세아반 | 3세 이상아반 | 79명 시설 평균 |
|--------------|------------|------------|------------|-------------|
|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 | | | | |
| 종사자 인건비 | 66.6 | 59.6 | 38.1 | 50.0 |
| 보육아동급식비 | 21.2 | 25.7 | 39.4 | 31.8 |
| 교재교구비 | 3.3 | 4.0 | 6.1 | 4.6 |
| 시설관리운영비 | 5.3 | 6.4 | 9.7 | 4.7 |
| 차량유지비 | 3.6 | 4.4 | 6.7 | 5.4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연간 보육료 수납 총액 | 12,815,715 | 14,836,905 | 27,638,121 | 125,403,888 |
| 시설별 지원 | 7,457,745 | 7,380,560 | 8,247,674 | 46,961,887 |
| 연간 운영비 총액 | 20,273,460 | 22,217,465 | 35,885,795 | 172,365,775 |
| 민간시설 | | | | |
| 종사자 인건비 | 76.6(42.1) | 73.0(39.8) | 56.1(29.3) | 65.2(34.9) |
| 보육아동급식비 | 13.4 | 17.2 | 30.3 | 23.0 |
| 교재교구비 | 2.1 | 2.7 | 4.7 | 3.6 |
| 시설관리운영비 | 5.6 | 7.2 | 8.8 | 7.7 |
| 차량유지비 | 2.3 | 2.9 | 1.3 | 2.0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연간 운영비 총액 | 20,273,460 | 22,217,465 | 35,885,795 | 172,365,775 |

주: 보건복지부(1999). 「1999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서문희·이연희·임유경(2003).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II-1-2〉 최근 연도별 지원단가

단위: 천원

| 구분 | 0세아 | 1세아 | 2세아 | 3세아 | 4세이상아 | 비고 |
|-----------|-----|-----|-----|-----|-------|-----------------|
| 2004 | | 257 | 212 | | 131 | |
| 2005 | | 299 | 247 | | 153 | 인건비 지원 비율 축소 |
| 2006 | 350 | 308 | 254 | | 158 | 0세아 교사대 아동비율 반영 |
| 2007 | 361 | 317 | 262 | 180 | 162 | 3세아 교사대 아동비율 반영 |
| 2008 | 372 | 327 | 270 | 185 | 167 | |
| 2009 | 383 | 337 | 278 | 191 | 172 | |
| 2010 | 383 | 337 | 278 | 191 | 172 | |
| 2011~2012 | 394 | 347 | 286 | 197 | 177 | 만5세아 20만원+ 종일반비 |

주: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각년도). 보육사업안내.

<표 II-1-3>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2012

단위: 천원

| 시·도 | 정부지원시설 | 민간어린이집 | | 가정어린이집 | |
|-----|-------------|--------|-------|--------|-------|
| | | 만3세 | 만4세이상 | 만3세 | 만4세이상 |
| 서울 | | 251 | 246 | 251 | 246 |
| 부산 | | 244 | 222 | 263 | 243 |
| 대구 | | 243 | 224 | 251 | 245 |
| 인천 | | 257 | 243 | 270 | 258 |
| 광주 | | 242 | 224 | 259 | 245 |
| 대전 | | 240 | 225 | 266 | 266 |
| 울산 | 만0세: 394 | 247 | 232 | 261 | 244 |
| 경기 | 만1세: 347 | 275 | 253 | 278 | 278 |
| 강원 | 만2세: 286 | 238 | 222 | 255 | 249 |
| 충북 | 만3세: 197 | 250 | 225 | 278 | 272 |
| 충남 | 만4세 이상: 177 | 254 | 241 | 276 | 258 |
| 전북 | | 237 | 214 | 237 | 214 |
| 전남 | | 240 | 225 | 258 | 247 |
| 경북 | | 242 | 217 | 263 | 247 |
| 경남 | | 236 | 221 | 254 | 247 |
| 제주 | | 223 | 215 | 246 | 246 |

자료: 각 시·도 및 시·도 보육정보센터 웹 사이트에서 인출.

다음 보육료는 부모가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으로 민간개인어린이집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보육료가 다르다. 그러나 0~2세 영아 보육료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영아 보육료 상한선은 정부 지원단가로 통일되어 있다. <표 II-1-3>은 2011년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 상한액을 나타낸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단가 차이가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산출된 표준보육단가를 보면 가정어린이집보다 민간개인어린이집 보육료가 더 높는데, 시·도에서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을 보면 일부 지역은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선이 민간개인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선을 보다 더 높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아동 1인을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진다. 기준은 인건비 등 보육서비스 수준, 인력 배치 기준, 개인 투자 비용 반영등 그 측면이 다양하다. 정부가 1999년 이후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여 표준보육비용은 산정한 것은 두 차례이다. 2004년에는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조세연구원(2005)에 의뢰하여 표준 보육 및 교육단가 산정 연구를 수행하였고, 2008년에 복지부 의뢰로 표준보육비용을 다시 산출

한다(김현숙 외, 2008). 이는 2004년 산정이 보육과 유아교육 비용을 통합한 비용 산정이며, 영아 관리비에 가중치 부여로 과다 책정되었고, 개인적 재정투자와 용자, 임대 등 민간 어린이집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8년에 일부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산출한 비용은 50인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1안이 0세아 738,400원, 5세아 317,000원이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으로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유기농 식자재를 쓰며 교재교구를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고 건축비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이다. 두 연구를 비교하여 영아는 많이 낮아졌고 유아는 물가상승률은 감안하면 약간 높아진 수준이다.

보육료 이외에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이외에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행사비, 종일반비, 급간식비 등을 추가로 수납한다.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입소료 이외의 비용을 기초지방정부에 위임하였다. 그 이외 지역은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입소료는 5만원으로 통일되어 있고, 현장학습비는 연 15~25만원, 특기적성비는 8~26만원으로 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기적성비는 강남구가 26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동구와 동작구가 18만원이며, 서대문구와 금천구가 8만원, 구로구·노원구·성북구가 9만원 선으로 10만원 미만이다. 특기적성 과목에 대한 제한은 서대문구·성북구·영등포구·은평구가 3과목, 강동구가 5과목 이내로 제한한다. 동작구는 과목 제한이 없다.

나. 보육비용 지원 제도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은 시설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보조금 지원과 부모 보육료 지원인 부모보조금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보육재정은 시설별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 이외에 기능보강비 예산으로 구성되는데, 기능보강비는 설치비, 개보수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고,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은 모두 어린이집 운영, 즉 아동보육에 소요되는 보육비용이다. 영유아보육법은 다양한 형태의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별 지원, 기본보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설보조금

가)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보조금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된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과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비영리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그리고 단체, 사회복지법인 이외 법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이다.³⁾

대체로 유아교사는 인건비의 30%, 영아전담교사는 80%를 지원한다.⁴⁾ 인건비는 월 급여와 4대 보험료를 포함한다. 지원은 교사대 아동비율을 기준으로 정원이 다 확보되지 않아도 지원한다. 0세반은 2명까지, 1세반 3명까지, 2세반 4명까지 지원한다. 유아반 교사도 3세반 8명까지, 4세 이상반 11명까지 지원한다.

인건비 이외 추가지원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이외 차량운영비는 개소당 월 20만원(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중소도시와 대도시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취사부 1인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나) 취약보육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별 인건비 지원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보육이 해당되고, 이러한 지원은 시설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3)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어린이집,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어린이집 포함),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95~'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임.

4) 2004년 이전에는 각각 45%, 90%에서 2005년부터 축소 조정되었음.

5) 국민연금 부담금월보수액 × 9.0%/2, 국민건강보험료 월보수액 × 5.8%/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보수액 × 5.8% × 6.55% / 2(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청구됨), 고용보험료 월보수액 × 0.8%(국공립 중 직영시설 등의 부담비율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달리 적용), 산재보험료 월보수액 × 0.7%임(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표 II-1-4〉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 구분 | 지원내용 | |
|---------------------------------------|---|--|
| 국공립 및 법인 등 시설 | 21인 이상 시설 | -원장 인건비 80%,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교사 80%) -추가지원: 농어촌, 폐광지역, 도서벽지 ·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중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시설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
| | 21인 미만 시설 | -원장 인건비 지원 없음,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교사 80%) |
| |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 보육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24시간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휴일보육 3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시 5만원 -방과후 16~20명 보육 시 인건비 50%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3명 기준 인건비 100% 지원 |
| | 장애아 통합 시설 |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 80%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 |
| |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 -혼합반 낮은 연령 기준 인건비 80% |
| 영아전담시설 (2004년 이전 지정 및 국고보조 신축비 지원) | -원장(18명 이상) 및 보육교사 인건비 80% -유아혼합반 영아50%(4명)이상일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80% -유아반 별도 편성시 보육교사 인건비 30%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농어촌 시설 차량운영비 : 개소당 월 20만원 | |
| 장애아전담시설 (시·도 지사 지정) | -원장(6개반 이상), 원장,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인건비 80% -치료사 아동 9인당 1명 인건비 100% 지원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차량운영비 : 월 20만원 | |
| 민간 가정 보육 시설 | 일반어린이집 | -영아, 장애아반 지원 기준에 따라 기본보조금 지원 -교재교구비: 현원 기준 개소당 연 500~1,200천원 -농어촌 소재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
|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월 120만원 지원 |
| | 시간연장어린이집 |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
| | 24시간어린이집 |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 |
| | 공공형어린이집 | -정원기준 5개 구간별 96~824만원 운영비(일부 인건비) 차등 지원 |
| 직장어린이집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 또는 1인당 월 100만원 -24시간보육 보육교사 인건비 80% 또는 1인당 월 100만원 -교재교구비: 개소당 연 500~1,200천원 | |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24시간 보육교사는 인건비 지원시설은 인건비를 80% 지원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월 100만원 지원한다. 휴일보육은 3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시 5만원 지원하며, 방과후 보육은 아동 16~20명 보육 시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3명 기준 인건비 100% 지원이다. 장애아 통합시설은 인건비 지원시설은 교사 인건비를 100% 지원하고 민간 장애아 통합시설은 전담교사 1인당 월 120만원 지원한다.

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중앙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 보육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⁶⁾

〈표 II-1-5〉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기준

| 정원 | 20인 이하 | 21~49인 | 50~76인 | 77~97인 | 98인 이상 |
|-------|--------|--------|--------|--------|--------|
| 월 지원액 | 96만원 | 248만원 | 440만원 | 560만원 | 824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1년 보육예산 설명자료.

기본 신청 기준은 평가인증 유효, 전년도 하반기 6개월 간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 최근 3개월 간 유아현원이 현원의 평균 30%이상 유지이며 이외에 놀이터 설치 여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여부, 어린이집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 형태, 보육교사 및 원장의 전문성, 영유아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비율, 시·도별 특성화 지표 등이 기본점수 및 가감 점수로 환산되어 반영된다. 총점 80점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러한 어린이집에는 규모에 따라 일정액이 운영비로 어린이집 정원 구간별로 지원된다 (표 II-2-10 참조).

공공형 어린이집 모형은 서울시와 부산시의 공인어린이집이다. 서울시는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유형의 구분 없이 시가 권장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어린이집에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인증마

6) 동시에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이 부모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화·특성화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비용 상한과 보육과정 운영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실시하고자 하였음. 2가지 유형의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 운영 모델 창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음. 그러나 자율형 어린이집은 희망자가 소수이어서 실시되지 않았음.

크를 부여하고 인증을 받은 민간어린이집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 부산시도 '09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발하여 국공립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공보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선정 조건은 부산형이 까다로운데 비하여 지원 기준은 서울시가 매우 높다.⁷⁾

라)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에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영비인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로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에게는 임금을 지원한다. 원장은 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고, 취사부는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보육아동수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기금으로 직장어린이집 교사, 원장, 취사부 시간제로 차등 지원한다. 급여는 주당 15시간~40시간에 따라서 월별로 일반 기업 어린이집은 30~80만원, 우선지원대상 기업 어린이집은 38~100만원 지원한다.

교재교구비 지원은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 대상으로 현원 49인 이하는 월 120만원, 현원 50~99인 이하는 월 320만원, 현원 100인 이상은 월 48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운영비는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고용보험기금 지원은 고용주 지원으로 간주한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시 지원하는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여부 또는 정부 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1-6〉 직장보육시설 주당 근로시간 대비 인건비 보조금

| 구분 | 단위: 만원 | | | |
|----------|--------|------|------|------|
| | 15시간 | 20시간 | 30시간 | 40시간 |
| 일반 사업장 | 30 | 50 | 70 | 80 |
| 중소기업 사업장 | 38 | 63 | 88 | 100 |

마)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민간 일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시설 규모별로 연간 50~120

7)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참조

만원 지원한다. 교재교구비는 1998년부터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였으며, 2006년부터 직장어린이집에도 지원한다. 2011년부터는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평가인증 상태를 유지한 시설에만 지원하고 있다.

2) 민간개인·가정어린이집 영아 기본보육료

현재 정부는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과는 별도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육료로 지원하고 있다.⁸⁾ 지원액은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다. 한편 유아에 대해서는 2007년 3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본 사업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영아 기본보육료는 아동별로 지원하므로 부모보조금의 성격을 갖지만 부모가 아닌 시설에서 바로 수령하며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시설보조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는데,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 도입시 이를 이용권에서 제외하여서 시설보조금 성격은 강화되었다.⁹⁾

〈표 II-1-7〉 보육비용 구성

단위: 천원

| 구분 | 2007년 | | | 2008년 | | | 2009~2010년 | | | 2011~2012년 | | |
|------|-------|-----|-----|-------|-----|-----|------------|-----|-----|------------|-----|-----|
| | 0세 | 만1세 | 만2세 | 0세 | 만1세 | 만2세 | 0세 | 만1세 | 만2세 | 0세 | 만1세 | 만2세 |
| 기본보조 | 292 | 134 | 86 | 340 | 164 | 109 | 350 | 169 | 112 | 361 | 174 | 115 |
| 보육료 | 361 | 317 | 262 | 372 | 327 | 270 | 383 | 337 | 278 | 394 | 347 | 286 |
| 보육비용 | 653 | 451 | 348 | 712 | 491 | 379 | 733 | 506 | 390 | 755 | 521 | 401 |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3) 부모 보육료 지원

가) 지원 기준

부모 보육료 지원은 부모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무상보육 및 다자녀 가구 지원으로 구분되며 지원은 정부가 정한 지원단가에 의한다. 지원단가는 영아는 보육료 상

- 8) 영아에 대한 지원은 2002년 하반기에 영아 10명이상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에 시설별로 40만원을 처음 지원한 데서 시작되었음. 그 후 2003년에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하였고, 2004년에 반별로, 2005년에 아동별로 전환하여 지원 수준을 다소 확대하였음. 2006년부터는 기본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하였고, 동시에 부모 부담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추어 통일하였음. 2009년부터는 기본보조금을 기본보육료로 명칭을 수정함.
- 9) 정부 예산상 항목은 보육료지원임.

한액과 동일하지만 유아는 만 3세 177,000원, 만 4세 197,000원으로 지방정부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만5세는 20만원이다.

보육료 지원 대상은 당초에 특정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은 2004년 이후 확대하였다. 2009년 6월까지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을 나누었다. 즉,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하위소득 50%를 초과하고 60%까지는 기준단가의 60%, 하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0%까지는 기준단가의 30%를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였다. 2012년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모든 0-2세는 전액 지원이며, 3,4세만 전년도와 동일하게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2009년 7월부터 맞벌이 가구의 부모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됨에 따라 약 15,000여 맞벌이 가구가 추가로 지원 받게 되었다. 2010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부모 소득 합산액의 25%를 감액하여 약 27,000명이 새로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보게 되었다.

취학직전 연령인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1999년 하반기부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¹⁰⁾ 2011년에는 보육아동 70%에 해당하는 4인가구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지원하였고, 현재 2012년부터 만5세아 공통과정 운영 및 무상교육·보육이 시행되었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이 실시되었다.

또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지소유규모 5ha 미만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1자녀 기준으로 4,000만원 미만¹¹⁾인 자의 자녀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 어린이집 미이용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이다.¹²⁾

10) 1999~2001년도는 농어촌 지역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2002년 전국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 200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지원,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수준까지 지원(도시/농촌 지원단가 일원화), 2006년 농촌 100%, 도시 80% 수준까지 지원

11)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미만임

12) '06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을 추가로 도입, 어린이집 미이용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였고, '08년부터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사업을 통합·운영함. 이 사업은 2012년부터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됨.

다. 소결

보육비용 지원과 관련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비용 관련 용어 중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 개별 연구자들이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각종 기준들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정부가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주기적 산출이 가능한 구조적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은 물론 기준도 제각각이다. 지역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일정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평가인증 지표를 통하여 통합적 표준보육과정 준수를 중요시하며 특별활동 등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보육료 상한액, 보육료 지원 단가, 표준보육비용간의 격차가 있다. 실제 부모부담 비용과 지원단가간의 격차로 전액지원의 체감도를 낮춘다. 시설유형별 상한액 차이도 지역마다 일정하지 않다.

넷째, 영아 기본보육료는 보육바우처 시스템 도입시 바우처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설보조금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부모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 부모보조금은 시설보조금에 비하여 교사 처우, 보육서비스의 질과의 강력한 연계에 한계가 있다.

다섯째, 보육비용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과의 연계도 취약하다. 올해부터 교재교구비 지원과 도시지역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평가인증을 연계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수적 지원이므로 본질적인 보육료 지원과 질을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2. 시도 특수보육시책 지원 현황

가. 시도별 개요

시·도 특수보육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연 평균 보육아동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33만원인데, 제주를 제외하고 최저 4만원부터 최고 서울 110만원 이상에 이르기 까지 지역 차이가 많이 난다. 추진하는 사업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보육아동 1인당 비용은 서울 다음으로는 인천, 대전, 부산, 경기도, 울산이 비교적 높은 순위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이 대도시로, 지역적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특수보육시책 내용을 분류하는 방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은데 크게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지원¹³⁾,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육비용 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취약보육 운영지원,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운영비 지원으로 구성된다. 보육교직원 지원은 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역량개발비이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는 시설설치비, 환경개선비, 육아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이다.

아동 1인당 예산 규모가 큰 시도 우선으로 시도별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서울특별시의 2012년 특수시책의 특성은 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용 89억원이다. 이는 새로운 서울시장의 야심찬 보육정책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금,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과 더불어 새로이 서울시 보육정책 브랜드로 등장하였다. 인천광역시는 2012년에 만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을 실시하였고 장남감 도서관을 확대 운영하는 정책적 특성이 있다. 대전광역시는 종사자 처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 부산시, 울산시 모두 공통적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과 보육료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경북에서 운영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대전과 경기도가 교사 처우에 비교적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포함한 기능보강비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두드러지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은 인천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평가인증 관련 사업은 충남이 두드러지며, 취약보육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많은 비중을 둔다. 이외에 보육정보센터 운영도 서울시의 중요한 특수사업임을 알 수 있다.

13)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직원 지원이 혼동되는 경우도 있다.

〈표 II-2-1〉 사업유형별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2012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 전체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전체 | | 438,915 | 253,538 | 16,531 | 5,241 | 31,349 | 4,789 | 15,441 | 4,848 | 70,097 | 2,620 | 2,806 | 7,863 | 3,747 | 1,381 | 7,797 | 10,752 | 114 |
| 보육아동1인당 | | 0.33 | 1.18 | 0.24 | 0.08 | 0.44 | 0.10 | 0.35 | 0.16 | 0.20 | 0.06 | 0.06 | 0.12 | 0.07 | 0.03 | 0.11 | 0.11 | 0.004 |
| 어린이집 운영지원 | 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 | 2,039 | 738 | 445 | 325 | - | 92 | - | - | 206 | 47 | - | 65 | - | 62 | 60 | - | - |
| | 운영비지원 | 149,214 | 135,144 | 2,780 | - | 1,336 | 618 | 655 | 53 | 1,786 | 962 | 40 | 1,433 | 476 | - | 3,514 | 416 | - |
| | 인건비지원 | 1,744 | 502 | - | - | 45 | 300 | 95 | 563 | 150 | 18 | - | 72 | - | - | - | - | - |
| | 소계 | 152,997 | 136,384 | 3,225 | 325 | 1,381 | 1,010 | 750 | 616 | 2,142 | 1,026 | 40 | 1,570 | 476 | 62 | 3,574 | 416 | - |
| 보육 교직원 지원 | 종사자처우개선 | 82,029 | 183 | 6,538 | 3,190 | 5,722 | 1,500 | 11,502 | 2,964 | 35,920 | 913 | 2,559 | 2,264 | 3,002 | 622 | 2,098 | 3,054 | - |
| | 역량개발지원 | 40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82,069 | 183 | 6,538 | 3,190 | 5,722 | 1,540 | 11,502 | 2,964 | 35,920 | 913 | 2,559 | 2,264 | 3,002 | 622 | 2,098 | 3,054 | - |
| 어린이집 가능보강 | 시설확충 | 104,625 | 89,125 | - | - | - | 500 | - | - | 15,000 | - | - | - | - | - | - | - | - |
| | 공립어린이집환경개선 | 231 | - | - | 6 | - | - | - | - | - | - | - | - | - | - | 100 | 125 | - |
| | 민간어린이집환경개선 | 1,280 |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150 | 130 | - |
| | 어린이집환경개선 | - | 3,100 | 30 | - | - | - | - | - | - | - | - | 98 | 20 | - | - | - | - |
| | 소계 | 109,384 | 93,225 | 30 | 6 | - | 500 | - | - | 15,000 | - | - | 98 | 20 | - | 250 | 255 | - |
| 보육비용 지원 | 보육료지원 | 49,919 | - | 4,800 | 1,577 | 20,645 | 1,446 | 1,392 | 1,120 | 11,538 | 299 | - | 2,360 | 38 | - | 1,286 | 3,417 | - |
| | 기타경비지원 | 2,966 | - | 659 | - | 1,661 | 12 | 265 | - | - | 349 | - | - | - | - | 19 | - | - |
| | 소계 | 53,694 | 809 | 5,459 | 1,577 | 22,306 | 1,458 | 1,657 | 1,120 | 11,538 | 648 | - | 2,360 | 38 | - | 1,305 | 3,417 | - |

(표 II-2-1 계속)

| 구분 | | 전체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평가 인증 어린이집 지원 | 인증어린이집운영비지원 | 2,163 | - | - | - | 205 | 215 | 601 | - | - | - | 19 | 1,124 | - | - | - | - | - |
| | 인증어린이집종사자처 우,역량개발,연구수당 | 1,100 | - | 500 | - | - | - | - | - | - | - | - | - | - | 600 | - | - | - |
| | 인증어린이집환경개선 조력단운영 | 74 | - | - | - | - | - | - | - | - | - | 74 | - | - | - | - | - | - |
| | 소계 | 228 | - | - | - | - | 50 | 3 | 15 | - | - | 10 | - | - | 40 | 40 | 70 | - |
| | 소계 | 3,565 | - | 500 | - | 205 | 265 | 604 | 15 | - | - | 103 | 1,124 | - | 640 | 40 | 70 | - |
| 취약 보육 운영 지원 | 장애아전담,통합시설 영아전담어린이집 | 2,034 | 1,131 | - | 85 | 345 | 12 | 126 | 29 | - | - | 54 | 59 | 24 | - | 90 | - | 80 |
| | 시간연장형어린이집 | 3,308 | - | 300 | - | - | - | 600 | - | 2,388 | - | - | - | - | 20 | - | - | - |
| | 다문화보육 | 1,631 | - | 15 | - | - | - | 117 | 20 | 1,359 | - | - | - | 120 | - | - | - | - |
| | 방과후보육 | 2,572 | 2,402 | - | - | - | - | - | - | - | - | 15 | - | - | - | 155 | - | - |
| | 소계 | 60 | 34 | -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9,604 | 3,567 | 315 | 111 | 345 | 12 | 844 | 49 | 3,747 | - | 69 | 59 | 144 | 20 | 245 | - | 80 |
| 기타 | 행사지원 | 451 | 20 | - | 13 | 50 | - | 7 | 15 | 93 | 18 | 25 | 20 | 15 | 35 | 80 | 40 | 21 |
| | 단체운영지원 | 100 | - | 65 | - | - | - | 10 | - | - | - | - | - | - | - | 25 | - | - |
| | 모니터링단운영 | 487 | 400 | - | 20 | 8 | 4 | - | - | 3 | - | - | - | 32 | - | 20 | - | - |
| | 부모·종사자교육 | 183 | - | - | - | 45 | - | 5 | 60 | - | - | 10 | - | 20 | 3 | 40 | - | - |
| | 보육정책위원회운영 | 12 | - | - | - | 3 | - | - | - | 8 | - | - | - | - | - | - | - | - |
| | 지방정보센터운영 | 21,153 | 18,566 | 400 | - | 1,135 | - | 48 | - | 590 | 15 | - | 300 | - | - | 100 | - | - |
| | 기타 | 5,216 | 384 | - | - | 149 | - | 14 | 10 | 1,056 | - | - | 70 | - | - | 20 | 3,500 | 13 |
| | 소계 | 27,602 | 19,370 | 465 | 33 | 1,390 | 4 | 84 | 85 | 1,750 | 33 | 35 | 390 | 67 | 38 | 285 | 3,540 | 34 |
| 2011 | 322,749 | 190,422 | 14,991 | 5,088 | 15,677 | 3,927 | 15,512 | 4,555 | 44,136 | 1,452 | 3,077 | 6,184 | 4,291 | 1,378 | 6,258 | 5,695 | 105 | |

자료: 보건복지부(2012).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나. 2012년 시도 보육 비용 지원 사례

일부 시·도의 특수시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이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특수시책이 많을 경우에 중앙정부 인건비 지원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타진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1) 서울시 사례

서울시 시비 보조사업은 아동 1인당 118만원이고, 총 예산은 국고 지원 사업 대비 약 30%로¹⁴⁾ 타 시·도보다 예산규모가 월등하게 많고 사업 유형도 서울형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매우 다양하다. 예산의 시와 구의 분담은 인건비, 운영비 지원은 70:30이고, 민간시설 서비스 향상지원비는 전액 시비 사업이며, 이외는 모두 시와 구가 50:50으로 분담한다. 대표적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2-2〉 서울시 특수보육사업 예산 분담 비율: 2012

| 사업내용 | 사업비 부담비율(%) | | 비고 |
|---|----------------|----|------------|
| | 시비 | 구비 | |
| -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 70 | 30 | |
|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지원 | 50 | 50 | |
| - 0세아 전담간호사, 대체인력, 장애아통합시설 치료사, 보육도우미, 종교시설 인건비 | 50 | 50 | |
|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 50 | 50 | |
| - 시간연장 및 휴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시간제 근무교사 인건비 및 근무수당 포함) | 50 | 50 | |
| - 영아반 운영비,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 50 | 50 | |
| - 보육교사 중식비 | 50 | 50 | |
| - 장애아 통합 및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 50 | 50 | |
|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 | 50 | 50 | |
| - 장애아 순회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 50 | 50 | |
| - 영유아플라자 운영비 및 인건비 | 50 | 50 | |
| -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비 | 50 | 50 | |
| -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 | 100 | - | |
| - 민간시설 서비스 향상지원비 | 100 | - | 일부 시설부담 |

자료: 서울시(2012),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14)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참조

가) 서울형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국공립시설에 준하여 시설별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를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비율로 지원한다. 다만 기준 호봉은 서울형 지정 이후 경력만 인정하고 원장은 1호봉을 유지 지원한다. 또한 비담임교사 인건비를 월 70만원 지원한다. 4대보험 등은 어린이집 부담이다. 0세아 전담 간호사 인건비나 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은 제외하여 앞으로 비담임교사로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도. 현판, 간판, 개보수 비용으로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지우너하며, 무엇보다도 기타 운영비로 기준보육료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2012년 보육료 기준액은 280,200원이다.

나) 보육료 차액 지원

보육료 전액 면제 유아 중 법정저소득층 유아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월 10일 이상 이용 시 차액은 전액 지원하며 부모수납은 불허한다.

지원액은 2010년 기준으로 3세아는 54,000원, 4세 69,000원, 5세아 46,000원, 방과후 34,500원이다.

다)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시설, 영아전담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으로서 0세아를 현원 9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 간호사 1인 인건비 전액을 지원한다. 0세아가 2월 연속(해당월 포함) 6명 미만일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둘째, 비상근교사 인건비 지원이다. 정부지원시설 혹은 서울형 어린이집 중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 평일 오후 6시 이후 보육아동이 2개반 이상인 경우 교사 인건비를 1일 4시간 기준으로 16,000원을 지원한다. 교사 급여가 최저임금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설에서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다.

셋째,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기준보육료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모든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및 취사부의 유급휴가 대체 인건비를 지원한다. 결혼휴가 6일 이내, 직계존비속 5일 이내, 5일 이상 보수교육, 2주 이상 병가 1인당 1일 50,000원이다.

넷째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인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다. 현원이 5명 미만으로 감소될 경우에는 2개월까지만 지원한다. 또한 관련하여 장애 순회지원 교사 1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다섯째, 처우 개선비는 시설장은 정부지원시설과 서울형 어린이집에 적용하고, 보육교사는 전체 시설에 적용한다. 특수교사, 치료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교사도 해당되며, 민간시설 대표자, 가정보육시설 시설장 또는 대표자가 보육교사로 겸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우개선비 지급이 불가이나 서울형 어린이집 중 시설장·보육교사 겸직은 시설장으로, 대표자·보육교사 겸직은 보육교사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¹⁵⁾ 금액은 시설장은 195,000원이고 교사는 정부지원시설 145,000원, 민간·가정은 200,000원이다

여섯째,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된 현원 40인 이상 보육시설 중 공개채용 방법으로 보육도우미를 채용한 시설에 일일 6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일곱째, 기본 보육시간 이후 최대 4시간 30분 이하의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을 실시하는 일반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은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교사 2인까지 교사 연장근무수당을 시간당 5,000원, 1인 1일 최대 4시간 30분 기준으로 월 562,500원 지원한다. 휴일보육시설 지정 시설 중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1인당 3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이상 보육할 경우 보육교사에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을 지원한다. 보육포털서비스에 등재된 24시간, 휴일, 시간제 보육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24시간보육은 보육아동 일평균 1명이상인 경우 교사 1명 월 지급액의 80%(민간 서울형어린이집 100만원)를 지급한다. 휴일보육시설은 보육아동 1명이상인 경우 교사 1인당 일 5만원을 시·구비로 지원한다.

여덟째, 종교시설 내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지정된 시설은 영아반 교사인건비 80%(2개반 이상인 경우), 유아반 교사인건비 30%를 지원한다.

라) 운영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부모협동 보육시설에 0세아반(장애아반) 월 20만원, 1세아반 및 2세아반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현원 40인 미만 시설의 경우 3개 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

15) 지급액은 시설장은 정부지원시설 월 195,000원, 보육교사는 정부지원시설 월 145,000원, 민간시설 월 200,000원, 방과후교사 월 100,000원임.

원요건은 모든 보육교사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 이상 지급하고 기본보육료 지원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반당 현원이 50%이상일 때 지원하며 2~3세 혼합반일 경우 2세 4명 이상인 시설이다.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복지관, 국·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설치한 시설 중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운영비 월 55만원, 미지정 시설은 월 1,15만원이며, 보조교사는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교사는 미술, 체육, 피아노 등 특기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반당 현원이 16명(정원의 80%)이상으로 반당 정원 준수 시 지원하며 최고 3개반까지 지원한다. 장애아 방과후반 운영비는 장애아전담, 통합 또는 방과후 지정시설에서 장애아 방과후반을 편성·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지원은 일반 방과후보육과 같이 방과후 보육교사나 장애아 전담교사 자격기준에 준하며, 보조교사는 치료사, 특수교사도 가능하다.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은 정부지원시설(서울형 어린이집 포함)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시간연장(야간)교사 포함)로 1인당 월 25,000원(월액)을 지원한다.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월 21,000원이다.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설치비는 500-100만원을 지원한다. 국공립 우선이고 민간개인 및 가정 어린이집은 서울형 및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 한한다.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시 교육기자재비 200만원, 현판비 40만원, 부모와 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비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12개소를 운영한다.

이외 모범 민간어린이집에 서비스 향상 지원비를 지원한다.

마) 영유아 플라자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목적은 가정내에서 직접 돌보는 아동과 부모 등에게 자녀 출산에서 육아까지 통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자치구별 1개소씩 25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이다.

영유아플라자의 주요 시설은 시간제 보육시설 및 육아정보 나눔터, 놀이시설, 체험학습장, 어린이 도서관, 교재교구 및 장난감 대여실, 육아상담, 보육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정보센터 등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베이비&맘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저출산, 양육 보육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소, 병원,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등과 연계망 구축이다. 그리고 젊은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의 육아카페 기능,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이나 놀이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능, 각종 생활 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을 지원하는 체험학습 기능,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담 및 해결의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인천시 사례

가) 인건비 지원

지방비 어린이집 교사 수당은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 한하여 국공립은 급수별로 각각 월 10만원, 9만원, 8만원을 지급하고 민간은 15만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외 결혼, 병가, 보수교육 및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시 대체교사비를 1일 4만원 지원하고 대체교사 상해보험료를 지원한다.

나) 부모 보육료 지원

첫째, 인천시의 가장 대표적 특수사업으로 2012년부터 만4세아 무상보육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전액 지원 대상 연령이 아닌 3세아에 대해서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입양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셋째, 법정 저소득층아동 필요경비와 민간보육료와 지원단가간의 차액을 지원한다. 필요경비 단가는 정부지원시설은 0-2세 66,000원 3-5세 76,000원이고, 민간과 가정은 모두 90,000원이다. 민간보육료와 지원단가간의 차액은 3세아 각 민간 60,000원, 가정 73,000원이고, 4세아는 각각 66,000원, 81,000원이며 5세아는 각각 43,000원 58,000원이다.

다) 운영비

첫째, 월동 난방 연료비 및 여름철 냉방기기는 2011. 12. 31일 기준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 법인, 가정, 부모협동, 직장, 민간어린이집으로 안전공제회 영·유아 등 배상 및 상해 공제 가입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일반 민간 상해보험과 안전공제회 상해보험 가입은 병행 가능하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지원기준 월의 보육 정원을 기초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년 40만원부터 200만원까지이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은 연 200만원이다. 24시간 어린이집로 지정된 시설은 상기 지원기준에 의한 금액을 2배 지급한다.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원하되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매 지급할

때 마다 50%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보육 정원대비 현원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 지원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현원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 지원금액의 50%를 지원하며 단, 평가인증 미통과시설은 지원기준의 50%를 지원(방과후 전담어린이집 제외)한다. 평가인증 미참여 시설이면서 현원이 50%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평가인증 미통과하고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지원하지 않는다.

둘째, 차량 운행비는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강화군, 옹진군 해당)으로 시설당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013년부터는 평가인증을 통과를 전제로 한다.

셋째, 장애아전담시설 차량 운행비를 지원한다. 장애아 전담 시설에는 국고보조 지원 기준 외 추가 지원으로 차량운영비를 정부 단가 30만원 이외에 80만원을 더하여 월 1,100천원을 지원한다.

3) 경기도 사례

가) 부모 지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 3세이는 민간과 가정이 각각 78,000원, 81,000원, 4세이는 76,000원 101,00원 5세 53,000원, 78,000원이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월 3만원을 지원한다.

나) 인건비 지원

첫째, 처우개선비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시설은 비용은 평가인증여부에 따라 차이를 두어서 원장, 1급교사, 특수교사, 치료사는 각각 15만원, 12만원, 2·3급교사와 취사부는 각각 10만원, 7만원이고 누리과정 담당교사는 각각 11만원, 6만원이다. 민간어린이집은 반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는 각각 20만원, 17만원이고 누리과정 담당교사는 각각 11만원, 6만원으로 동일하다.

또한 장애아, 다문화,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장애아와 다문화는 월 5만원이고, 영아반은 10만원이다.

둘째,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을 경우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4개소에 16명분이다.

셋째, 순수 인건비로는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 인건비를 지원한다.

넷째,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보수교육, 결혼, 출산휴가, 병가, 본인 및 직계 비존속 사망 등에 대체교사 사용 시 일 4만원을 지원한다.

다) 운영비 지원

첫째, 시도 지사가 지정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어린이집 당 월 20만원이다. 냉난방, 전기·수도료, 간식비, 시간연장 교사 수당 등에 사용한다.

둘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교사대 아동 비율 1:3을 1:2로 1:5를 1:4로 줄여서 운영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경기도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운영한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추가로 교사 인건비 110만원과 운영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120만원을 지원하고 영아전담어린이집은 61인이상 120만원, 10인 이하 100만원이다.

라)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경기도의 대표적 특수시책으로 24개월 이하 자녀를 가정에서 보육교사가 1:1로 보육할 경우에 비용을 지원한다.¹⁶⁾

4) 충남 사례

가) 부모 지원

첫째, 법정저소득층 영유아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와 지원단가간의 차액을 지원한다.

둘째, 셋째아 이상 유아학비와 무상보육료를 지원한다.

나) 인건비 지원

첫째,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둘째,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 운영비 지원

첫째, 영유아 급·간식비를 지원한다.

둘째, 인건비지원시설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민간가정인보육시설 교재교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셋째,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을 지원한다.

16) 본 연구와의 직접 관련성이 낮아서 간략하게 언급함.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참조 요망함.

5) 전남 사례

가) 교사 처우 개선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영아 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한다.

나) 운영비 지원

운영비는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시 단위 보육시설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한다.

6) 경북 사례

가) 부모 지원

첫째, 전 계층 보육료 지원 이외 연령 아동 셋째이후 출생 자녀 보육료 15만원 지원한다,

둘째, 장애아동어린이집 입소료를 8만원 지원한다.

셋째, 방과후보육료를 지원한다.

나)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수당을 지원한다. 정부 미지원, 평가인증여부별로 7~9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또한 장애아보육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특수교사, 치료사, 장애전담 교사에게 월 4만원~11만원을 지원한다.

다) 운영비 지원

첫째, 정부지원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시설당 43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소득 하위 70% 저소득보육 아동 간식비를 하루 500원 지원한다.

셋째, 어린이집차량유지비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에 한하여 연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문화어린이집에도 차량운영비를 지원한다. 1인이상 다문화아동재원시설에 1인당 1만원을 지원한다.

넷째, 보육시설환경개선비로 평가인증 통과시설의 한하여 신청 당해 연도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3. 외국의 보육비용 지원

외국의 보육지원은 시설보조금과 부모보조금의 지원방식의 적용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선택한 국가는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로 총 8개 국가이다.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퀘벡 주 이외)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시설보조금보다는 부모보조금을 주된 지원 방식으로 선택한 국가들이고, 프랑스는 유아는 시설보조금 영아는 부모보조금을 기본 방식으로 사용하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모두 시설보조금으로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국가들이다.

가. 일본

일본 보육비용 지원은 표준보육단가를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보육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표준보육단가 산출은 보육시설 규모별로 총인건비와 관리비를 산출, 합산하여 이를 아동수별로 균등하게 나누고 여기에 유아에 한하여 월별 일반생활비 정액을 합하여 보육단가를 산출한다.¹⁷⁾

산출된 표준보육단가에 기초한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50%는 국가가 부담하고 50%를 부모 부담 보육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부담액 중 1/2은 중앙정부, 1/4은 도도부현, 1/4은 시정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분담을 아동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모부담은 중앙정부에서는 부모 보육료 징수 기준을 소득계층에 따라서 8계층으로 나누고 있다.¹⁸⁾ 8계층은 생활보호법 피보호세대, 시정촌주민세 비과세 대상자, 소득세과세는 없으나 시정촌주민세 과세대상자, 그 이외의 소득세과세 대상은 전년도 과세수준에 따라서 차등한다.

부모부담은 보호자 소득 기준에 따른다. 일본은 소득계층에 따라서 A, B, C1~C3, D1~D21까지 26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보육료 징수는 2011년부터 이들을 8계층으로 나누고 있다. 8개 계층은 생활보호법 피보호세대, 시정촌민세비과세 대상, 소득세과세는 없으나 시·정·촌 주민세 과세대상자, 그 이외의 소득세과세 대상은 전년도 과

17) 표준보육단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크게 인건비, 관리비 및 아동일반생활비로 구분되며, 인건비 및 관리비에는 다양한 세부항목이 포함됨. 표준보육단가는 4세아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아동연령¹⁾, 지역¹⁾, 시설의 규모¹⁾, 민간시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으로 추가한다. 또한 야간보육소 단가도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

18) 2011년부터

세수준에 따라서 나누어서 보육료를 차등하여 받고 있다. 국민의 1%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법 피보호세대는 전액을 감면하고 제2계층 부터는 보육료를 차등화하여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 기준 및 전체 보육료 운영 비용에서 보호자의 부담비율은 지방정부마다 각기 다르다. 국가 기준에서 정부 부담금 이외에 보육료 징수 금액의 일부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각각 다른 징수 체계를 적용하므로, 결과적으로 실제로 국가가 제시한 표준보육비용을 그대로 수납하는 지역은 없다. 대부분의 지역이 국가 기준의 60~70%만을 부모로부터 수납한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만3세아와 만4세 이상아의 보육료를 구분하고 영아 보육료를 세분화하며, 2자녀 및 3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들의 보육료는 크게 낮추어 준다.

그러나 인정보육시설 등 국가 인가 외 시설의 보육료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지원하나, 응익(應益)부담원칙으로 인가 보육시설과는 다소 차이 있다.

차등보육료 지원을 포함한 일본 중앙정부 보육재정 규모는 2010년 3881억엔이고 2011년은 4100억엔이다.

나. 호주

호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아동 보육료 지원이 주를 이루고 시설 운영비 지원 수준은 미미하다. 연방정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그 전까지 지원하던 지역사회 중일보육센터 운영비 보조금 제공을 중단하였다. 현재 운영비는 부분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면 다기능 원주민보육시설(Multifunctional Aboriginal Care Service), 연방정부가 공급하는 일시보육시설(Occasional Care Service),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보육 조정기구(Coordination Unit)에 운영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 취약지역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지역사회 중일보육시설과 방과후 보육시설에 시설 수리비 등을 별도 지원하며, 이외에 장애아동 가정보육제공자에게는 장애아 가정보육추가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신규로 설치하는 가정보육 및 방과후 시설에 대하여 설비, 장비 및 설치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New Southern Wales, Northern Territories는 연방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게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OECD, 2002).

보호자에 대한 지원은 2000년 7월부터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CCB)로 일원화되었다. 보호자에 대한 지원은 소득, 재산, 취업유무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소득이 많더라도 일정액의 지원을 받게 된다.¹⁹⁾ 지원 대상 서비스의 유형에는 인가보육과 등록보육이 모두 포함된다. 인가보육(approved care) 시설은 종일보육, 가정보육, 방문보육(in-home care), 방과후보육, 휴일보육, 일시보육 등을 포함하며,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CCB를 받을 수 있다. 등록보육(registered care)은 조부모, 친척, 친구, 이웃, 가정부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육이며, 보육 제공자는 가족지원국(Family Assistance Office)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부모가 보육제공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CCB의 지원수준은 연간소득, 재산, 보육의 유형 및 시간, 보호자의 취업여부, 보육에 대한 필요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시설보육 또는 개인에 의해 돌보게 하는 등록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부모는 취업 등 요건에 따라 아동 1인당 1주일에 최고 24시간, 50시간의 비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당 24시간까지 기본으로 보장하고, 그 이상은 취업 등 조건에 따라 50시간까지 지원을 보장한다.

24시간 이상 50시간까지 지원 받기 위한 조건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찾고 있는 경우, 혹은 학업이나 연수중인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발과 관련된 정부 지원(Carer Allowance, Carer Payment)을 받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에 대한 일차적인 양육의 책임이 있고 소득보장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조부모가 주 보호자인 아동을 위한 특별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2004년부터 50시간 이용 조건을 면제하여 주었다.²⁰⁾

지원 금액은 보호자의 소득수준, 자녀수, 아동의 취학여부,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보육시간 등에 따라 정해진다. 크기는 가구소득과 아동수별 지원 비율로 이 두 가지 요인이 연계되어 있다. 2011년 현재 인가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연소득이 1자녀 기준으로 13만 3,443불 이상이면 최소비율 16.8%를 지원 받고, 소득수준이 3만 9785불 이하이면 100%의 최고 비율이 적용된다. 그 외 연소득에는 1,000불을 단위로 매우 정교한 지원 비율(Partial rate)이 적용되어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자녀수가 증가하면 지원 비율도 증가한다.

지원 수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인가보육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19)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CCB)는 종전 자산조사를 통해 제공되던 아동보육부조(Child Care Assistance)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족에게 적용되던 보육료 환불제도(Child Care Cash Rebate)를 통합한 것임.

20) 과거에는 20시간, 21~50시간, 50시간 초과로 구분하였음. 50시간 이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이나 학업, 연수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이 일주일에 50시간(출퇴근 시간 포함)을 넘을 경우에 허용하였음.

있지만 등록보육에는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인가보육 이용자는 지원단가인 시간당 3.68불을 모두 지원 받으며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액이 낮아져 최소 지원액은 단가의 16.8%인 시간당 0.615불이 된다. 그러나 등록보육에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액인 시간당 0.615불을 적용된다.

다. 영국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소득층은 무상보육이지만 일반아동은 공공보육시설이 제한적이므로 비용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보육지원은 전국 800여개 이상의 슈어스타트 아동센터에서 실시되고, 그 이외는 세제제도를 통하여 부모 보육료를 지원한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5세인 영국은 3, 4세 유아는 연간 38주 동안 주당 15시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 보육·교육 대상 서비스는 유치원, 유아원, 가정보육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는 유아교육 개혁 10개년 계획(A ten year strategy for childcare)에 의한 것이다. 영국은 2004년 12월에 유아교육 개혁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06년 4월에 영유아 무료 교육기간 및 주당 교육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10개년 보육·교육전략 행동계획(Action Plan for the Ten Year Childcare Strategy)을 발간하였다. 이 10개년 계획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선택성과 탄력성,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접근성,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 보육 이용 가능성 등을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주요 실행계획으로 2006년 4월에 3, 4세 아동 무료 교육시설 이용기간을 연간 33주에서 38주로 연장하였고(HM government, 2004; HM Treasury et al., 2006), 또한 빈곤층 자녀 2세아 무료 보육을 시범 실시하여 1만 2천명이 수혜받도록 하고, 65만명 이상의 아동이 슈어스타트 아동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re)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영국은 2010년까지 아동빈곤을 퇴치하겠다는 정부의 개혁의지에 따라 영국 전역에 걸쳐 800여개 이상의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를 설립하고²¹⁾. 2006년 9월에 2,500여 개의 학교를 이용하여 학교시간 전후 아동보육을 제공하고, 2007년에는 무료 교육 이용시간을 주당 12.5 시간에서 15

21) 슈어 스타트(Sure Start)는 영국 잉글랜드 정부의 아동 대상 프로그램으로, 원래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한 보육, 교육, 건강 및 가족 지원 서비스를 함께 하는 것으로, 모든 아이들의 보육 가능성을 높이고, 아동의 건강과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며, 그 부모를 부모로서 그리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부모·지역사회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영국내 하위 20% 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동과 그 이외 지역 아동의 격차를 없앤다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임.

시간으로 시범확대하고, 2010년에 무료 교육 이용시간 주당 15시간으로 전 기관에 확대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주당 20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011년 현재 첫째 아동은 주당 20파운드이고, 그 이후 출생 아동은 아동 1인당 각각 일주일에 13.20파운드가 적용된다.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이나 저축 등에 관계없이 1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면세가 되는 급여이다.²²⁾

영국의 세액공제는 2003년에 도입된 제도로, 부양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에 참여하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가 있다. 2002년 아동세액규정(The Child Tax Credit Regulations 2002)에 의한 아동세액공제는 영유아 및 교육받는 아동을 양육하는 16세 이상 부모가 대상이며, 취업 및 소득과 연계하여 세액을 공제한다. 아동세액공제는 대상 아동이 통상 만 15세 생일 이후 9월 1일까지 적용되고 장애아동은 만 16세 생일 이후 9월 1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전일제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19세까지 적용되며, 16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교육중인 경우에도 특정조건을 전제로 20주 동안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영국의 자녀를 기르는 가정 중 90%는 공제를 받는다.

아동을 기르는 가족이 받는 공제는 소득수준, 자녀수, 근로여부 및 시간, 지출한 보육료 등에 의해 결정된다. 2011년부터 적용되는 제도는 지급 대상이 다소 축소되었는데, 먼저 일하지 않거나 부부가 주당 16시간 미만을 일하는 부모의 공제금액은 아동세액공제액만으로는 연 소득 41,300파운드까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한다. 최대는 한자녀 3,100파운드, 두자녀 5,660파운드, 세자녀 8,220 파운드이고 최저는 모두 545파운드를 공제 받는다. 공제 대상 상한선이 낮아졌다. 다음으로 1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와 보육료 지출액에 따라 차등을 둔다. 최대 지원은 보육료의 70%이다. 2006년 4월에 80%로 올렸다가 2010년에 다시 70%로 하향 조정하였다.²³⁾

여기에 적용되는 보육서비스는 승인(approved) 보육서비스 및 등록(registered) 보육서비스이다.

22) 아동 연령이 16세나 17세라도 교육이나 훈련 중이거나 또는 승인된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교육 중이면 수혜 대상이 됨. 아동이 함께 살지 않더라도 아동을 부양하고 지불하는 액수가 수당 급여액보다 많으면 신청 대상이 된다. 부모가 없는 아동은 보호자 수당으로 아동 당 주에 14.30파운드를 지급함.

23) 부부가 종일제로 근로하며 연소득이 25,000파운드이고 세 자녀를 부양하면서 주당 300파운드 이상을 보육료로 지급할 경우에 16,185파운드를 받을 수 있음.

한편으로 근로자의 자녀양육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한다. 첫째는 고용 취업보육수당, 보육비, 교육비 지원으로, 이는 소득세 및 국가보험금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고용주가 보육 바우처²⁴⁾, 계약에 의한 위탁 보육, 사업장에 유아원을 설치·운영하여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소득세 및 국가보험금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조세 부담과 보험금 부담을 감소시켜 그 만큼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2007년 조사에서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55%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의 18%가 비용을 지원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04년 15%에 비하여 증가된 비율이다.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가장 보편적인 지원은 지방교육당국으로부터의 지원으로, 61%가 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외 19%는 고용주, 6%는 전 배우자 및 파트너이고 4%가 사회서비스, 2%가 보육지원기금 등이다.²⁵⁾

라. 캐나다

공공시설이 제한적인 캐나다의 보육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부담금,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보조금,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이 다양하게 결합하여 재정을 충당한다. 퀘벡주를 제외한 주·준주에서 보육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요자 부담으로 이용 아동의 부모가 보육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육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주로 아동별 지원으로 차등보육료, 아동세액 공제 등 지방정부에 따라 다양 방법이 채택되며, 최근에는 아동양육수당이 바우처 형태로 실시되어 광범위한 선택을 허용하고 또 미사용시에는 아동별로 적립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OECD, 2006).

캐나다 대부분의 주·준주의 부모 보조금 지원 제도는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우선 대상이 앨버타 주를 제외한 주·준주에서 보육료는 일반적으로 아동이 초등학교 최대 연령인 12~13세가 될 때까지 지원한다.

보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가구형태와 자녀수, 자녀 연령 등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는 사회적 기준으로 부모의

24) 기업의 보육 바우처는 급여의 일부를 보육 바우처로 받고 그 만큼은 소득세 대상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임. 상세한 내용은 서문의 외(2009) 참조,

25)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 Childcare and Early Years Survey 2007 Parent's Use Views and Experiences. <http://www.dfcsf.gov.uk>

취업, 학업, 훈련 상태나 장애, 건강상태와 아동의 특수욕구나 위험요인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구형태별로 연간 순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다. 연간 순소득이 전액지원 소득기준과 미지원 소득기준일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일부 주·준주는 2007년에 비해 소득 자격기준이 올라갔으며, 나머지 주는 동일하다.

보조금은 등록된 종일제 기관과 등록된 가정보육서비스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비용은 부모가 아닌 보육시설에서 직접 수령한다.

한편, 퀘벡 주의 보육비용 지원은 다른 지역과 다르다. 1997년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퀘벡주 보육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법률(Québec's Act Respecting Childcare Centres and Childcare Services)에서 '모든 아동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질 좋고 연속성 있는 개별적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편주의적 원칙을 밝히고, 일정 비용을 정부가 보육시설에 아동 1인당 비용으로 직접 운영비용 지원하고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형태로 투자를 강화하였다. 1997년에는 4세 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하루 5달러로 제한하고, 1998년 9월, 3세 아동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2001년에는 12세 이하 아동이 이용하는 모든 보육서비스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 11월에는 보육비가 7달러로 상승하여 현재 유지되고 있다. 이는 보육비용의 14%이다. 즉, 86%는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소득이나 취업(학업)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 주당 23시간까지 무료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바. 프랑스

프랑스는 유아는 공공시설에서 무상으로 교육하는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영아는 가정보육을 활성화하여 부모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분법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유아는 거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에서 무료 공교육을 받으며, 영아는 서비스 이용에 한하여 부모보조금을 가족기금으로 지원한다. 유아도 서비스에 따라서 보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모보조금 재원은 기업과 국가가 조성한 프랑스 가족수당기금(Cnaf: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이다. 이는 모든 가족 수당 제도에 대해 돈을 조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123개 지역 가족수당기금(caf)으로 구성된 조직망의 상부기관이다. 중앙기관인 중앙가족수당기금(Cnaf)은 사회복지정책의 큰 방향성을

결정하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사무소에 재량권을 맡기고 있다. 재원은 기업과 국가로부터 조성된다.

6세 미만의 자녀를 인가 받은 보육시설에 맡기거나 가정에서 도우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경우 부모가 지급하는 보육료의 일부분을 가족수당금고가 지급한다(보육방식 자유선택 보조금,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2011년 현재 수급조건으로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월 소득액이 최소 395.04유로가 되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 소득액이 최소 790.08유로가 되어야 한다. 비급여자 혹은 파트타임 근무자인 경우에도 소득액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정 내 보육도우미를 고용하여 한 달에 16시간 이상 보육하는 경우 보육도우미는 반드시 “모성유아보호”기구가 인가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보육보조금도 하나의 수당 형태로 지원된다. 소득수준을 3구간으로 나누고, 대상은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차등을 두며, 보육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차등으로 다르게 지원한다. 가족수당금고가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액수는 소득, 자녀 수, 자녀 연령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비용의 최소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근무기간 50%나 그 이하의 파트타임 근무로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²⁶⁾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육인 고용 비용 액수가 양분되어 지급되게 된다. 자녀가 주일이나 공휴일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보육을 받고 있다면 10% 인상 된 보육인 고용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 비용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유아 공교육 예산의 GDP 대비 비율은 1.0%이다(OECD, 2006). 육아지원서비스 비용분담은 기관 이용이나 가정보육 보육비용의 42.7%는 정부가 부담하고 27.7%는 가족수당기금(Family Allowance Fund)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27.3%는 부모가 부담한다(OECD, 2004). 보육에 대한 공적 투자는 아동 월 1인당으로 환산하면 2001년 기준으로 집단보육시설은 1,166유로, 가정보육은 707~900유로이고, 가정내 보육은 1,671유로이다.

아. 스웨덴

스웨덴 영유아 기관 이용 비용은 공공시설과 시설보조금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영유아는 가구 평균소득의 3%를 보육료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26) 제IV장에서 상세히 설명

비영리 단체나 부모협동 등에 의해 운영하는 사립보육시설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보조 방식은 인건비지원, 시설지원 등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원방식은 시설보조금 지원이 주된 방법이지만 1993년에는 스톡홀름에서 처음으로 아동별 지원을 실시하여, 현재 2개 지역에서 아동별로 지원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08년 예산(Budget Bill for 2008)에서 아동보육 바우처 제도(Childcare voucher system)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부모의 보육비용²⁷⁾은 이용시간, 월수입, 전체 자녀수 등과 각 지방에 따라 그리고 이용 기관 유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부모보조금은 1999년부터 부모비용 상한제(Maxatasa)를 실시하고, 2002년에 법제화하였다. 출생순위에 따라 영유아는 첫째아는 최대 3%, 둘째아는 2%, 셋째 자녀 1%, 넷째 이상은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방과후 보육은 첫째아는 최대 2%, 둘째아와 셋째 자녀는 1%, 넷째 이상은 무료이다. 보육비용 상한제는 공공성이 강한 부모협동, 직원협동, 기업운영 사립 시설은 물론 소수의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²⁸⁾

총 비용 중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유아학교 8%, 레저타임센터 16%, 가정보육 10%로 정부가 80% 이상을 책임진다. 가정보육 이용 아동도 시설 이용 아동과 마찬가지로 1985년 이래 부모는 비용의 약 15% 정도만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지불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크다.²⁹⁾

보편적인 보육정책을 추구하는 스웨덴에서도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분하는 정책이 채택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유아학교 이용과 관련하여 취업, 학업 등의 이유에 따른 제한은 이용하는 시간으로 구분된다. 현재 부모가 취업, 학업 상태인 경우에 90%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당 40시간, 미취업 및 육아휴직 상태에 있는 부모 자녀는 15시간 이용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조차도 2000년 이후 개혁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채택되었고 그 이전의 영유아 서비스는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없는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여서 지방자치단체 중 약 1/2이 미취업 및 육아휴직 상태에 있

27) 기관보육을 이용할 경우 한 달에 약 750~1000달러 정도가 들며,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아동보육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 충당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구당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표준액을 산정함.

28) <http://utbildning.regeringen.se>

29) Korpi(2007) THE POLITICS OF PRE-SCHOOL: intentions and decisions underlying the emergence and growth of the swedish pre-schoo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7)

는 부모 자녀에게는 이용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2001년 1월부터 취업이나 학업 상태가 아니어도 최대 15시간의 유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고, 2002년부터는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 아동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상태에 있는 자녀도 유아학교 입학에 허용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모든 4~5세 아동에게 연 525시간의 무상 교육을 보장하였다.³⁰⁾

2002년 현재 스웨덴에서 공공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GDP 대비 1.4%이다. 취학 전 교육과 방과후에 각각 0.2%, 0.4%가 들어가서 보육에 모두 2.0%가 투자되고 있다(OECD, 2005)

공적 투자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복지위원회를 통해 보육부담금을 중앙 정부로부터 받거나 지방세 중 보육부담금 및 기타 지방세를 통하여 충당한다. 예산은 주에서 편성하여 하부 지방정부에 정액보조금(Block Grant) 형태로 제공한다. 스웨덴은 지역간 재정 상태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지방세 동일화(Income Levelling System)를 도입하고 있다.

자. 핀란드

핀란드 보육비용 지원은 공공 및 사립 기관 이용과 부모 양육 지원이 혼합되어 있다. 자녀가 출생하면 부모들은 대개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를 하는데, 부모휴가가³¹⁾ 끝나고 나면 아동 양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선택지는 공공 보육시설 이용, 사립보육시설 수당을 받으며 사립보육시설 이용, 휴직하고 양육수당을 받으며 부모 직접 양육이며, 어린이집 이용과 부모 직접 보육이 혼합된 유형도 가능하다.³²⁾

법적으로 1973년 아동보육법으로 지방정부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을 명시하였고, 1990년에 만3세 이하 아동에 한하여 공공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6년

30) 이러한 정책은 1990년대 후반에 경제가 좋아지면서 1998년에 보육료를 반으로 줄이자는 사회 민주당 선거 공약이 탄력을 받아 비용 상한제, 미취업모 자녀를 포함한 보편적인 유아학교, 그리고 4세 이상 무상 정책 등이 개혁정책이 채택된 것임(Korpi, 2007).

31) 핀란드는 105일¹⁾간의 출산 휴가와 158일의 부모휴가가 주어진다. 부모휴가는 다산아 출산시 아동당 60일이 연장됨. 아버지는 어머니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 18일을 아버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수당을 받음. 출산휴가와 부모휴가는 최소액이 할 15.2유로이나 모두 소득수준과 연계됨. 이는 조세 대상에서 제외됨.

32)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2006) Brochures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06). Finland's Family Policy <http://www.stm.fi>

에 보육서비스는 취학전 아동으로 확대하였고, 1997년에 사립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 사립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즉, 육아휴직은 무급이지만 육아휴직을 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직접 돌볼 경우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공공어린이집에 가면 공립보육시설 이용료는 가족 규모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대체로 지방정부가 비용의 85%를 지원하고 부모 비용 부담률은 약 15%이다. 보육료 상한선도 책정되어 2005년 기준으로 첫째아 200유로, 둘째아 180유로, 그 이상아 40유로이다.

소수이지만 사립보육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으로 기본 수당이 자녀 1인당 2011년 160.64유로에다 소득 등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되는데 가산금의 최고 액수는 135.09유로이다. 즉, 정부가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을 주는 방식으로 부모 부담을 보조한다.

차. 노르웨이

노르웨이도 다른 노르딕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육비용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책임진다. 노르웨이는 2004년에 비용 상한제를 도입하여 2011년 현재 월 2,330크로네를 상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부모 부담이 총 비용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88%가 이 상한선을 지키고 있다. 방과후 보육 부모비용은 지방정부가 결정한다.

시설의 운영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부모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정부 지원은 사립과 공립에 거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2010년 현재 사립시설도 부모부담은 19% 정도로 공립과 동일하고 국가가 60%, 해당 지방정부가 23%를 지원한다.

영유아 서비스에 투자하는 비용은 2004년 기준으로 GDP 대비 1.7%로 추정된다. 이는 덴마크 2.1%, 스웨덴 1.9% 정도 보다 낮으나 핀란드의 1.1%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표 II-3-1〉 사립기관 운영 재원(2010)

단위: %

| 구분 | 부모 | 정부 | 지방정부 | 타 지방정부 | 기타 |
|----|----|----|------|--------|----|
| 비율 | 19 | 60 | 23 | 1 | 2 |

자료: http://www.ssb.no/barnregnp_en/tab-2011-06-28-01-en.html

Ⅲ. 어린이집 운영 특성

제3장에서는 2012년 4월 기준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어린이집 규모, 반 운영, 정원충족률 등 운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어린이집 규모별로 기본 반 운영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는 4, 5장에서 실시한 모형별 어린이집 재정 현황 분석과 수입과 지출 시뮬레이션에서 기본 모형으로 사용하였다.

1. 어린이집 정원과 정원 충족률

가. 어린이집 정원

어린이집 정원 평균은 국공립어린이집은 74인, 법인은 98인, 민간개인은 62인, 가정 어린이집은 18명 규모이다. 중위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49~79인 사이에, 법인은 79인~99인 사이에 위치하며 민간개인어린이집은 39~49인 사이에 위치한다.

〈표 III-1-1〉 다빈도 정원 비율 및 평균

단위: 천원(%)

| 구분 | 국공립 | | | 법인 | | | 민간개인 | | | 가정 | | |
|------|--------|-----|------|--------|-----|------|---------|-----|------|---------|------|-------|
| | 수 | 비율 | 누적비율 | 수 | 비율 | 누적비율 | 수 | 비율 | 누적비율 | 수 | 비율 | 누적비율 |
| 20인 | 35 | 1.6 | 2.3 | | | | | | | 8042 | 37.6 | 100.0 |
| 27인 | 27 | 2.3 | 1.3 | | | | 338 | 2.4 | 11.2 | | | |
| 39인 | 35 | 1.6 | 15.9 | 19 | 1.3 | 4.0 | 1417 | 9.9 | 43.6 | | | |
| 49인 | 83 | 3.8 | 29.3 | 57 | 3.9 | 14.7 | 964 | 6.8 | 59.2 | | | |
| 79인 | 115 | 5.3 | 61.5 | 54 | 3.7 | 35.6 | 119 | 0.8 | 74.9 | | | |
| 99인 | 78 | 3.6 | 83.8 | 119 | 8.1 | 64.1 | 346 | 2.4 | 86.8 | | | |
| 131인 | 17 | 0.3 | 93.1 | 21 | 1.4 | 81.7 | 22 | 0.2 | 92.8 | | | |
| 150인 | 8 | 0.4 | 96.7 | 8 | 0.6 | 89.3 | 23 | 0.2 | 95.3 | | | |
| (수) | (2160) | | | (1449) | | | (14258) | | | (21377) | | |
| 평균 | 74.3 | | | 97.8 | | | 62.1 | | | 17.7 | | |
| 표준편차 | (35.8) | | | (44.0) | | | (43.2) | | | (3.0) | |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2. 4). 전체 어린이집 현황 자료

표준 편차는 국공립어린이집은 35.8, 법인과 민간개인어린이집이 43~44명 수준으로 유사하고 가정어린이집은 3명 정도이다.

다빈도 어린이집 규모는 국공립은 79인이 5.3%, 49인과 99인이 각각 3.8%, 3.6%로 비교적 높다. 법인은 99인이 8.1%로 가장 많고 49인과 79인이 각각 3.9%, 3.7%이다. 민간개인은 39인이 9.9%로 가장 많고, 49인이 6.8%이다. 가정은 20인 정원이 37.6%를 차지한다.

나.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앞에서 나타난 어린이집 유형별로 다 빈도 정원을 기준으로 정원 충족률을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93.0%이고 표준 편차는 13.2명으로 비교적 균질적인 정원충족률은 유지한다. 시설규모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20인과 39인 어린이집이 소수이지만 85% 미만으로 정원 충족률이 낮고 표준편차가 커서 시설로 차이가 크음을 알 수 있다. 법인어린이집은 전체 정원 충족률이 평균이 76.2% 정도에 불과하다. 조사된 정원규모별로는 131인 어린이집을 빼고는 대체로 평균보다는 높은 정원충족률을 보이고 있다. 민간개인어린이집 평균은 85% 수준이고 제시된 규모별로도 대체로 80% 이상으로 평균에 근접하는 비율을 보인다. 가정어린이집은 20인 규모에서 정원 충족률이 88%를 나타낸다.

〈표 III-1-2〉 현원 비율

단위: %(개소)

| 구분 | 국공립 | | | 법인 | | | 민간개인 | | | 가정 | | |
|-----|---------|------|-------|---------|------|-------|----------|------|-------|----------|------|-------|
| | (수) | 평균 | 표준 편차 | (수) | 평균 | 표준 편차 | (수) | 평균 | 표준 편차 | (수) | 평균 | 표준 편차 |
| 전체 | (2,160) | 93.0 | 13.2 | (1,449) | 76.2 | 20.9 | (14,258) | 84.8 | 21.3 | (21,377) | 88.4 | 23.4 |
| 20 | (35) | 84.1 | 27.2 | - | - | - | - | - | - | (21,377) | 88.4 | 23.4 |
| 27 | (27) | 97.7 | 5.3 | - | - | - | (338) | 86.6 | 22.4 | - | - | - |
| 39 | (35) | 81.6 | 23.5 | (19) | 82.3 | 15.2 | (1,417) | 81.7 | 23.4 | - | - | - |
| 49 | (83) | 92.5 | 15.4 | (57) | 82.5 | 20.6 | (964) | 84.8 | 20.6 | - | - | - |
| 79 | (115) | 96.3 | 7.7 | (54) | 81.3 | 22.7 | (119) | 86.3 | 18.3 | - | - | - |
| 99 | (78) | 97.5 | 5.1 | (118) | 81.9 | 19.8 | (346) | 82.1 | 21.9 | - | - | - |
| 131 | (17) | 91.1 | 11.0 | (21) | 73.0 | 25.6 | (23) | 85.5 | 14.5 | - | - | - |
| 150 | (8) | 86.9 | 13.5 | (8) | 85.5 | 21.8 | (22) | 80.9 | 23.2 | - | - | -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2. 4). 전체 어린이집 현황 자료

다음 <표 IV-1-3>는 지역별로 정원 충족률을 시설유형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모두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가면서 정원 충족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III-1-3> 지역규모별 정원충족률

단위: %(개소)

| 구분 | 국공립 | | | 법인 | | | 민간개인 | | | 가정 | | |
|------|---------|-------|-------|-------|------|-------|---------|------|-------|----------|------|-------|
| | (수) | 평균 | 표준 편차 | (수) | 평균 | 표준 편차 | (수) | 평균 | 표준 편차 | (수) | 평균 | 표준 편차 |
| 대도시 | | | | | | | | | | | | |
| 전체 | (1,019) | 94.9 | 11.0 | (396) | 83.4 | 19.9 | (5,632) | 87.8 | 19.5 | (7,150) | 90.8 | 20.6 |
| 20 | (19) | 94.5 | 10.1 | - | - | - | (12) | 96.7 | 29.6 | (7,150) | 90.8 | 20.6 |
| 27 | (8) | 100.5 | 3.7 | - | - | - | (141) | 87.4 | 21.9 | - | - | - |
| 39 | (5) | 78.5 | 17.9 | (5) | 91.8 | 12.1 | (476) | 86.4 | 21.1 | - | - | - |
| 49 | (45) | 96.4 | 7.9 | (16) | 80.0 | 25.6 | (421) | 88.3 | 17.3 | - | - | - |
| 79 | (75) | 96.9 | 6.9 | (10) | 95.3 | 7.2 | (61) | 90.8 | 12.7 | - | - | - |
| 99 | (38) | 98.7 | 4.4 | (18) | 84.3 | 16.0 | (89) | 87.7 | 20.7 | - | - | - |
| 131 | (10) | 91.5 | 12.6 | (8) | 77.0 | 30.3 | (9) | 92.2 | 11.5 | - | - | - |
| 150 | (2) | 68.7 | 16.0 | (2) | 93.0 | 9.0 | (4) | 93.5 | 16.2 | - | - | - |
| 중소도시 | | | | | | | | | | | | |
| 전체 | (651) | 94.5 | 11.4 | (435) | 81.5 | 20.5 | (6,100) | 84.4 | 21.3 | (11,119) | 87.8 | 24.7 |
| 20 | (1) | 100.0 | - | - | - | - | (7) | 90.7 | 23.7 | (11,119) | 87.8 | 24.7 |
| 27 | (15) | 97.8 | 3.9 | - | - | - | (152) | 87.0 | 22.5 | - | - | - |
| 39 | (10) | 98.7 | 3.0 | (5) | 68.2 | 17.8 | (576) | 81.4 | 23.6 | - | - | - |
| 49 | (17) | 89.4 | 23.0 | (22) | 80.0 | 25.6 | (424) | 83.5 | 21.6 | - | - | - |
| 79 | (26) | 97.4 | 3.4 | (11) | 78.6 | 27.2 | (40) | 81.1 | 22.2 | - | - | - |
| 99 | (28) | 96.9 | 5.2 | (36) | 84.5 | 20.4 | (173) | 82.3 | 20.7 | - | - | - |
| 131 | (6) | 90.8 | 10.1 | (3) | 93.1 | 5.5 | (6) | 77.5 | 31.0 | - | - | - |
| 150 | (6) | 93.0 | 5.2 | (3) | 83.3 | 29.4 | (10) | 84.9 | 10.8 | - | - | - |
| 농어촌 | | | | | | | | | | | | |
| 전체 | (489) | 87.1 | 17.2 | (618) | 74.9 | 21.1 | (2,501) | 79.1 | 23.5 | (3,107) | 85.4 | 23.9 |
| 20 | (15) | 70.0 | 35.9 | - | - | - | (6) | 84.2 | 25.4 | (3,107) | 85.4 | 23.9 |
| 27 | (4) | 91.7 | 8.2 | - | - | - | (45) | 82.9 | 24.2 | - | - | - |
| 39 | (20) | 73.8 | 26.4 | (9) | 84.9 | 9.9 | (365) | 76.1 | 24.6 | - | - | - |
| 49 | (21) | 86.7 | 18.1 | (19) | 80.5 | 17.4 | (119) | 77.1 | 24.9 | - | - | - |
| 79 | (14) | 91.4 | 14.2 | (33) | 77.9 | 23.0 | (18) | 82.9 | 21.8 | - | - | - |
| 99 | (12) | 94.7 | 6.2 | (64) | 79.8 | 20.4 | (84) | 75.8 | 23.9 | - | - | - |
| 131 | (1) | 88.6 | - | (10) | 63.8 | 22.3 | (7) | 69.4 | 23.3 | - | - | - |
| 150 | - | - | - | (3) | 82.7 | 26.1 | (9) | 82.4 | 17.4 | - | - | -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2. 4). 전체 어린이집 현황 자료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개인어린이집에 비하여 법인어린이집은 전반적으로

정원충족률이 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규모와 정원충족률의 일관성은 없으나 특히 놓여준 131인 시설은 정원충족률이 63% 수준이다.

2. 어린이집 반 운영

다음은 어린이집 규모별로 반 구성 형태를 빈도가 높은 사례를 파악해 보고 4, 5 장에서의 분석의 기초가 될 모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령별 반 구성은 어린이집 운영의 기초가 된다. 연령혼합반은 연령이 어린 연령반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가. 39인 이하 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은 가정과 민간개인 어린이집 빈도 분포에 따라서 20인 어린이집, 27인 어린이집 및 39인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였다.

〈표 III-1-4〉 39인 이하 어린이집 반 구성

| 연령별 반 구성 | | | | | | | 빈도 | 비율 |
|----------|---|---|---|---|---|---|--------|------|
| 0 | 1 | 2 | 3 | 4 | 5 | 계 | | |
| 20인 | | | | | | | | |
| 1 | 1 | 1 | 0 | 0 | 0 | 3 | 590 | 7.3 |
| 1 | 2 | 1 | 0 | 0 | 0 | 4 | 1488 | 18.5 |
| 2 | 1 | 1 | 0 | 0 | 0 | 4 | 1696 | 21.1 |
| 2 | 2 | 0 | 0 | 0 | 0 | 4 | 528 | 6.6 |
| 2 | 2 | 1 | 0 | 0 | 0 | 5 | 595 | 7.4 |
| (수) | | | | | | | (8042) | |
| 27인 | | | | | | | | |
| 0 | 1 | 1 | 1 | 0 | 0 | 3 | 40 | 11.8 |
| 1 | 1 | 1 | 1 | 0 | 0 | 4 | 30 | 8.9 |
| 2 | 2 | 1 | 0 | 0 | 0 | 5 | 23 | 6.8 |
| (수) | | | | | | | (338) | |
| 39인 | | | | | | | | |
| 0 | 1 | 1 | 1 | 1 | 0 | 4 | 75 | 5.3 |
| 0 | 1 | 2 | 1 | 0 | 0 | 4 | 86 | 6.1 |
| 1 | 1 | 1 | 1 | 0 | 0 | 4 | 91 | 6.4 |
| 1 | 2 | 1 | 1 | 0 | 0 | 5 | 74 | 5.2 |
| (수) | | | | | | | (1417) |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2. 4). 전체 어린이집 현황 자료

가정어린이집인 20인 규모의 어린이집의 반 구성의 최대 빈도는 4개반으로 구성되어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혼합반을 포함하여 0세아반 2반, 1세와 2세아반이 각각 1반씩인 모형으로 전체 정원 20인인 가정어린이집의 21.1%를 차지한다. 다음은 1세아반이 2반이고 1세아반과 2세아반이 각각 1개반씩인 어린이집으로 18.5%를 차지한다. 모형으로는 다빈도인 0세아반 2반, 1세와 2세아반이 각각 1반씩인 4개반 모형을 선정하였다.

27인 규모의 민간개인어린이집의 반 구성의 최대 빈도는 3개반으로 구성되어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혼합반을 포함하여 1세아반, 2세아반, 3세아반 각각 1반씩인 모형으로 전체 정원 27인 어린이집의 11.8%를 차지한다. 다음은 0세아~3세아반이 각각 1개반씩인 어린이집으로 8.9%이며, 영아만 보육하는 5개반을 둔 어린이집이 6.8%이다. 모형으로는 0~3세아반이 각 1반씩인 4개반 모형을 선정하였다.

39인 규모의 민간개인어린이집의 반 구성은 5개의 유형이 5~6% 내외를 차지한다. 최대 빈도는 0~3세반이 각각 1개인 4개반으로 구성하는 형태로 6.4%이다. 그 이외의 유형은 이러한 반 구성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차이가 난다. 분석의 기준 모형으로는 0세아와 2, 3세아반이 각 1반씩이고 1세아 반이 2개반으로 총 5개반 모형을 선정하였다.

나. 49인 이상 어린이집

먼저 49인 이상 어린이집을 국공립, 법인, 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여기서 연령혼합반은 교사대 아동 수를 어린 연령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1, 2세 혼합반은 1세반, 3,4세 혼합반은 3세반으로 분류하였다.

49인 시설을 보면 시설 유형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최대빈도를 기록한 반 구성은 연령혼합반을 포함하여 0세아반은 단독 및 혼합반은 없고, 1세아반 1반, 2세아반 2반, 3세아반 1반, 4세아반 1반이며, 5세아 단독반은 없다. 이러한 반 구성은 49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20%를 차지한다. 다음의 빈도는 0~4세까지 각 한 반씩 5개 반을 운영하는 사례로 9.6%이며, 1~4세까지 각 한 반씩 4개 반을 운영하는 사례가 그 다음으로 8.4%이다. 다음 법인 어린이집은 반 구성이 국공립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서 최대빈도를 기록한 반 구성은 연령혼합반을 포함하여 0세아반은 단독 및 혼합반은 없고, 1세아반 1반, 2세아반 2반, 3세아반 2반, 4세아반 1반이며, 5세아 단독반은 없이 총 6개반으로 구성하는 비율이 약 7%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1~4세까지 각 한 반씩 4개 반을 운영하는 사례로 5.3%이다. 민간개인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나타난 3가지 반 구성이 유사한 비율로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모형은 국공립과 민간개인 어린이집의 다빈도 반 구성을 선정하였다

〈표 III-1-5〉 49인 이상 어린이집 반 구성

| 연령별 반 구성 | | | | | | | | 국공립 | | 법인 | | 민간개인 | |
|----------|---|---|---|---|---|----|----|-------|----|-------|----|-------|----|
| | | |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0 | 1 | 2 | 3 | 4 | 5 | 계 | | | | | | | |
| 49인 | | | | | | | | | | | | | |
| 0 | 1 | 2 | 1 | 1 | 0 | 5 | 17 | 20.5 | 1 | 1.8 | 52 | 5.4 | |
| 1 | 1 | 1 | 1 | 1 | 0 | 5 | 8 | 9.6 | - | - | 40 | 4.1 | |
| 0 | 1 | 2 | 2 | 1 | 0 | 6 | - | - | 4 | 7.0 | 2 | 0.6 | |
| 2 | 3 | 3 | 0 | 0 | 0 | 8 | 1 | 1.2 | 3 | 5.3 | - | - | |
| 0 | 1 | 1 | 1 | 1 | 0 | 4 | 7 | 8.4 | 3 | 5.3 | 46 | 4.8 | |
| (수) | | | | | | | | (83) | | (67) | | (964) | |
| 79인 | | | | | | | | | | | | | |
| 0 | 2 | 2 | 1 | 1 | 1 | 7 | 40 | 34.8 | 7 | 13.0 | 5 | 4.2 | |
| 0 | 1 | 2 | 1 | 1 | 1 | 6 | 31 | 27.0 | 6 | 11.1 | 7 | 5.9 | |
| 0 | 0 | 2 | 1 | 1 | 1 | 5 | - | - | 6 | 11.1 | 1 | 0.2 | |
| 0 | 0 | 2 | 2 | 1 | 1 | 6 | 1 | 0.9 | - | - | 7 | 5.9 | |
| (수) | | | | | | | | (115) | | (54) | | (119) | |
| 99인 | | | | | | | | | | | | | |
| 0 | 2 | 2 | 2 | 1 | 1 | 8 | 7 | 9.0 | 5 | 4.2 | 14 | 4.0 | |
| 0 | 2 | 3 | 2 | 1 | 1 | 9 | 5 | 6.4 | 3 | 2.5 | 9 | 2.6 | |
| 2 | 3 | 2 | 1 | 1 | 1 | 10 | 5 | 6.4 | - | - | - | - | |
| 0 | 2 | 2 | 1 | 1 | 1 | 7 | 4 | 5.1 | 6 | 5.1 | 6 | 1.7 | |
| 0 | 1 | 2 | 2 | 1 | 1 | 7 | 1 | 1.3 | 5 | 4.2 | 9 | 2.6 | |
| 0 | 0 | 3 | 2 | 1 | 1 | 7 | - | - | 1 | 0.8 | 12 | 3.5 | |
| (수) | | | | | | | | (78) | | (118) | | (346) | |
| 131인 | | | | | | | | | | | | | |
| 0 | 3 | 2 | 2 | 2 | 1 | 10 | - | - | 1 | 4.8 | - | - | |
| (수) | | | | | | | | (17) | | (21) | | (22) | |
| 150인 | | | | | | | | | | | | | |
| 0 | 0 | 3 | 4 | 2 | 1 | 10 | - | - | 1 | 12.5 | - | - | |
| (수) | | | | | | | | (8) | | (8) | | (23) |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2. 4). 전체 어린이집 현황 자료

79인 시설은 시설 유형별 차이가 크지 않다. 연령혼합반을 포함하여 0세아반은 단독 및 혼합반은 없고, 1세아반 2반, 2세아반 2반, 3세아반 1반, 4세아반 1반이며, 5세아반 1반으로 총 7개 반 운영이 79인 국공립어린이집의 34.8%로 다수이며 법인 어

린이집도 13.0%를 차지하고 민간개인어린이집도 4.2%이다. 다음의 빈도는 앞의 반 구성에서 1세아반을 한반 줄여서 6개반으로 운영하는 모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27.0%, 법인어린이집의 11.1%, 민간개인어린이집의 5.9%이다.

특이한 점은 법인어린이집의 79인 시설 중 0, 1세아 반은 없고 2세아반 2반, 3~5세아반이 각 1반씩으로 총 5개 반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0% 이상이라는 점이다. 또한 민간개인어린이집 중 0, 1세아 반은 없고 2~3세아반 각 2반, 4~5세아반 각 1반씩으로 총 6개 반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5.9%이다. 분석 모형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다빈도인 총 7개반 구성을 선정하였다.

99인 어린이집의 경우도 시설 유형별 차이가 크지 않아서, 3가지 어린이집 유형 모두 연령혼합반을 포함하여 0세아반은 단독 및 혼합반은 없고, 1세아~3세아반이 각각 2반씩이고, 4세아와 5세아반이 각각 1반으로 총 8개 반 운영이 99인 국공립어린이집의 9.0%, 법인 어린이집의 4.20%, 민간개인어린이집도 4.0%이다. 이외에 반 수 7~10개로 다양한 연령별 조합이 있는데, 0세아반을 두고 있는 비율이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있으나 법인 및 민간개인 어린이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분석 모형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개인 어린이집의 다빈도인 총 8개반 구성을 선정하였다

131인 어린이집은 사례수가 적고 반 구성도 제각각이므로 다 빈도 유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임의로 반 구성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반 구성 유형은 연령혼합반을 포함하여 0세아반은 1개반 3개반, 2세아반~4세아반이 각각 2반씩이고, 5세아반은 없이 총 10개 반 운영을 선정하였다. 이는 중소도시 소재 법인어린이집 사례 중에서 선정한 것이다.

150인 어린이집 역시 131인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사례수가 적고 반 구성도 제각각이므로 다 빈도 유형을 찾을 수 없어서, 연구자가 임의로 반 구성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반 구성 유형은 유아 중심 반으로 연령혼합반을 포함하여 0세아 반과 1세아 반은 없고 2세아반이 3반이고, 3세아반이 4개반, 4세아반 2개반, 5세아반 1개반으로 총 10개반을 운영하는 모형을 선정하였다.

IV. 어린이집 재정 운영 실태 분석

제4장에서는 2012년 4월 기준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재정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원충족률 및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 평가인증, 통학차량 운영, 보육교직원 현황 등의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 제시한 기준 모형과 동일한 어린이집 규모와 시설유형 등을 지역규모별로 분석하였다. 어린이집 수입은 수입과목별로, 지출은 인건비 과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20~27인

가. 국공립어린이집(20인 영아전담)

0세 2반, 1세 1반, 2세 1반 총 정원 20명의 영아전담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입과 인건비 지출 구조를 분석하였다.

<표 IV-1-1>의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은 동일하나 대도시2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1명 더 많다. 두 어린이집 모두 정원충족률이 100%이고, 평가인증으로 취사부 1명 인건비와 시간연장보육으로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80%를 지원 받는다.

〈표 IV-1-1〉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국공립(20인 영아전담)

단위: 명, %

| 구분 | 보육 아동 | | | 보조금 | | | 프로그램 지원 | 평가 인증 | 통학 버스 | 보육교직원 | | | | |
|------|-------|----|-------|--------|----------|----|---------|-------|-------|-------|------|----|----|------------------|
| | 영아 | 유아 | 정원충족률 | 인건비 지원 | 기본보육료 지원 | 기타 | 취약보육 | | | 원장 | 보육교사 | | | 기타 ¹⁾ |
| | | | | | | | | | | | 영아 | 유아 | 기타 | |
| 대도시1 | 20 | - | 100.0 | ○ | - | - | 시간연장 | ○ | - | 1 | 3 | - | 1 | 1 |
| 대도시2 | 20 | - | 100.0 | ○ | - | - | 시간연장 | ○ | - | 1 | 4 | - | 1 | 1 |

주: 1) 기타 인력에는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차량기사 등이 포함됨.

어린이집 수입구조를 보면, 인건비보조금과 보육료가 전체 수입의 95% 이상을 충당한다. 나머지는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로 보완한다(표 IV-1-2 참조).

〈표 IV-1-2〉 어린이집 수입 비율: 국공립(20인 영아전담)

| 구분 | 보육료 | 보조금 | | | | 필요경비 | | 잡수입 | 전입금 |
|------|------|------------|-----------|-----------|-----------|------------|-----------|-----|-----|
| | | 인건비 보조금 | 기본 보육료 | 기타 지원금 | 자본 보조금 | 기타필 요경비 | 특별활 동비 | | |
| 대도시1 | 41.3 | 55.7 | - | - | - | 2.2 | 0.8 | - | - |
| 대도시2 | 42.3 | 52.7 | - | - | - | 1.8 | 1.0 | - | - |

총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도시1 78.4%, 대도시2 84.1%로 약 5%p 정도만 차이난다. 대도시2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1명 더 많은데도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금이 포함된 기본 급여는 거의 비슷하고 기타후생경비만 다소 차이가 난다. 두 어린이집 모두 인건비 지출이 80% 정도를 차지하여 재정 운영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표 IV-1-3 참조).

〈표 IV-1-3〉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국공립(20인 영아전담)

| 구분 | 기본급 | 사회보험부담 비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기타후생 경비 | 제수당 | 일용잡급 | 계 |
|------|------|--------------|----------------|------------|-----|------|------|
| 대도시1 | 58.7 | 5.1 | 5.1 | 0.5 | 6.5 | 2.6 | 78.4 |
| 대도시2 | 59.2 | 5.1 | 4.9 | 6.2 | 6.4 | 2.3 | 84.1 |

〈표 IV-1-4〉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20인 영아전담)

| 구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¹⁾ 수입 대비 총 인건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 급여 ²⁾ | 보육료 ³⁾ 와 인건비 보조금 대비 기본 급여 |
|------|---|---|---|
| 대도시1 | 77.9 | 68.4 | 68.4 |
| 대도시2 | 82.7 | 68.1 | 69.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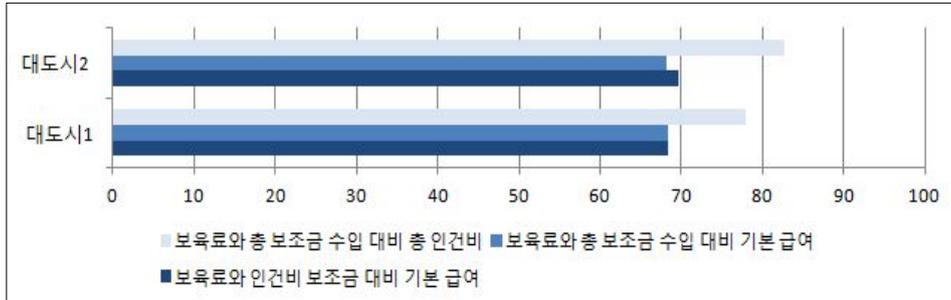
주: 1) 총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포함된 금액임.

2) 기본급여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금 포함된 금액임.

3) 보육료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포함

어린이집의 주요 수입원인 보육료와 총 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은 80% 내외로 대도시2가 대도시1보다 높다. 앞서 설명한 대로 대도시2의 기타후생경비 지출이 다소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급여와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급여 비율은 두 어린이집 모두 68%대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는 두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기본보육료 비율과 기본급, 4대보험, 퇴직금 비율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표 IV-1-4 참조).



[그림 IV-1-1] 인건비 지출 비율: 국공립(20인 영아전담)

나. 가정어린이집(20인)

대·중소도시 소재 가정어린이집은 총 정원 20명의 0세 2반, 1세 1반, 2세 1반 총 4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원장의 보육교사 겸직으로 보육교사는 총 3명이 근무한다. 세 어린이집 모두 정원 충족률 100%로 수입이 안정적이다. 평가인증으로 취사부 1명의 인건비가 지원되나 대도시 어린이집만 취사부를 고용하고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 통학버스 운영으로 다른 지역 어린이집보다 차량운영비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표 IV-1-5> 어린이집 운영 현황: 가정(20인)

단위: 명, %

| 구분 | 보육 아동 | | | 보조금 | | | 프로그램 지원 | | 평가인증 | 통학버스 | 원장 | 보육교직원 | | | |
|------|-------|----|--------|--------|----------|----|---------|---------|------|------|----|-------|----|----|------------------|
| | 영아 | 유아 | 정원 충족률 | 인건비 지원 | 기본보육료 지원 | 기타 | 취약보육 | 5세 누리과정 | | | | 영아 | 유아 | 기타 | 기타 ¹⁾ |
| 대도시 | 20 | - | 100.0 | - | ○ | - | - | - | ○ | - | 1 | 3 | - | - | 1 |
| 중소도시 | 20 | - | 100.0 | - | ○ | - | - | - | ○ | ○ | 1 | 3 | - | - | - |
| 농어촌 | 20 | - | 100.0 | - | ○ | - | - | - | ○ | - | 1 | 3 | - | - | - |

주: 1) 기타 인력에는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차량기사 등이 포함됨.

<표 IV-1-6>의 가정어린이집 수입 구조를 보면, 대·중소도시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비율이 각각 50%, 30%대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농어촌은 보육료가 66%, 기본보육료가 26.5%로 보육료 수입이 더 많다. 기타필요 수입은 농어촌보다 대도시로 갈수록 많다. 대도시 어린이집만 평가인증에 따른 취사부를 고용하고 있으나 인건비 보조금 비율은 세 지역이 거의 비슷하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1-6> 어린이집 수입 비율: 가정(20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 | 보조금 | | | | 필요경비 | | 잡수입 | 전입금 | 전체 |
|------|------|------------|-----------|-----------|-----------|------------|-----------|-----|-----|-------|
| | | 인건비 보조금 | 기본 보육료 | 기타 지원금 | 자본 보조금 | 기타필 요경비 | 특별활 동비 | | | |
| 대도시 | 55.5 | 1.9 | 33.5 | - | - | 6.5 | 2.6 | - | - | 100.0 |
| 중소도시 | 58.3 | 1.4 | 33.5 | - | - | - | 6.6 | - | 0.2 | 100.0 |
| 농어촌 | 66.0 | 1.4 | 26.5 | - | - | 1.7 | 4.3 | - | - | 100.0 |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은 대·중소도시 65.5%, 68.2%로 유사하나 농어촌이 54.6%로 10%p 이상 낮다. 기본급, 사회보험부담비용, 퇴직금이 포함된 기본 급여는 50% 정도로 세 지역이 비슷하나 기타후생경비, 제수당, 일용잡금 비율은 농어촌이 가장 낮다(표 IV-1-7 참조).

<표 IV-1-7>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가정(20인)

단위: %

| 구분 | 기본급 | 사회보험부담 비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기타후생 경비 | 제수당 | 일용잡금 | 계 |
|------|------|--------------|----------------|------------|------|------|------|
| 대도시 | 41.2 | 3.3 | 3.6 | 2.4 | 6.8 | 8.2 | 65.5 |
| 중소도시 | 41.0 | 8.1 | - | 0.7 | 14.2 | 4.2 | 68.2 |
| 농어촌 | 39.3 | 6.9 | 4.4 | 2.4 | 1.7 | - | 54.6 |

한편, 어린이집의 주 수입인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은 대도시가 73.7%로 가장 많고, 농어촌이 20%p 낮은 50.6%로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이 농어촌보다 인건비로 인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후생경비와 제수당, 일용잡금을 제외한 순수 기본 급여가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도시가 20% 정도 떨어진 54.1%이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각각 46.1%, 46.8%로 대도시가 약 10%p 정도 높다. 이는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은 취사부

1명이 더 있어 인건비 지출액이 높기 때문이다.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 급여 비율도 동일한 수준을 나타낸다.

〈표 IV-1-8〉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가정(20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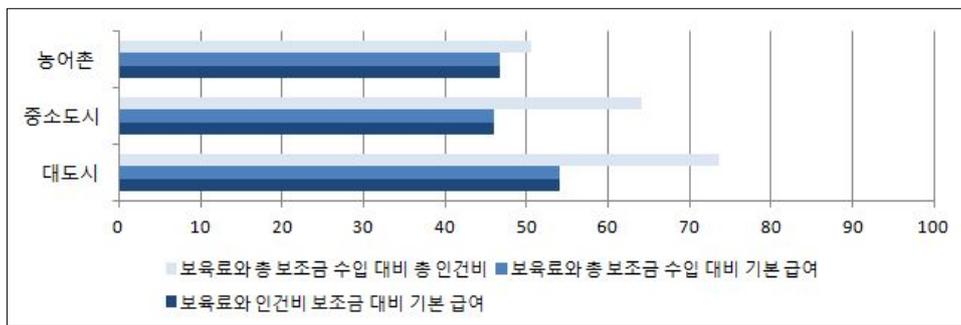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¹⁾ 수입 대비 총 인건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 급여 ²⁾ | 보육료 ³⁾ 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 급여 |
|------|---|---|--|
| 대도시 | 73.7 | 54.1 | 54.1 |
| 중소도시 | 64.1 | 46.1 | 46.1 |
| 농어촌 | 50.6 | 46.8 | 46.8 |

주: 1) 총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포함된 금액임.

2) 기본급여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금 포함된 금액임.

3) 보육료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포함



[그림 IV-1-2] 인건비 지출 비율: 가정(20인)

다. 민간개인어린이집(27인)

0세 1반, 1세 1반, 2세 1반 3세 1반 총 4반으로 구성된 총 정원 27명의 민간개인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정원충족률은 대·중소도시가 100%이나 농어촌은 107.7%로 초과보육을 하고 있다. 인건비 미지원시설로 세 어린이집 모두 기본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특히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은 시간연장보육 운영으로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100%를 지원받고, 농어촌은 농어촌 특례지정으로 보육교사와 취사부 각각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대도시와 농어촌은 통학버스를 운영하나 차량기사는 고용하고 있지 않다. 4반 운영으로 대·중소도시에는 보육교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농어촌은 3명으로 1명 더 적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은 5세 누리과정 운영으로 기타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표 IV-1-9〉 어린이집 운영 현황: 민간개인(27인)

단위: 명, %

| 구분 | 보육 아동 | | | 보조금 | | | 프로그램 지원 | | 평가인증 | 통학버스 | 보육교직원 | | | | |
|-------------------|-------|----|-------|--------|----------|-----|---------|---------|------|------|-------|------|----|----|----|
| | 영아 | 유아 | 정원충족률 | 인건비 지원 | 기본보육료 지원 | 기타 | 취약보육 | 5세 누리과정 | | | 원장 | 보육교사 | 영아 | 유아 | 기타 |
| 대도시 | 17 | 10 | 100.0 | - | ○ | - | 시간연장 | - | - | ○ | 1 | 3 | 1 | 1 | - |
| 중소도시 | 13 | 14 | 100.0 | - | ○ | - | - | 2 | - | - | 1 | 3 | 1 | - | - |
| 농어촌 ²⁾ | 17 | 11 | 107.7 | - | ○ | 농어촌 | - | 5 | - | ○ | 1 | 3 | - | - | - |

주: 1) 기타 인력에는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차량기사 등이 포함됨.

2) 대도시, 중소도시와 반구성은 동일하나 정원은 26명임.

29인 민간개인어린이집의 수입구조를 분석하면, 보육료 수입이 중소도시가 72.5%로 가장 많고 대도시와 농어촌은 60% 정도로 10%p 낮다. 기본보육료는 16~19%대로 차이가 적으나 중소도시는 인건비보조금 지원이 없고, 대도시는 기타지원금이 없다. 필요경비는 중소도시가 9%로 가장 많고, 농어촌이 2.7% 적다.

〈표 IV-1-10〉 어린이집 수입 비율: 민간(27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 | 보조금 | | | | 필요경비 | | 잡수입 | 전입금 | 전체 |
|------|------|---------|-------|--------|--------|--------|-------|-----|-----|-------|
| | | 인건비 보조금 | 기본보육료 | 기타 지원금 | 자본 보조금 | 기타필요경비 | 특별활동비 | | | |
| 대도시 | 61.7 | 9.0 | 19.0 | - | - | - | 4.1 | - | 6.2 | 100.0 |
| 중소도시 | 72.5 | - | 16.4 | 2.2 | - | 4.6 | 4.4 | - | - | 100.0 |
| 농어촌 | 61.9 | 1.3 | 17.8 | 13.3 | - | - | 2.7 | - | 3.0 | 100.0 |

이에 반해 인건비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총 지출에서 총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도시보다 농어촌으로 갈수록 높다. 그러나 총 인건비 비중이 60% 미만으로 세 지역 어린이집 모두 인건비 지출로 인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도시 는 보육교직원 수가 다른 어린이집보다 1~2명 더 많은데도 총 인건비 지출 비율이 10~20% 정도 낮다. 기본급 비율도 가장 낮은 32.3%로 이는 타 지역 어린이집보다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은 2012년 4월 기준 4대보험과 퇴직금 지출이 없어 총 인건비 지출이 낮을 수 있다. 기본급여

이외의 기타후생경비, 제수당, 일용잡금 지출은 중소도시가 13.6%로 가장 많고, 대도시가 2.3%로 가장 적다.

<표 IV-1-11>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민간(27인)

| 구분 | 기본급 | 사회보험부담 비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기타후생 경비 | 단위: % | | 계 |
|------|------|--------------|----------------|------------|-------|------|------|
| | | | | | 제수당 | 일용잡금 | |
| 대도시 | 32.3 | 4.7 | 3.3 | 2.3 | - | - | 42.7 |
| 중소도시 | 38.7 | - | - | - | 1.3 | 12.3 | 52.4 |
| 농어촌 | 36.6 | 10.7 | 2.2 | 0.7 | 1.2 | 9.7 | 6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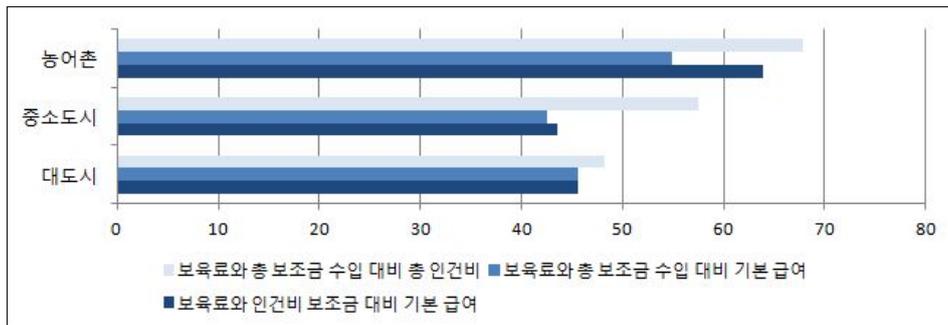
<표 IV-1-12>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민간(27인)

| 구분 | 단위: % | | |
|------|---|---|---------------------------------------|
| | 보육료와 총 보조금 ¹⁾ 수입 대비 총 인건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 급여 ²⁾ | 보육료 ³⁾ 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급여 |
| 대도시 | 48.2 | 45.6 | 45.6 |
| 중소도시 | 57.5 | 42.5 | 43.6 |
| 농어촌 | 67.8 | 54.9 | 63.9 |

주: 1) 총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포함된 금액임.

2) 기본급여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금 포함된 금액임.

3) 보육료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포함



[그림 IV-1-3] 인건비 지출: 민간개인(27인)

<표 IV-1-12>에 제시한 보육료와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을 보면,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총 인건비 지출 비율은 농어촌으로 갈수록 높다. 즉, 농어촌이 가장 많은 67.8%이고, 대도시가 48.2%로 약 20% 정도 차이가 난다. 이에 반해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급여 비율을 보면, 농어촌이 54.9%로 여전히 높지만,

중소도시가 42.5%로 가장 낮다. 이는 기본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지출 비율이 대도시보다 농어촌과 중소도시가 높기 때문이다. 기본보육료를 포함한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급여 비율은 농어촌이 다시 높아져 63.9%이고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농어촌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급간식비나 냉난방비 등의 기타지원금이 13.3%로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2. 39인

가.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39명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도시와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은 0세 1반, 1세 1반, 2세 1반, 3세 1반 총 4반, 중소도시는 0세 1반, 1세 2반, 2세 1반, 3세 1반으로 총 5반을 운영하고 있다.

〈표 IV-2-1〉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국공립(39인)

단위: 명, %

| 구분 | 보육 아동 | | | 보조금 | | | 프로그램 지원 | | 평가 인증 | 통학 버스 | 보육교직원 | | | | |
|-------------------|-------|----|--------|--------|----------|-----|---------|---------|-------|-------|-------|------|----|----|------------------|
| | 영아 | 유아 | 정원 충족률 | 인건비 지원 | 기본보육료 지원 | 기타 | 취약보육 | 5세 누리과정 | | | 원장 | 보육교사 | | | 기타 ¹⁾ |
| | | | | | | | | | | | | 영아 | 유아 | 기타 | |
| 대도시 ²⁾ | 17 | 9 | 66.7 | ○ | - | - | 시간연장 | 2 | ○ | ○ | 1 | 3 | 1 | - | - |
| 중소도시 | 21 | 18 | 100.0 | ○ | - | - | - | - | ○ | - | 1 | 4 | 1 | - | 1 |
| 농어촌 ³⁾ | 20 | 15 | 89.7 | ○ | - | 농어촌 | - | 1 | ○ | ○ | 1 | 3 | 1 | - | 2 |

주: 1) 기타 인력에는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차량기사 등이 포함됨.

2), 3) 대도시,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0세 1반, 1세 1반, 2세 1반, 3세 1반 반구성

따라서 보육교사가 대도시와 농어촌은 4명이지만 중소도시는 5명이 근무한다. 정원충족률도 중소도시가 100%로 가장 높지만 대도시는 66.7%로 가장 낮아 보육료 수입이 불안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 지역 어린이집 모두 평가인증으로 취사부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정원충족률이 높은 중소도시와 농어촌만 취사부를 고용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은 농어촌특례지정노 보육교사와 취사부 1명의 인건비

를 지원받고 있다. 또한 대도시와 농어촌 모두 통학버스를 운영하나 차량기사는 농어촌만 있다. 대도시와 농어촌은 5세 누리과정 해당 아동이 2명, 1명 정도 채용하고 있어 기타지원금이 지원된다(표 IV-2-1 참조).

<표 IV-2-2>에 제시한 어린이집 수입구조를 보면, 보육료 수입은 대도시가 51.4%로 가장 높고, 농어촌이 36.5%로 가장 낮다. 반대로 인건비보조금은 농어촌특별회와 평가인증으로 보육교사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농어촌이 60.4%로 가장 높고 대도시가 가장 낮다. 즉, 총 수입에서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5%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간식비나 냉난방비 등의 기타지원금을 일부 지원받고 있다. 필요경비는 대도시가 5%, 중소도시 2% 정도 되지만 농어촌은 특별활동을 운영하지 않아 수입이 없다.

<표 IV-2-2> 어린이집 수입 비율: 국공립(39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 | 보조금 | | | | 필요경비 | | 잡수입 | 전입금 | 전체 |
|------|------|------------|-----------|-----------|-----------|------------|-----------|-----|-----|-------|
| | | 인건비 보조금 | 기본 보육료 | 기타 지원금 | 자본 보조금 | 기타필 요경비 | 특별활 동비 | | | |
| 대도시 | 51.4 | 43.7 | - | - | - | 2.7 | 2.1 | - | - | 100.0 |
| 중소도시 | 47.3 | 49.1 | - | 1.1 | - | 1.9 | 0.5 | - | - | 100.0 |
| 농어촌 | 36.5 | 60.4 | - | 3.1 | - | - | - | - | - | 100.0 |

총 지출에서 총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도시가 81.1%로 가장 많고 중소도시가 70.5% 가장 적다. 중소도시 어린이집의 경우 대도시나 농어촌보다 보육교사 수가 1명 더 많은데도 인건비 비중이 가장 낮다. 이는 중소도시 어린이집의 기본급이 49.5%로 타 지역 어린이집보다 4~8%p 정도 낮기 때문이다. 즉,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지 않을 수 있다(표 IV-2-3 참조).

<표 IV-2-3>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국공립(39인)

단위: %

| 구분 | 기본급 | 사회보험부담 비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기타후생 경비 | 제수당 | 일용잡금 | 계 |
|------|------|--------------|----------------|------------|-----|------|------|
| 대도시 | 57.2 | 5.2 | 4.5 | 1.0 | 3.3 | 9.8 | 81.1 |
| 중소도시 | 49.5 | 9.1 | 4.4 | 0.9 | 0.9 | 5.8 | 70.5 |
| 농어촌 | 53.5 | 8.4 | 6.2 | 0.5 | 2.0 | 3.6 | 74.2 |

한편,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은 대도시가 79.6%로 여전히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73.6%로 낮지만, 기타후생경비와 제수당, 일용직급을 제외한 기본급여 비율은 65~68%대로 큰 차이가 없다.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급여 비율은 농어촌이 70.6%로 가장 높고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65.7%, 66.7%로 4~5% 정도 차이난다. 즉,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은 기타 보육교직원이 타 지역보다 1~2명 더 많아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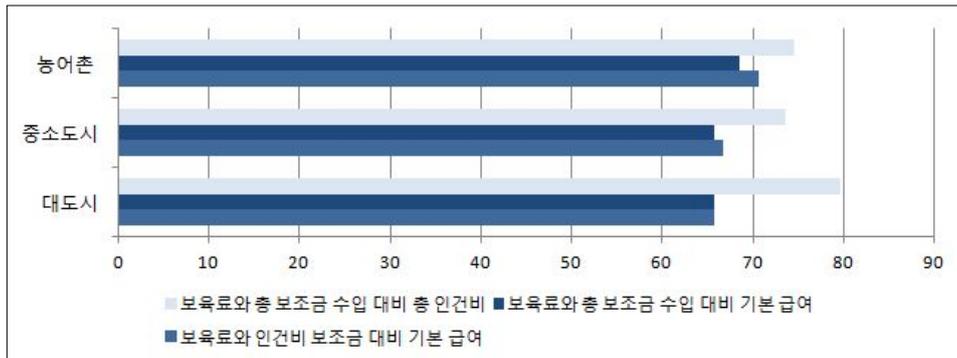
〈표 IV-2-4〉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39인)

| 구분 | 단위: % | | |
|------|--------------------------------------|--------------------------------------|--------------------------------------|
| | 보육료와 총 보조금 ¹⁾ 수입 대비 총 인건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 급여 ²⁾ | 보육료 ³⁾ 와 인건비 보조금 대비 기본 급여 |
| 대도시 | 79.6 | 65.7 | 65.7 |
| 중소도시 | 73.6 | 65.8 | 66.7 |
| 농어촌 | 74.6 | 68.5 | 70.6 |

주: 1) 총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포함된 금액임.

2) 기본급여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금 포함된 금액임.

3) 보육료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포함



[그림 IV-2-1] 인건비 지출: 국공립(39인)

나. 법인어린이집

정원 39~40명의 법인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보면, 대도시와 농어촌은 총 5반을 운영하나 중소도시는 4반으로 보육교사가 1명 적다. 즉, 대도시와 농어촌은 인건비 80%를 지원받는 보육교사가 4명이나 중소도시는 3명이고, 30% 지원은 각각 1명이

다. 정원충족률은 대도시가 가장 높은 90%이나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70%대를 나타낸다. 세 지역 어린이집 모두 시간연장보육 운영으로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80%를 지원받고 있고,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평가인증으로 취사부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특히 대都市는 서울형 지정으로 취사부 1명의 인건비가 추가 지원되어 취사부가 총 2명으로 보육교직원이 가장 많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은 통학버스를 운영하나 차량기사를 별도로 고용하고 있지 않다(표 IV-2-5 참조).

〈표 IV-2-5〉 어린이집 운영 현황: 법인(39~40인)

단위: 명, %

| 구분 | 보육 아동 | | | 보조금 | | | 프로그램 지원 | | 평가 인증 | 통학 버스 | 보육교직원 | | | | |
|--------------------|-------|----|-------|--------|----------|-----|---------|---------|-------|-------|-------|------|------------------|----|----|
| | 영아 | 유아 | 정원충족률 | 인건비 지원 | 기본보육료 지원 | 기타 | 취약보육 | 5세 누리과정 | | | 원장 | 보육교사 | 기타 ¹⁾ | 영아 | 유아 |
| 대도시 ²⁾ | 20 | 16 | 90.0 | ○ | - | 서울형 | 시간연장 | - | ○ | - | 1 | 4 | 1 | 1 | 2 |
| 중소도시 ³⁾ | 13 | 17 | 76.9 | ○ | - | - | 시간연장 | 6 | ○ | ○ | 1 | 3 | 1 | 1 | 1 |
| 농어촌 ⁴⁾ | 22 | 9 | 79.5 | ○ | - | - | 시간연장 | - | - | ○ | 1 | 4 | 1 | 1 | 1 |

주: 1) 기타 인력에는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차량기사 등이 포함됨.

2) 정원 40명, 0세 1반, 1세 1반, 2세 2반, 3세 1반 총 5반 구성

3) 정원 39명, 0세 1반, 1세 1반, 2세 1반, 3세 1반 총 4반 구성

4) 정원 39명, 0세 1반, 1세 2반, 2세 1반, 3세 1반 총 5반 구성

〈표 IV-2-6〉 어린이집 수입 비율: 법인(39~40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 | 보조금 | | | 필요경비 | | 잡수입 | 전입금 | 전체 | |
|------|------|---------|-------|--------|-------|--------|-----|-----|----|-------|
| | | 인건비 보조금 | 기본보육료 | 기타 지원금 | 자본보조금 | 기타필요경비 | | | | 특별활동비 |
| 대도시 | 33.3 | 60.5 | - | 0.6 | - | 0.5 | 5.1 | - | - | 100.0 |
| 중소도시 | 35.7 | 52.1 | - | 7.4 | - | 1.5 | 3.3 | - | - | 100.0 |
| 농어촌 | 38.9 | 52.5 | - | 5.3 | - | 0.4 | 3.0 | - | - | 100.0 |

법인어린이집의 수입구조를 분석하면, 인건비 지원이 가장 많은 대도시가 인건비 보조금 비율이 60.5%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50%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대도시가 정원충족률이 가장 높지만 보육료 비율은 33.3%로 가장 낮고, 농어촌이 38.9%로 가장 높다. 총 수입에서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도시와 농어촌은 90% 이상이지만, 중소도시는 90% 이하로 기타지원금과 필요경비로

나머지를 충당하고 있다. 특별활동비 수입은 대도시가 5.1%로 가장 많다(표 IV-2-6 참조).

총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 지역 모두 70~80%대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총 인건비 비율이 86.6%로, 인건비 세부항목 중 사회보험부담비용이 20.1%로 기준달(2012. 4월)만과 대 지출되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급은 보육교직원이 가장 많은 대도시가 62.7%로 가장 많지만, 기타후생경비나 체수당, 일용잡금은 중소도시가 8%로 가장 많다(표 IV-2-7 참조).

〈표 IV-2-7〉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법인(39~40인)

| 구분 | 기본급 | 사회보험부담 비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기타후생 경비 | 체수당 | 일용잡금 | 단위: % |
|------|------|--------------|----------------|------------|-----|------|-------|
| | | | | | | | 계 |
| 대도시 | 62.7 | 6.7 | 5.2 | 1.1 | 2.5 | - | 78.1 |
| 중소도시 | 54.2 | 7.5 | 5.0 | - | 0.7 | 7.3 | 74.7 |
| 농어촌 | 56.7 | 20.1 | 5.1 | - | 3.0 | 1.6 | 86.6 |

법인어린이집의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을 보면, 농어촌과 대도시가 87.3%, 86.8%로 가장 많고, 중소도시가 70.2%로 가장 낮다. 즉, 농어촌과 대도시는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 기본급여 비율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대도시와 농어촌은 80%대로 앞서 살펴본 비율과 큰 차이는 없지만 중소도시의 경우 62.7%로 낮아졌다. 이는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고용으로 일용잡금 지출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급여 비율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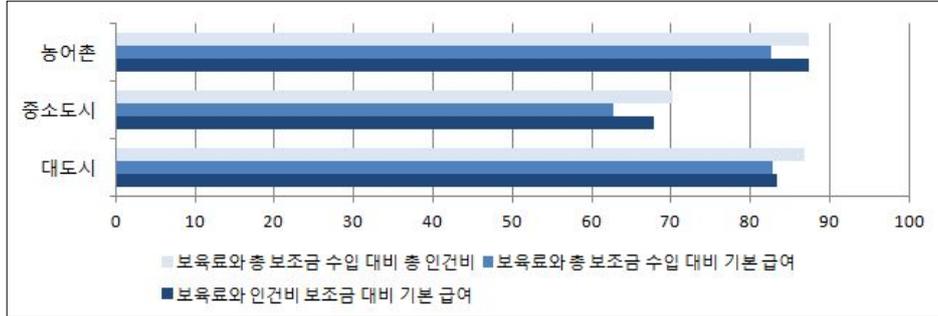
〈표 IV-2-8〉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법인(39~40인)

| 구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¹⁾ 수입 대비 총 인건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 급여 ²⁾ | 보육료 ³⁾ 와 인건비 보조금 대비 기본 급여 |
|------|---|---|---|
| | 단위: % | | |
| 대도시 | 86.8 | 82.8 | 83.4 |
| 중소도시 | 70.2 | 62.7 | 67.9 |
| 농어촌 | 87.3 | 82.6 | 87.4 |

주: 1) 총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포함

2) 기본급여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금 포함

3) 보육료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포함



[그림 IV-2-2] 인건비 지출: 법인(39~40인)

다. 민간개인어린이집

총 정원 39명의 민간개인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0세 1반, 1세 2반, 2세 1반, 3세 1반 총 5반 운영으로 영아반 교사 4명, 유아반 1명 총 5명이 근무한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정원충족률이 100%이고, 농어촌은 이보다 다소 낮은 97.4%를 나타낸다. 대도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으로 취사부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은 농어촌 특례로 보육교사 1명과 취사부 인건비, 차량운영비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취사부가 없다. 세 어린이집 모두 통학버스를 운영하나 추가 인건비 지출 부담으로 차량기사를 따로 고용하고 있지 않다.

<표 IV-2-9> 어린이집 운영 현황: 민간개인(39인)

단위: 명, %

| 구분 | 보육 아동 | | | 보조금 | | | 프로그램 지원 | | 평가 인증 | 통학 버스 | 보육교직원 | | | | |
|------|-------|----|--------|--------|-----------|-----|---------|---------|-------|-------|-------|------|----|------------------|---|
| | 영아 | 유아 | 정원 충족률 | 인건비 지원 | 기본 보육료 지원 | 기타 | 취약 보육 | 5세 누리과정 | | | 원장 | 보육교사 | 유아 | 기타 ¹⁾ | |
| 대도시 | 24 | 15 | 100.0 | - | ○ | - | - | - | ○ | ○ | 1 | 4 | 1 | - | 1 |
| 중소도시 | 26 | 13 | 100.0 | - | ○ | - | - | - | - | ○ | 1 | 4 | 1 | - | - |
| 농어촌 | 25 | 13 | 97.4 | - | ○ | 농어촌 | - | - | ○ | ○ | 1 | 4 | 1 | - | - |

주: 1) 기타 인력에는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차량기사 등 포함

민간개인어린이집의 수입구조를 분석하면, 기본보육료는 20% 내외로 세 지역 어린이집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한편, 보육료 수입은 대도시가 74.2%로 가장 높

고, 농어촌이 55.2%로 20% 이상 차이가 난다. 농어촌의 경우 필요경비 수입비율이 21.5%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육료와 보조금 비율이 낮아졌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간식비나 차량운영비 등으로 지원하는 기타지원금을 추가로 받고 있다.

〈표 IV-2-10〉 어린이집 수입 비율: 민간(39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 | 보조금 | | | | 필요경비 | | 잡수입 | 전입금 | 전체 |
|------|------|------------|-----------|-----------|-----------|------------|-----------|-----|-----|-------|
| | | 인건비 보조금 | 기본 보육료 | 기타 지원금 | 자본 보조금 | 기타필 요경비 | 특별 활동비 | | | |
| 대도시 | 74.2 | 1.6 | 18.0 | - | - | 2.0 | 1.2 | - | 3.2 | 100.0 |
| 중소도시 | 63.7 | 1.4 | 20.8 | 1.5 | - | - | 7.0 | 5.6 | - | 100.0 |
| 농어촌 | 55.2 | - | 18.4 | 4.5 | - | 16.2 | 5.3 | 0.3 | - | 100.0 |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은 앞서 살펴본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집보다 20% 정도 낮은 50~60%대로 적정 수준의 인건비 지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인건비 지출로 인한 어린이집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 어린이집 모두 기본급이 30%대로 40~50%대를 나타낸 국공립, 법인어린이집보다 낮아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및 기타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지출 비율이 14.7%로 높다. 농어촌 어린이집은 일용직 급여 비중이 약 10% 정도로 높다.

〈표 IV-2-11〉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민간(39인)

단위: %

| 구분 | 기본급 | 사회보험부담 비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기타후생 경비 | 제수당 | 일용잡급 | 계 |
|------|------|--------------|----------------|------------|------|------|------|
| 대도시 | 37.9 | 6.2 | 3.3 | 5.9 | 5.9 | 3.3 | 62.5 |
| 중소도시 | 34.2 | 1.5 | 7.3 | 0.4 | 14.7 | 4.1 | 62.2 |
| 농어촌 | 35.6 | 3.5 | 4.2 | 0.9 | - | 9.4 | 53.6 |

어린이집의 주 수입인 보육료와 총 보조금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은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80%, 79.2%로 보육료와 보조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본급여 지출 비율은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각각 55.3%, 63.9%로 낮아졌다. 이는 보육료와 보조금 수입이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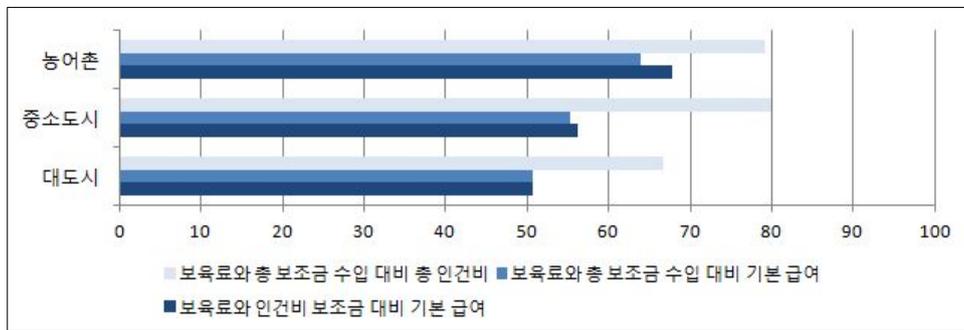
기타후생경비, 제수당, 일용잡금 지출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급여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표 IV-2-12>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민간(39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¹⁾ 수입 대비 총 인건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 급여 ²⁾ | 보육료 ³⁾ 와 인건비 보조금 대비 기본 급여 |
|------|--------------------------------------|--------------------------------------|--------------------------------------|
| 대도시 | 66.7 | 50.6 | 50.6 |
| 중소도시 | 80.0 | 55.3 | 56.2 |
| 농어촌 | 79.2 | 63.9 | 67.8 |

- 주: 1) 총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포함된 금액임.
 2) 기본급여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금 포함된 금액임.
 3) 보육료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포함



[그림 IV-2-3] 인건비 지출: 민간개인(39인)

라. 영아전담

정원 39~40명의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표 IV-2-5>과 같다.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은 정원 40명의 0세 2반, 1세 4반, 2세 2반 구성, 농어촌 어린이집 정원 39명의 0세 3반, 1세 3반, 2세 2반으로 반 구성은 다소 상이하나 총 8반을 운영한다. 즉, 인건비 80%가 지원되는 보육교사는 동일하다. 농어촌의 경우, 기타 보육교사가 1명 더 있다. 중소도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으로 취사부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두 어린이집 모두 통학버스를 운영하나 차량기사는 고용하고 있지 않다.

〈표 IV-2-13〉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국공립 영아전담(39~40인)

단위: 명, %

| 구분 | 보육 아동 | | | 보조금 | | | 프로그램 지원 | 평가 인증 | 통학 버스 | 보육교직원 | | | | |
|--------------------|-------|----|---------------|-----------|-----------------|----|------------|----------|----------|-------|------------|----|------------------|----|
| | 영아 | 유아 | 정원 총족 률 | 인건비 지원 | 기본 보육료 지원 | 기타 | 취약보육 | | | 원장 | 보육교사 영아 | 유아 | 기타 ¹⁾ | 기타 |
| 중소도시 ²⁾ | 37 | - | 92.5 | ○ | - | - | 영아전담 | ○ | ○ | 1 | 8 | - | 1 | 1 |
| 농어촌 ³⁾ | 38 | - | 97.4 | ○ | - | - | 영아전담 | - | ○ | 1 | 8 | - | 2 | 1 |

주: 1) 기타 인력에는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차량기사 등이 포함됨.

2) 정원 40명, 0세 2반, 2세 4반, 2세 2반 구성

3) 정원 39명, 0세 3반, 1세 3반, 2세 2반 구성

〈표 IV-2-14〉의 어린이집 수입구조를 보면, 중소도시와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은 40% 내외, 인건비보조금은 53~54%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중소도시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운영으로 특별활동비 수입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표 IV-2-14〉 어린이집 수입 비율: 국공립 영아전담(39~40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 | 보조금 | | | | 필요경비 | | 잡 수입 | 전입 금 | 전체 |
|--------------------|------|------------|-----------|-----------|-----------|------------|-----------|---------|---------|-------|
| | | 인건비 보조금 | 기본 보육료 | 기타 지원금 | 자본 보조금 | 기타필 요경비 | 특별활 동비 | | | |
| 중소도시 ²⁾ | 40.5 | 54.4 | - | 0.6 | - | 0.6 | 2.6 | 1.2 | - | 100.0 |
| 농어촌 | 38.7 | 53.8 | - | 1.3 | - | 0.8 | - | 5.4 | - | 100.0 |

어린이집 총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소도시와 농어촌 모두 71.7%, 75.3%로 60% 이상을 차지하여 어린이집 운영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본급, 사회보험부담비용, 퇴직금 비율은 두 지역이 비슷한 수준이나 농어촌의 기타후생경비 지출이 7% 정도로 높아 총 인건비 지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2-15〉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국공립 영아전담(39~40인)

단위: %

| 구분 | 기본급 | 사회보험부담 비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기타후생 경비 | 제수당 | 일용 잡급 | 전체 |
|------|------|--------------|----------------|------------|-----|----------|------|
| 중소도시 | 57.8 | 3.9 | 5.0 | 0.6 | 3.9 | 0.6 | 71.7 |
| 농어촌 | 56.0 | 6.8 | 4.6 | 6.8 | 1.1 | - | 7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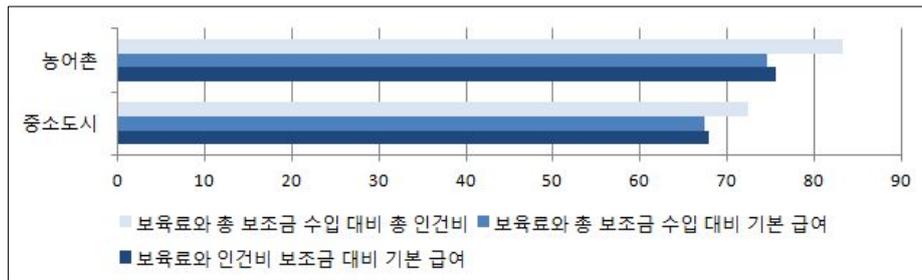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총 인건비 지출비율은 중소도시 72.4%, 농어촌 83.3%로 보육료와 보조금 수입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기본급여 비율은 이보다 10% 정도 낮아진 60~70%대를 나타낸다.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은 60% 대로 적정 수준보다 다소 높아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이나 농어촌의 경우, 인건비 지출로 인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급여 지출비율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표 IV-2-16>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 영아전담(39~40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¹⁾ 수입 대비 총 인건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급여 ²⁾ | 보육료 ³⁾ 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급여 |
|------|--------------------------------------|-------------------------------------|------------------------------------|
| 중소도시 | 72.4 | 67.4 | 67.8 |
| 농어촌 | 83.3 | 74.6 | 75.6 |

- 주: 1) 총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포함된 금액임.
 2) 기본급여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금 포함된 금액임.
 3) 보육료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포함



[그림 IV-2-4] 인건비 지출: 국공립 영아전담(39~40인)

3. 49인

가.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49명, 1세 1반, 2세 2반, 3세 1반, 4세 1반 총 5반을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표 IV-3-1>에 제시하였다. 세 지역 어린이집 모두 정원충족률이 100%로 어린이집 운영이 안정적이다. 인건비 80%가 지원되는 영아 보육교사는 3명이며, 30% 지원 유아 보육교사는 2명으로 동일하고, 농어촌의 경우 시간연장보육 운

영으로 시간연장보육교사 1명이 더 있고, 인건비 80% 지원을 받고 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평가인증으로 취사부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농어촌 어린이집은 농어촌특례지정으로 보육교사와 취사부 각각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중소도시는 5세누리과정 운영으로 기타지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표 IV-3-1〉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국공립(49인)

단위: 명, %

| 구분 | 보육 아동 | | | 보조금 | | | 프로그램 지원 | | 평가 인증 | 통학 버스 | 보육교직원 | | | | |
|------|-------|----|--------|--------|----------|-----|---------|---------|-------|-------|-------|----|----|------------------|---|
| | 영아 | 유아 | 정원 충족률 | 인건비 지원 | 기본보육료 지원 | 기타 | 취약보육 | 5세 누리과정 | | | 보육교사 | | | | |
| | | | | | | | | | | | 원장 | 영아 | 유아 | 기타 ¹⁾ | 타 |
| 대도시 | 17 | 32 | 100.0 | ○ | - | - | - | - | ○ | - | 1 | 3 | 2 | - | 2 |
| 중소도시 | 17 | 32 | 100.0 | ○ | - | - | - | 8 | ○ | - | 1 | 3 | 2 | - | 1 |
| 농어촌 | 18 | 31 | 100.0 | ○ | - | 농어촌 | 시간연장 | - | - | - | 1 | 3 | 2 | 1 | 1 |

주: 1) 기타 인력에는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차량기사 등이 포함됨.

어린이집 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보육료 수입은 큰 차이는 없으나 중소도시가 가장 많은 49.7%를 나타내고, 인건비보조금은 인건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농어촌이 44.1%로 가장 많다. 대소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급간식비나 차량운영비 등으로 지원하는 기타지원금이 5% 정도 된다. 필요경비는 모두 6~8%대이나 대도시의 특별활동비율이 특히 높다.

〈표 IV-3-2〉 어린이집 수입 비율: 국공립(49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 | 보조금 | | | | 필요경비 | | 잡수입 | 전입금 | 전체 |
|------|------|---------|-------|--------|--------|--------|-------|-----|-----|-------|
| | | 인건비 보조금 | 기본보육료 | 기타 지원금 | 자본 보조금 | 기타필요경비 | 특별활동비 | | | |
| 대도시 | 45.6 | 40.9 | - | 5.4 | - | 0.9 | 7.2 | - | - | 100.0 |
| 중소도시 | 49.7 | 42.9 | - | - | - | 5.4 | 1.4 | 0.6 | - | 100.0 |
| 농어촌 | 44.7 | 44.1 | - | 0.8 | - | 2.7 | 4.3 | 3.4 | - | 100.0 |

어린이집 총 지출에서 총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도시가 74.8%로 가장 높고 농어촌이 61.4%로 가장 낮다. 중소도시의 기본급 비율이 대도시나 농어촌보다 10~13% 정도 높아 인건비 지출로 인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도시 어린이집의 경우 기타후생경비, 제수당, 일용잡금 지출이 약 10% 정도로 타 지역보다 높다.

〈표 IV-3-3〉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49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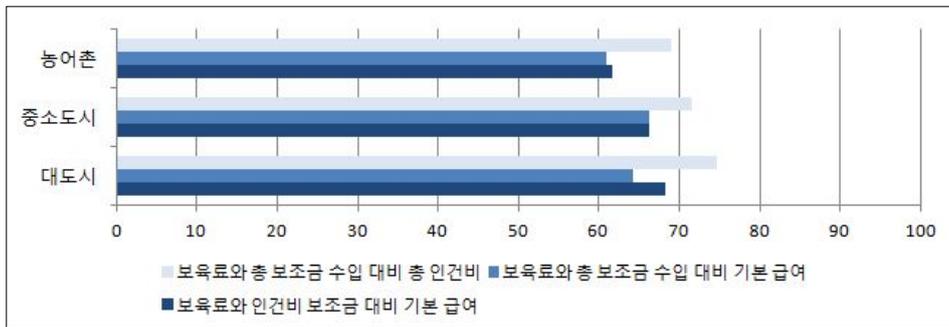
| 구분 | 기본급 | 사회보험부담 비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기타후생 경비 | 제 수당 | 일용 잡금 | 전체 |
|------|------|--------------|----------------|------------|---------|----------|------|
| 대도시 | 49.2 | 4.3 | 4.4 | 2.5 | 3.1 | 3.7 | 67.2 |
| 중소도시 | 58.6 | 5.5 | 5.2 | 0.4 | 5.1 | - | 74.8 |
| 농어촌 | 45.5 | 4.4 | 4.4 | 0.2 | 6.9 | - | 61.4 |

〈표 IV-3-4〉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49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¹⁾ 수입 대비 총 인건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 급여 ²⁾ | 보육료 ³⁾ 와 인건비 보조금 대비 기본 급여 |
|------|---|---|---|
| 대도시 | 74.7 | 64.3 | 68.3 |
| 중소도시 | 71.5 | 66.2 | 66.2 |
| 농어촌 | 69.0 | 61.0 | 61.6 |

주: 1) 총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포함된 금액임.
 2) 기본급여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금 포함된 금액임.
 3) 보육료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포함



[그림 IV-3-1] 인건비 지출: 국공립(49인)

〈표 IV-3-4〉의 어린이집 보육료와 보조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보면, 보육료와 총 보조금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은 대도시가 74.7%로 보육료와 보조금 수입의 약 3/4 정도를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도 대도시보다 다소 낮으나 마찬가지로 인건비로 대부분의 보육료와 보조금 수입을 지출하고 있다. 기본 급여

지출 비율은 중소도시가 66.2%로 가장 높고, 농어촌이 61%로 가장 낮다. 이는 중소도시의 기본급과 4대보험, 퇴직금 지출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급여 비율은 다시 대도시가 68.3%로 가장 높다. 기본급여 비율이 전반적으로 60%대이지만, 지원이 가장 많은 농어촌의 재정 운영이 가장 안정적이다.

나. 법인어린이집

앞서 살펴본 정원 49명 국공립어린이집과 반 구성이 동일한 법인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도시는 정원충족률이 98%로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농어촌은 68% 정도로 운영이 어렵다. 두 어린이집 모두 평가인증으로 취사부 1명의 인건비와 누리과정으로 운영비를 추가 지원받는다. 특히,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은 농어촌 특례 지정으로 보육교사와 취사부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월 20만원 지원을 받는다.

〈표 IV-3-5〉 어린이집 운영 현황: 법인(49인)

단위: 명, %

| 구분 | 보육 아동 | | 보조금 | | | 프로그램 지원 | | 평가 인증 | 통학 버스 | 보육교직원 | | | | | |
|-----|-------|----|-------|--------|----------|---------|------|-------|-------|---------|----|------|---|---|------------------|
| | 영아 | 유아 | 정원충족률 | 인건비 지원 | 기본보육료 지원 | 기타 지원 | 취약보육 | | | 5세 누리과정 | 원장 | 보육교사 | | | |
| | | | | | | | | | | | | 영 | 유 | 기 | 기타 ¹⁾ |
| 대도시 | 19 | 29 | 98.0 | - | ○ | - | - | 8 | ○ | ○ | 1 | 3 | 2 | - | 1 |
| 농어촌 | 14 | 19 | 67.3 | ○ | - | 농어촌 | - | 6 | ○ | ○ | 1 | 3 | 1 | - | 2 |

주: 1) 기타 인력에는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차량기사 등이 포함됨.

〈표 IV-3-6〉 어린이집 수입 비율: 법인(49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 | 보조금 | | | 필요경비 | | 잠수입 | 전입금 | 전체 | |
|-----|------|---------|-------|--------|--------|--------|-----|-----|------|-------|
| | | 인건비 보조금 | 기본보육료 | 기타 지원금 | 자본 보조금 | 기타필요경비 | | | | 특별활동비 |
| 대도시 | 59.8 | - | 15.3 | 3.5 | - | 0.5 | 5.1 | - | 11.1 | 100.0 |
| 농어촌 | 40.0 | 55.8 | - | - | - | 1.5 | 0.2 | - | 2.6 | 100.0 |

29인 법인어린이집의 수입 구조를 보면, 보육료가 전체 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대도시 59.8%, 농어촌 40%로 정원충족률이 높은 대도시가 20%p 정도 많다. 이 외에도 대도시는 기본보육료 15.3% 정도 지원받고, 농어촌은 인건비보조금이 55.8%로 수입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별활동 운영으로 필요경비

가 대도시 5.6%, 농어촌 1.7%로 대도시가 월등히 많다.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은 전입금 수입이 11.1%로 농어촌보다 많다.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은 농어촌이 70.5%로 높다. 즉, 총 지출의 3/4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된다. 반면, 대도시는 총 인건비 비율이 58.4%로 재정 운영이 원활하다.

〈표 IV-3-7〉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법인(49인)

| 구분 | 기본급 | 사회보험부담 비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기타후생 경비 | 제수당 | 일용잡금 | 전체 |
|-----|------|--------------|----------------|------------|-----|------|------|
| 대도시 | 47.0 | 4.2 | 4.0 | 2.2 | 0.9 | - | 58.4 |
| 농어촌 | 49.5 | 9.1 | 4.4 | 0.9 | 0.8 | 5.8 | 7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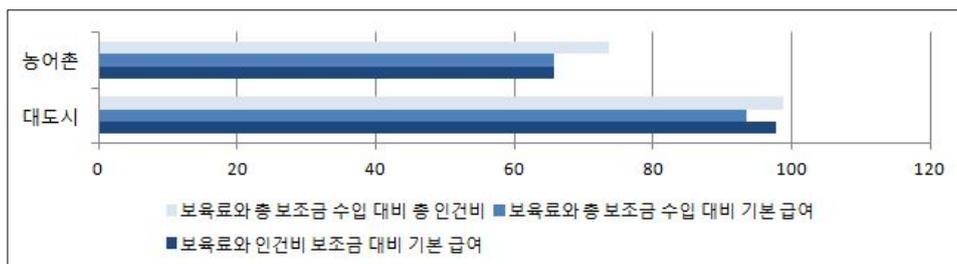
〈표 IV-3-8〉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법인(49인)

| 구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¹⁾ 수입 대비 총 인건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 급여 ²⁾ | 보육료 ³⁾ 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 급여 |
|-----|---|---|--|
| 대도시 | 98.8 | 93.5 | 97.8 |
| 농어촌 | 73.6 | 65.8 | 65.8 |

주: 1) 총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포함된 금액임.

2) 기본급여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금 포함된 금액임.

3) 보육료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포함



[그림 IV-3-2] 인건비 지출: 법인(49인)

한편, 보육료와 총 보조금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은 대도시 98.8%, 농어촌 73.6%로 대도시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보조금 전부가 인건비로 지출된다. 농어촌 어린이집도 대도시보다 낮지만 3/4이 지출된다. 기본급여 비율도 대도시는 93.5%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수입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구조이다.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급여 또한 97.8%로 어린이집에 들어온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이 기본급여로 지출된다. 농어촌은 기본급여 비율이 각각 65.8%, 65.8%로 적절한 수준으로 지출되고 있다.

다. 민간개인어린이집

1세 1반, 2세 2반, 3세 1반, 4세 1반 총 5반의 정원 49명의 민간개인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표 IV-3-9>와 같다.

대·중소도시 어린이집 모두 정원충족률 100%로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수입이 안정적이며, 평가인증으로 취사부 1명의 인건비 지원, 5세누리과정 운영으로 기타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특히,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은 서울형 지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원장과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타 운영비와 보육도우미 등의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보다 운영이 훨씬 수월하다. 중소도시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출 부담으로 통합버스를 운영하나 차량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취사부도 마찬가지로이다.

<표 IV-3-9> 어린이집 운영 현황: 민간개인(49인)

단위: 명, %

| 구분 | 보육 아동 | | | 보조금 | | | 프로그램 지원 | | 평가 인증 | 통합 버스 | 보육교직원 | | | | |
|------|-------|----|---------------|-----------|-----------------|-----|----------|----------------|-------|-------|-------|------------|----|--------|------------------|
| | 영아 | 유아 | 정원 충족 률 | 인건비 지원 | 기본 보육료 지원 | 기타 | 취약 보육 | 5세 누리 과정 | | | 원장 | 보육교사 영아 | 유아 | 기 타 | 기타 ¹⁾ |
| 대도시 | 20 | 29 | 100.0 | - | ○ | 서울형 | - | 4 | ○ | - | 1 | 3 | 2 | 1 | 2 |
| 중소도시 | 22 | 27 | 100.0 | - | ○ | - | - | 2 | ○ | ○ | 1 | 3 | 2 | - | - |

주: 1) 기타 인력에는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차량기사 등이 포함됨.

이들 어린이집의 수입을 분석하면, 대도시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수입이 약 90%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 중소도시 어린이집은 앞서 살펴본 대도시 어린이집과 정원충족률이 동일하지만, 보육료와 기본보육료가 15.7%, 13.2%로 약 30% 정도이고 인건비보조금이 51.4%로 절반을 충당하고 있다. 두 어린이집 모두 5세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지원금과 특별활동비 수입으로 나머지를 재정 수입을 보완하고 있다.

〈표 IV-3-10〉 어린이집 수입 비율: 민간개인(49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 | 보조금 | | | | 필요경비 | | 잡수입 | 전입금 | 전체 |
|------|------|------------|-----------|-----------|-----------|------------|-----------|-----|-----|-------|
| | | 인건비 보조금 | 기본 보육료 | 기타 지원금 | 자본 보조금 | 기타필 요경비 | 특별 활동비 | | | |
| 대도시 | 46.5 | - | 42.6 | 3.9 | - | 0.9 | 6.1 | - | - | 100.0 |
| 중소도시 | 15.7 | 51.4 | 13.2 | 6.2 | - | - | 6.0 | - | 7.5 | 100.0 |

한편, 총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도시 67%, 중소도시 58.6%로 대도시가 약 10% 정도 많다. 인건비 세출과목에서 사회보험부담비용과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지출 비율은 두 어린이집이 큰 차이는 없으나 대도시 어린이집의 기본급이 10% 정도 높아 인건비 지출이 많다. 이는 대도시가 보육교사 1명과 취사부 등의 기타 보육교직원 2명 더 많기 때문이다. 보육교직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도시 어린이집은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의 고용으로 일용잡금 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 IV-3-11〉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민간개인(49인)

단위: %

| 구분 | 기본급 | 사회보험부담 비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기타후생 경비 | 제수당 | 일용 잡금 | 전체 |
|------|------|--------------|----------------|------------|-----|----------|------|
| 대도시 | 53.5 | 4.8 | 5.1 | 2.1 | 1.6 | - | 67.0 |
| 중소도시 | 40.7 | 6.4 | 3.5 | 3.1 | 1.1 | 3.7 | 58.6 |

어린이집의 주요 수입인 보육료와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을 살펴보면, 보육료와 총 보조금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은 보육교직원이 많은 대도시가 78% 정도로 중소도시보다 15% 정도 많다. 기본급여 비율은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도시는 55%로 크게 낮아졌지만 대도시는 여전히 70%를 상회한다. 기타지원금을 제외한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급여 비율은 다소 상승하여 대도시는 77.1%, 중소도시는 59.5%를 나타낸다. 즉, 대도시는 보육료나 보조금 수입의 3/4 정도를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어 인건비로 인한 재정 운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도시는 인건비 지출 부담은 적지만 인력 부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3-12〉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민간개인(49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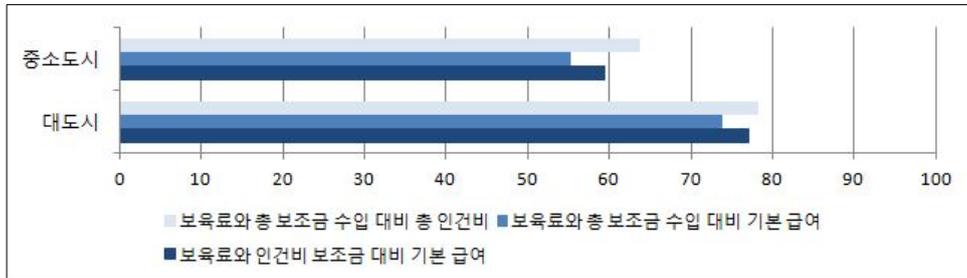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¹⁾ 수입 대비 총 인건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 급여 ²⁾ | 보육료 ³⁾ 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 급여 |
|------|---|---|--|
| 대도시 | 78.2 | 73.8 | 77.1 |
| 중소도시 | 63.8 | 55.2 | 59.5 |

주: 1) 총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포함된 금액임.

2) 기본급여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금 포함된 금액임.

3) 보육료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포함



[그림 IV-3-3] 인건비 지출: 민간개인(49인)

라. 영아전담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과 정원은 차이가 없으나 영아전담 지정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대도시 어린이집은 정원 49명의 0세 2반, 1세 4반, 2세 3반 총 9반, 중소도시는 정원은 동일하나 0세 3반, 1세 3반, 2세 2반을 운영한다.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은 정원 50명으로 0세 5반, 1세 3반, 2세 2반 총 10반을 운영한다. 따라서 정원은 큰 차이 없으나 인건비 80%를 지원받는 영아 보육교사 수는 다소 차이가 난다. 세 지역 어린이집 모두 평가인증으로 취사부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시간연장보육으로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80%를 지원받는다(표 참조).

이들 어린이집의 수입 구조를 보면, 수입의 50% 이상을 인건비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나머지는 보육료로 충당하고 있다.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급간식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금 등의 기타지원금 수입이 있다(표 참조).

〈표 IV-3-13〉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국공립 영아전담(49~50인)

단위: 명, %

| 구분 | 보육 아동 | | | 보조금 | | | 프로그램 지원 | 평가 인증 | 통학 버스 | 보육교직원 | | | | |
|--------------------|-------|----|--------|--------|----------|----|---------|-------|-------|-------|------|------------------|---|---|
| | 영아 | 유아 | 정원 총족률 | 인건비 지원 | 기본보육료 지원 | 기타 | 취약보육 | | | 원장 | 보육교사 | 기타 ¹⁾ | | |
| 대도시 ²⁾ | 50 | - | 102.0 | ○ | - | - | - | ○ | - | 1 | 9 | - | - | 1 |
| 중소도시 ³⁾ | 44 | - | 89.8 | ○ | - | - | 시간연장 | ○ | ○ | 1 | 8 | - | 1 | 1 |
| 농어촌 ⁴⁾ | 46 | - | 92.0 | ○ | - | - | 시간연장 | ○ | - | 1 | 10 | - | 1 | 1 |

주: 1) 기타 인력에는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차량기사 등이 포함됨.
 2) 정원 49명, 0세 2반, 1세 4반, 2세 3반 구성
 3) 정원 49명, 0세 3반, 1세 3반, 2세 2반 구성
 4) 정원 50명, 0세 5반, 1세 3반, 2세 2반 구성

〈표 IV-3-14〉 어린이집 수입 비율: 국공립 영아전담(49~50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 | 보조금 | | | | 필요경비 | | 잡수입 | 전입금 | 전체 |
|------|------|---------|-------|--------|--------|--------|-------|-----|-----|-------|
| | | 인건비 보조금 | 기본보육료 | 기타 지원금 | 자본 보조금 | 기타필요경비 | 특별활동비 | | | |
| 대도시 | 44.0 | 56.0 | - | - | - | - | - | - | - | 100.0 |
| 중소도시 | 44.3 | 53.7 | - | 2.0 | - | - | - | - | - | 100.0 |
| 농어촌 | 43.3 | 51.6 | - | - | - | - | - | 5.0 | - | 100.0 |

반면, 총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중소도시가 82%로 가장 높고, 농어촌이 73%로 가장 낮다. 인건비 과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급은 농어촌이 60%로 가장 높지만, 중소도시의 경우 기본급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 수당과 일용직이나 임시직 인건비로 지출 비율이 14% 정도로 높아 총 인건비 지출 비율이 높다. 세 지역 어린이집 모두 인건비가 총 지출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3-15〉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국공립 영아전담(49~50인)

단위: %

| 구분 | 기본급 | 사회보험부담비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기타후생경비 | 제수당 | 일용직급 | 전체 |
|------|------|----------|-------------|--------|-----|------|------|
| 대도시 | 50.3 | 9.0 | 4.7 | 7.1 | 5.8 | - | 76.8 |
| 중소도시 | 58.2 | 4.8 | 4.9 | 1.8 | 8.4 | 3.9 | 82.0 |
| 농어촌 | 60.6 | 9.5 | - | 0.4 | 2.6 | - | 7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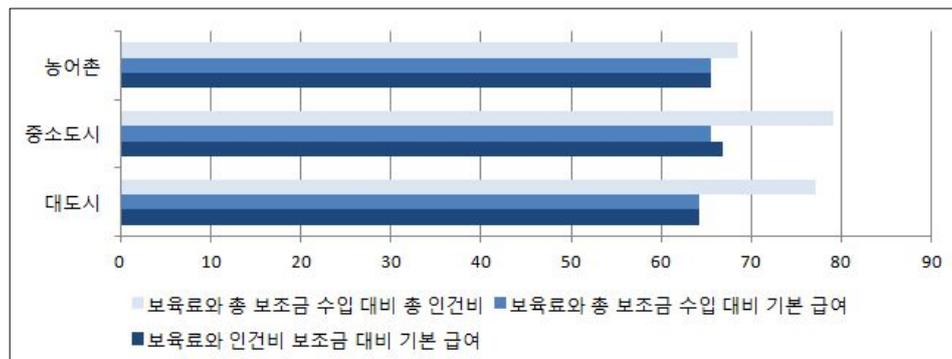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주 수입인 보육료와 총 보조금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을 보면 중소도시가 79.1%로 가장 높고 농어촌이 68.1%로 가장 낮다. 한편, 기본 급여 비율은 세 지역 모두 다소 낮은 65% 내외를 나타낸다.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급여도 앞서 살펴본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기본급 및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제외한 기타 인건비 지출이 많지 않으면 어린이집 재정이 안정적일 수 있다.

〈표 IV-3-16〉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 영아전담(49~50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¹⁾ 수입 대비 총 인건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 급여 ²⁾ | 보육료 ³⁾ 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 급여 |
|------|---|---|--|
| 대도시 | 77.2 | 64.2 | 64.2 |
| 중소도시 | 79.1 | 65.5 | 66.8 |
| 농어촌 | 68.4 | 65.6 | 65.6 |

- 주: 1) 총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포함된 금액임.
 2) 기본급여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금 포함된 금액임.
 3) 보육료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포함



[그림 IV-3-4] 인건비 지출: 국공립 영아전담(49~50인)

4. 79인

가.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79명의 1세 2반, 2세 2반, 3세 1반, 4세 1반, 5세 1반 총 7반을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은 <표 IV-4-1>와 같다. 대·중소도시는 정원충족률이 100%이나 농어촌은 이보다 다소 낮은 96.2% 정도이다. 세 어린이집 모두 평가인증으로 취사부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특히 대도시 어린이집은 서울형 지정으로 기타운영비와 보육도우미를 지원받고, 시간연장보육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80%와 5세 누리과정반 운영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받고 있다. 즉, 인건비 지원이 타 지역보다 많다. 중소도시는 5세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기타지원금만 추가적으로 받고 있고, 농어촌 어린이집은 농어촌 특례지정으로 보육교사와 취사부 1명의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고 5세 누리과정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표 IV-4-1>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국공립(79인)

단위: 명, %

| 구분 | 보육 아동 | | | 보조금 | | | 프로그램 지원 | | 평가 인증 | 통학 버스 | 보육교직원 | | | | |
|------|-------|----|---------------|-----------|-----------------|-----|----------|----------------|-------|-------|-------|------|---|---|------------------|
| | 영아 | 유아 | 정원 충족 률 | 인건비 지원 | 기본 보육료 지원 | 기타 | 취약 보육 | 5세 누리 과정 | | | 원장 | 보육교사 | | | 기타 ¹⁾ |
| | | | | | | | | | | | | 영 | 유 | 기 | |
| 대도시 | 24 | 55 | 100.0 | ○ | - | 서울형 | 시간 연장 | 21 | ○ | - | 1 | 4 | 3 | - | 2 |
| 중소도시 | 24 | 55 | 100.0 | ○ | - | - | - | 20 | ○ | - | 1 | 4 | 3 | - | 2 |
| 농어촌 | 26 | 50 | 96.2 | ○ | - | 농어촌 | - | 18 | ○ | ○ | 1 | 4 | 3 | - | 2 |

주: 1) 기타 인력에는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차량기사 등이 포함됨.

이들 어린이집의 수입구조를 보면, 보육료는 농어촌이 55.6%로 가장 많고 중소도시가 32.2%로 가장 낮다. 이에 반해 인건비보조금은 인건비 지원이 가장 많은 대도시가 41.8%로 가장 높고, 농어촌이 34.6%로 가장 낮다. 어린이집 수입을 보완하는 필요경비는 중소도시가 21.7%로 매우 높다. 특히 기타필요경비 수입이 10%를 넘고, 특별활동비도 대도시의 2배가 넘는다. 농어촌은 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등의 잡수입 비중이 높다.

〈표 IV-4-2〉 어린이집 수입 비율: 국공립(79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 | 보조금 | | | | 필요경비 | | 잡수입 | 전입금 | 전체 |
|------|------|------------|-----------|-----------|-----------|------------|-----------|-----|-----|-------|
| | | 인건비 보조금 | 기본 보육료 | 기타 지원금 | 자본 보조금 | 기타필 요경비 | 특별 활동비 | | | |
| 대도시 | 49.6 | 41.8 | - | 3.3 | - | 1.4 | 3.8 | 0.1 | - | 100.0 |
| 중소도시 | 32.2 | 40.0 | - | 3.3 | - | 12.4 | 9.3 | 2.7 | - | 100.0 |
| 농어촌 | 55.6 | 34.6 | - | 2.9 | - | 0.3 | - | 6.7 | - | 100.0 |

한편 인건비 지출을 보면,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은 대도시가 65.8%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53.5%로 낮다. 세 지역 어린이집 모두 인건비 지출이 총 지출의 65% 이하로 인건비 지출에 따른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4-3〉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79인)

단위: %

| 구분 | 기본급 | 사회보험부담 비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기타후생 경비 | 제수당 | 일용 잡급 | 전체 |
|------|------|--------------|----------------|------------|-----|----------|------|
| 대도시 | 48.7 | 4.3 | 4.1 | 1.1 | 7.5 | - | 65.8 |
| 중소도시 | 40.7 | 4.7 | 3.7 | 1.0 | 3.2 | 0.2 | 53.5 |
| 농어촌 | 42.6 | 11.6 | 3.9 | 1.6 | 3.0 | 2.0 | 64.7 |

〈표 IV-4-4〉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79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¹⁾ 수입 대비 총 인건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 급여 ²⁾ | 보육료 ³⁾ 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 급여 |
|------|---|---|--|
| 대도시 | 67.6 | 58.8 | 60.8 |
| 중소도시 | 93.4 | 85.6 | 89.5 |
| 농어촌 | 68.4 | 61.4 | 6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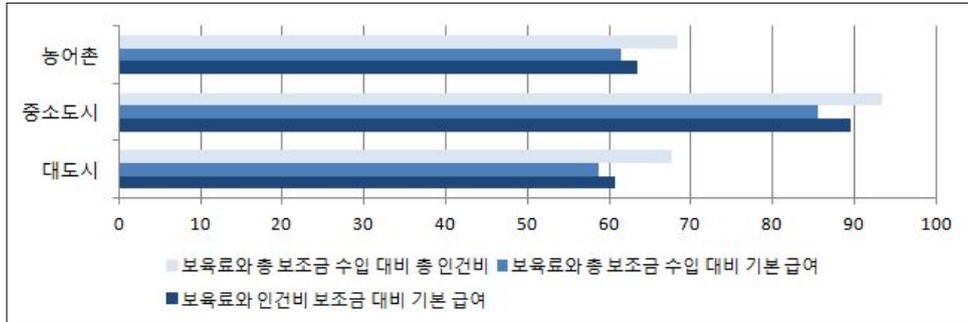
주: 1) 총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포함된 금액

2) 기본급여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금 포함된 금액

3) 보육료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포함

기타 수입을 제외한 보육료와 총 보조금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을 보면, 대도시와 농어촌은 65% 이상으로 다소 부담이 되지만 중소도시는 93.4%로 매우 높다. 기본급여 비율도 중소도시가 85.6%로 높고,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비율 기본급여 비율도 89.5%로 90% 가까이 되고 있어 보육료와 보조금 수입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보조금만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별활동비 수입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V-4-1] 인건비 지출: 국공립(79인)

나. 법인어린이집

앞서 살펴본 국공립어린이집과 반 구성이 동일한 법인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정원충족률이 100% 이상이지만 대도시의 90% 정도로 다소 낮다.

<표 IV-4-5> 어린이집 운영 현황: 법인(79~80인)

단위: 명, %

| 구분 | 보육 아동 | | | 보조금 | | | 프로그램 지원 | | 평가 인증 | 통학 버스 | 원장 | 보육교직원 | | | 기타 ¹⁾ |
|-------------------|-------|----|-------|--------|----------|-----|---------|---------|-------|-------|----|-------|------|----|------------------|
| | 영아 | 유아 | 정원충족률 | 인건비 지원 | 기본보육료 지원 | 기타 | 취약보육 | 5세 누리과정 | | | | 원장 | 보육교사 | 유아 | |
| 대도시 ²⁾ | 28 | 45 | 91.3 | ○ | - | - | - | 13 | ○ | ○ | 1 | 4 | 3 | - | 1 |
| 중소도시 | 22 | 57 | 100.0 | ○ | - | - | - | 20 | ○ | - | 1 | 4 | 3 | - | 2 |
| 농어촌 | 32 | 48 | 101.3 | ○ | - | 농어촌 | - | 12 | - | ○ | 1 | 4 | 3 | - | 2 |

주: 1) 기타 인력에는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차량기사 등이 포함됨.

2)는 중소도시,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과 반 구성은 동일하나 정원은 80명임.

세 지역 모두 보육교사 수는 동일하나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취사부나 차량기사

등의 기타 보육교직원이 1명 더 많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으로 취사부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누리과정 운영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한편, 농어촌 어린이집은 농어촌특례지정으로 보육교사와 취사부 1명의 인건비와 차량운영비를 추가 지원받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의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세 지역 어린이집 모두 보육료 수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인건비보조금이 30%대로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 7~10% 정도는 기타필요경비나 특별활동비로 충당한다(표 참조).

〈표 IV-4-6〉 어린이집 수입 비율: 법인(79~80인)

| 구분 | 보육료 | 보조금 | | | | 필요경비 | | 잡수입 | 전입금 | 전체 |
|------|------|------------|-----------|-----------|-----------|------------|-----------|-----|-----|-------|
| | | 인건비 보조금 | 기본 보육료 | 기타 지원금 | 자본 보조금 | 기타필 요경비 | 특별 활동비 | | | |
| 대도시 | 52.4 | 38.6 | - | 2.2 | - | - | 6.9 | - | - | 100.0 |
| 중소도시 | 52.9 | 32.5 | - | 4.4 | - | 3.1 | 7.1 | - | - | 100.0 |
| 농어촌 | 50.2 | 39.6 | - | 1.7 | - | 3.5 | 5.0 | - | - | 100.0 |

단위: %

한편,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은 세 어린이집 모두 60% 내외로 인건비로 인한 재정 운영의 부담이 적다(표 참조).

보육료와 총 보조금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은 다소 상승했지만 65% 내외로 운영이 매우 안정적이다.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 급여나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 급여 역시 60% 내외이다. 즉, 기타필요경비나 특별활동비 등의 추가 수입이 없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4-7〉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법인(79~80인)

| 구분 | 기본급 | 사회보험부담 비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기타후생 경비 | 제수당 | 일용 잡급 | 전체 |
|------|------|--------------|----------------|------------|-----|----------|------|
| | | | | | | | |
| 중소도시 | 49.0 | 4.5 | 4.2 | 2.0 | 2.0 | 0.3 | 62.0 |
| 농어촌 | 48.8 | 5.9 | 4.7 | 0.6 | 1.0 | 0.5 | 61.4 |

단위: %

<표 IV-4-8>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법인(79~80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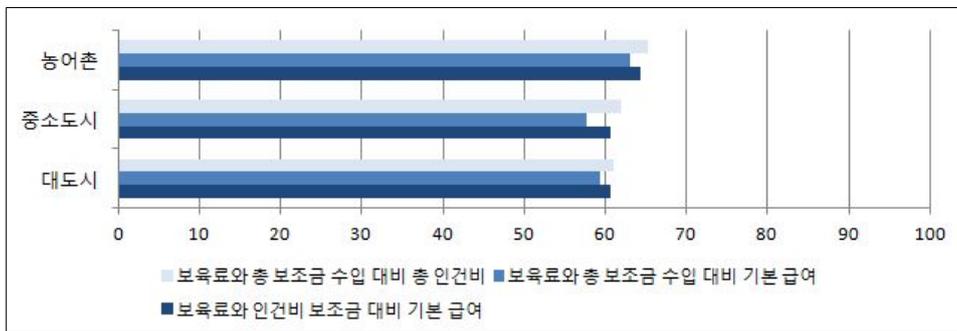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¹⁾ 수입 대비 총 인건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 급여 ²⁾ | 보육료 ³⁾ 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 급여 |
|------|---|---|--|
| 대도시 | 61.0 | 59.3 | 60.7 |
| 중소도시 | 62.0 | 57.7 | 60.7 |
| 농어촌 | 65.2 | 63.0 | 64.3 |

주: 1) 총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포함된 금액임.

2) 기본급여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금 포함된 금액임.

3) 보육료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포함



[그림 IV-4-2] 인건비 지출 비율: 법인(79~80인)

다. 민간개인어린이집

반구성 1세 2반, 2세 2반, 3세 1반, 4세 1반, 5세 1반의 정원 79~80명인 민간개인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4-9>와 같이, 정원충족률은 대도시가 102.5%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95% 이상을 나타낸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평가인증으로 취사부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중소도시만 취사부가 있다. 대도시는 서울형 지정으로 인건비를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영아 보육교사 80%, 유아보육교사 30%를 지원받고, 이 외에도 기타지원금 및 보육도우미 지원을 받고 있다. 중소도시는 취사부, 차량기사 등의 기타 보육교직원 2명이 더 채용하고 있다.

〈표 IV-4-9〉 어린이집 운영 현황: 민간개인(79~80인)

단위: 명, %

| 구분 | 보육 아동 | | | 보조금 | | | 프로그램 지원 | | 평가인증 | 통학버스 | 보육교직원 | | | |
|--------------------|-------|----|-------|--------|----------|-----|---------|---------|------|------|-------|------|----|----|
| | 영아 | 유아 | 정원충족률 | 인건비 지원 | 기본보육료 지원 | 기타 | 취약보육 | 5세 누리과정 | | | 원장 | 보육교사 | 영아 | 유아 |
| 대도시 | 26 | 51 | 102.5 | - | ○ | 서울형 | - | 18 | ○ | - | 1 | 4 | 3 | - |
| 중소도시 ²⁾ | 30 | 48 | 97.5 | - | ○ | - | - | 17 | ○ | ○ | 1 | 4 | 3 | - |
| 농어촌 ³⁾ | 25 | 52 | 95.0 | - | ○ | - | - | 16 | - | ○ | 1 | 4 | 3 | - |

주: 1) 기타 인력에는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차량기사 등이 포함됨.

2), 3) 어린이집은 대도시 어린이집과 반구성은 동일하나 정원이 80명임

어린이집 수입 구조를 보면, 보육료 수입은 농어촌이 71.8%로 가장 높고 인건비 지원을 받는 대도시가 39%로 가장 낮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어린이집 수입을 대부분 보육료와 기본보육료에 의지하는 반면, 대도시 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이 26.6%, 21.1%로 수입이 다양하다. 이 외에도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로 수입을 보완하는 데 반해 농어촌은 자본보조금으로 수입을 보충하고 있다.

〈표 IV-4-10〉 어린이집 수입 비율: 민간개인(79~80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 | 보조금 | | | | 필요경비 | | 잡수입 | 전입금 | 전체 |
|------|------|---------|-------|--------|-------|--------|-------|-----|-----|-------|
| | | 인건비 보조금 | 기본보육료 | 기타 지원금 | 자본보조금 | 기타필요경비 | 특별활동비 | | | |
| 대도시 | 39.0 | 26.6 | 21.1 | 4.7 | - | 4.0 | 4.6 | - | - | 100.0 |
| 중소도시 | 66.0 | 1.0 | 11.4 | 5.3 | - | 5.1 | 11.1 | - | - | 100.0 |
| 농어촌 | 71.8 | 1.2 | 12.4 | 6.7 | 6.0 | - | - | 2.0 | - | 100.0 |

〈표 IV-4-11〉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민간개인(79~90인)

단위: %

| 구분 | 기본급 | 사회보험부담 비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기타후생 경비 | 제수당 | 일용잡급 | 전체 |
|------|------|-----------|-------------|---------|-----|------|------|
| 대도시 | 45.4 | 3.2 | 0.1 | 1.0 | 1.1 | 3.1 | 53.9 |
| 중소도시 | 35.3 | 12.1 | 3.4 | 0.7 | 1.0 | 2.5 | 55.1 |
| 농어촌 | 45.5 | 4.0 | 4.7 | 0.2 | 8.9 | - | 63.3 |

한편, 총 지출에서 총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농어촌이 63.3%로 가장 높고, 대도시가 53.9%로 10%p 정도 차이가 난다. 기본급이나 사회보험부담비용, 퇴직금 등의 비중은 차이가 없으나 농어촌 어린이집의 제수당 비율이 약 9%로 타 지역보다 다소 높다. 이는 취사부나 차량기사 없이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운영함에 따라 제수당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표 참조).

인건비 지출을 어린이집 주 수입원인 보육료와 보조금과 비교해 보면, 보육료와 총 보조금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은 중소도시가 67.6%로 가장 높고, 대도시가 51.9%로 여전히 낮다. 기본 급여 비율은 더 낮아져서 중소도시가 65.3%, 대도시 46.8%를 나타내며,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급여 비율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79~80명 정원의 민간개인어린이집은 정원이 동일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집보다 총 인건비나 기본 급여 지출 비율이 낮다.

〈표 IV-4-12〉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민간개인(79~80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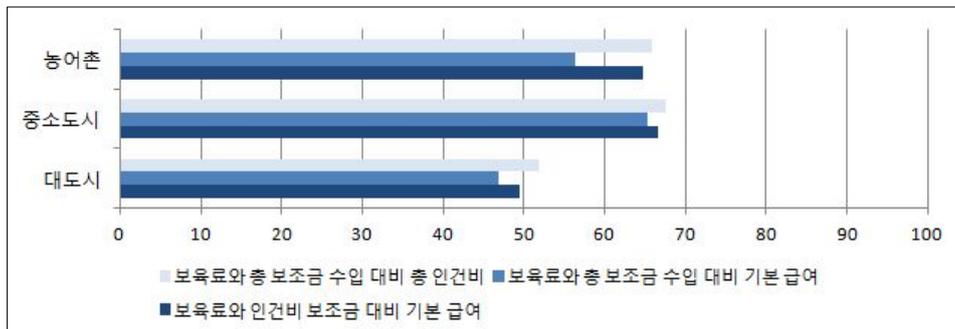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¹⁾ 수입 대비 총 인건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 급여 ²⁾ | 보육료 ³⁾ 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 급여 |
|------|---|---|--|
| 대도시 | 51.9 | 46.8 | 49.4 |
| 중소도시 | 67.6 | 65.3 | 66.6 |
| 농어촌 | 65.8 | 56.3 | 64.7 |

주: 1) 총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포함된 금액임.

2) 기본급여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금 포함된 금액임.

3) 보육료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포함



[그림 IV-4-3] 인건비 지출 비율: 민간개인(79~80인)

5. 99인

가.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99명의 1세 2반, 2세 2반, 3세 2반, 4세 1반, 5세 1반 총 8개반을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IV-5-1>와 같이, 세 지역 어린이집 모두 평가인증으로 취사부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시간연장보육 운영으로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80%, 5세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특히 대도시는 서울형 지정으로 기타운영비와 보육도우미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고 농어촌 어린이집은 농어촌 특례지정으로 보육교사와 취사부 각각 1명의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받고 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기타보육교직원 수가 세 지역 모두 동일하다.

<표 IV-5-1>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국공립(99인)

단위: 명, %

| 구분 | 보육 아동 | | | 보조금 | | | 프로그램 지원 | | 평가 인증 | 통학 버스 | 보육교직원 | | | | |
|------|-------|----|--------|--------|-----------|-----|---------|---------|-------|-------|-------|------|---|---|------------------|
| | 영아 | 유아 | 정원 충족률 | 인건비 지원 | 기본 보육료 지원 | 기타 | 취약 보육 | 5세 누리과정 | | | 원장 | 보육교사 | | | 기타 ¹⁾ |
| | | | | | | | | | | | | 영 | 유 | 기 | |
| 대도시 | 29 | 70 | 100.0 | ○ | - | 서울형 | 시간 연장 | 21 | ○ | - | 1 | 4 | 4 | 2 | 3 |
| 중소도시 | 26 | 72 | 99.0 | ○ | - | - | 시간 연장 | 20 | ○ | - | 1 | 4 | 4 | 2 | 3 |
| 농어촌 | 26 | 71 | 98.0 | ○ | - | 농어촌 | 시간 연장 | 19 | ○ | ○ | 1 | 4 | 4 | 2 | 3 |

세 지역 어린이집의 수입 구조를 보면, 보육료 수입이 40%로 중소도시가 49.9%로 가장 높고 대도시가 40.5%로 가장 낮다. 인건비보조금은 농어촌이 41.8%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26.6%로 가장 낮다.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수입은 농어촌이 85.3%로 가장 높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수입 일부를 기타필요경비나 특별활동비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는 필요경비 비율이 16.2%로 높다.

<표 IV-5-3>에 제시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은 농어촌이 65.6%로 가장 높고 대도시가 47%로 가장 낮다. 세 지역 어린이집 모두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출되고 있다.

〈표 IV-5-2〉 어린이집 수입 비율: 국공립(99인)

| 구분 | 보육료 | 보조금 | | | | 필요경비 | | 잡수입 | 전입금 | 전체 |
|------|------|------------|-----------|-----------|-----------|------------|-----------|------|-----|-------|
| | | 인건비 보조금 | 기본 보육료 | 기타 지원금 | 자본 보조금 | 기타필 요경비 | 특별 활동비 | | | |
| 대도시 | 40.5 | 32.1 | - | 6.6 | - | 2.0 | 7.3 | 11.6 | - | 100.0 |
| 중소도시 | 49.9 | 26.6 | - | 5.6 | - | 8.6 | 7.6 | 1.6 | - | 100.0 |
| 농어촌 | 43.5 | 41.8 | - | 6.1 | - | 0.7 | 3.4 | 4.5 | - | 100.0 |

단위: %

〈표 IV-5-3〉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99인)

| 구분 | 기본급 | 사회보험부담 비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기타후생 경비 | 제수당 | 일용 잡급 | 전체 |
|------|------|--------------|----------------|------------|-----|----------|------|
| 대도시 | 36.5 | 3.2 | 3.0 | 1.4 | 2.9 | - | 47.0 |
| 중소도시 | 43.1 | 4.7 | 3.5 | 0.2 | 1.1 | 0.6 | 53.2 |
| 농어촌 | 48.5 | 9.5 | 4.4 | 1.4 | 1.8 | 0.1 | 6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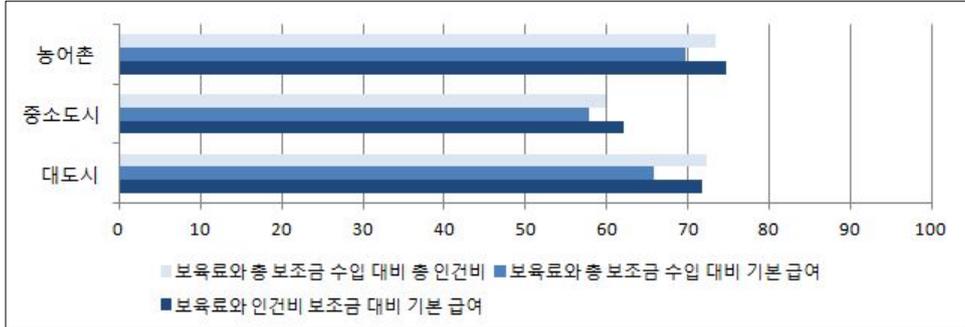
단위: %

국공립어린이집의 주 수입원인 보육료와 총 보조금에서 총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농어촌과 대도시가 73.4%, 72.4%로 다소 높다. 기본급여 비율은 다소 낮아져서 농어촌이 69.8%, 대도시 65.8%를 나타낸다. 그러나 기타지원금을 제외한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급여는 농어촌이 74.8%로 높아졌고, 대도시 또한 71.8%로 높아져서 보육료와 국공립에 지원되는 인건비보조금만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IV-5-4〉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국공립(99인)

| 구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¹⁾ 수입 대비 총 인건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 급여 ²⁾ | 보육료 ³⁾ 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 급여 |
|------|---|---|--|
| 대도시 | 72.4 | 65.8 | 71.8 |
| 중소도시 | 59.9 | 57.9 | 62.1 |
| 농어촌 | 73.4 | 69.8 | 74.8 |

주: 1) 총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포함된 금액임.
 2) 기본급여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금 포함된 금액임.
 3) 보육료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포함



[그림 IV-5-1] 인건비 지출 비율: 민간개인(99인)

나. 법인어린이집

앞서 살펴본 국공립어린이집과 정원과 반 구성이 동일한 법인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IV-5-5>와 같이, 정원충족률은 농어촌이 105.1%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89.95로 낮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세 지역 어린이집 모두 동일하나 취사부나 차량기사 등의 기타 보육교직원 수는 농어촌으로 갈수록 많다. 세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으로 취사부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누리과정 운영으로 운영비를 받고 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어린이집 모두 농어촌특례 지정으로 보육교사와 취사부 인건비와 차량운영비를 추가 지원받고 있다.

<표 IV-5-5> 어린이집 운영 현황: 법인(99인)

단위: 명, %

| 구분 | 보육 아동 | | | 보조금 | | | 프로그램 지원 | | 평가 인증 | 통학 버스 | 보육교직원 | | | | |
|------|-------|----|--------|--------|-----------|-----|---------|---------|-------|-------|-------|------|----|----|------------------|
| | 영아 | 유아 | 정원 충족률 | 인건비 지원 | 기본 보육료 지원 | 기타 | 취약 보육 | 5세 누리과정 | | | 원장 | 보육교사 | | | 기타 ¹⁾ |
| | | | | | | | | | | | | 영아 | 유아 | 기타 | |
| 대도시 | 24 | 69 | 93.9 | ○ | - | - | - | 17 | ○ | ○ | 1 | 4 | 4 | - | 2 |
| 중소도시 | 21 | 68 | 89.9 | ○ | - | 농어촌 | - | 23 | ○ | ○ | 1 | 4 | 4 | - | 3 |
| 농어촌 | 30 | 74 | 105.1 | ○ | - | 농어촌 | - | 25 | ○ | ○ | 1 | 4 | 4 | - | 4 |

주: 1) 기타 인력에는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차량기사 등이 포함됨.

99인 법인어린이집의 수입구조를 보면, 대도시의 보육료 수입이 52.7%로 가장 많

고 농어촌이 33.7%로 낮다. 농어촌 어린이집의 경우, 기준달에 전입금이 전체 수입의 1/3인 29.5%가 수납되어 다른 수입 과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인건비 보조금 역시 대도시가 29.7%로 수입의 1/3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농어촌이 가장 낮다. 특히 중소도시와 대都市는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가 20.1%, 15.8%로 수입을 보완하고 있다.

〈표 IV-5-6〉 어린이집 수입 비율: 법인(99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 | 보조금 | | | | 필요경비 | | 잡수입 | 전입금 | 전체 |
|------|------|---------|-------|--------|--------|--------|-------|-----|------|-------|
| | | 인건비 보조금 | 기본보육료 | 기타 지원금 | 자본 보조금 | 기타필요경비 | 특별활동비 | | | |
| 대도시 | 52.7 | 29.7 | - | 1.9 | - | 5.2 | 10.6 | - | - | 100.0 |
| 중소도시 | 48.5 | 28.8 | - | 2.6 | - | 11.0 | 9.1 | - | - | 100.0 |
| 농어촌 | 33.7 | 20.3 | - | 2.4 | - | 1.7 | 8.3 | 4.2 | 29.5 | 100.0 |

한편, 총 인건비 지출을 보면 대도시가 총 지출 대비 63.2%로 가장 높고 농어촌이 43.2%로 가장 낮다. 특히 농어촌은 기본급 비율이 30% 미만으로 타 지역보다 낮다. 세 지역 어린이집 모두 인건비 비율이 낮아 지출 비중이 높은 교재교구비나 급간식비 지출이 원활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5-7〉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총 인건비 비율: 법인(99인)

단위: %

| 구분 | 기본급 | 사회보험부담 비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기타후생 경비 | 제수당 | 일용잡금 | 전체 |
|------|------|-----------|-------------|---------|-----|------|------|
| 대도시 | 43.3 | 9.7 | 3.3 | 1.1 | 5.8 | - | 63.2 |
| 중소도시 | 36.3 | 11.7 | 3.4 | 1.1 | - | 2.0 | 54.6 |
| 농어촌 | 28.2 | 9.8 | 2.4 | 1.0 | 1.7 | - | 4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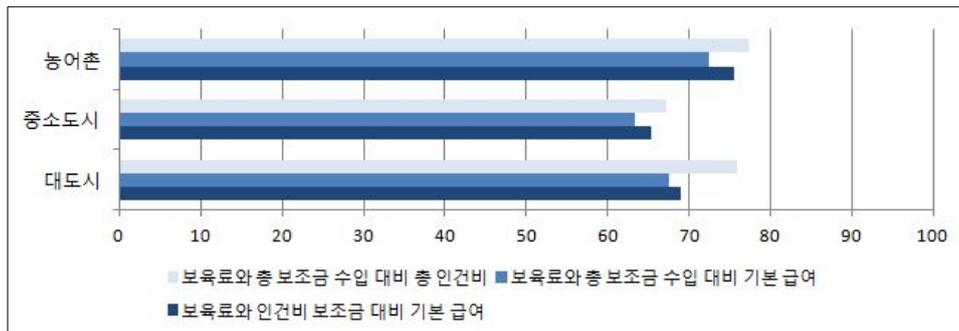
법인어린이집의 주요 수입인 보육료와 총 보조금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을 보면, 농어촌이 77.4%, 대도시가 75.9%로 보육료와 보조금의 3/4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한편, 기본급여 비율은 다소 낮아져 농어촌이 72.4%, 대도시 67.5%이다.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급여 비율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인건비가 어린이집 재정 운영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표 IV-5-8〉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법인(99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¹⁾ 수입 대비 총 인건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 급여 ²⁾ | 보육료 ³⁾ 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 급여 |
|------|---|---|--|
| 대도시 | 75.9 | 67.5 | 69.0 |
| 중소도시 | 67.2 | 63.3 | 65.4 |
| 농어촌 | 77.4 | 72.4 | 75.6 |

주: 1) 총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포함된 금액임.
 2) 기본급여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금 포함된 금액임.
 3) 보육료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포함



[그림 IV-5-2] 인건비 지출 비율: 법인(99인)

다. 민간개인어린이집

정원 99명의 민간개인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보면, 1세 2반, 2세 2반, 3세 2반, 4세 1반, 5세 1반 총 8개반 운영으로 담임 보육교사는 총 8명이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보육교사 1명씩을 보조로 고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취사부나 차량기사 등의 기타보육교직원인 대도시 4명으로 가장 많고 중소도시가 1명으로 적다.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으로 취사부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농어촌 어린이집은 농어촌특례 지정으로 보육교사와 취사부 인건비와 차량운영비를 추가 지원받고 있다. 세 지역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 운영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표 IV-5-9〉 어린이집 운영 현황: 민간개인(99인)

단위: 명, %

| 구분 | 보육 아동 | | | 보조금 | | | 프로그램 지원 | | 평가 인증 | 통학 버스 | 보육교직원 | | | | |
|------|-------|----|--------|--------|----------|-----|---------|---------|-------|-------|-------|------|----|----|------------------|
| | 영아 | 유아 | 정원 충족률 | 인건비 지원 | 기본보육료 지원 | 기타 | 취약보육 | 5세 누리과정 | | | 원장 | 보육교사 | 유아 | 기타 | 기타 ¹⁾ |
| 대도시 | 23 | 72 | 96.0 | - | ○ | - | - | 23 | - | ○ | 1 | 4 | 4 | - | 4 |
| 중소도시 | 38 | 69 | 98.0 | - | ○ | - | - | 21 | ○ | ○ | 1 | 4 | 4 | 1 | 1 |
| 농어촌 | 35 | 62 | 98.0 | - | ○ | 농어촌 | - | 10 | - | ○ | 1 | 4 | 4 | 1 | 3 |

주: 1) 기타 인력에는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차량기사 등이 포함됨.

99인 민간개인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이 전체 수입의 50~70%를 차지하는데, 중소도시는 보육료 수입이 약 70%로 약 3/4을 보육료에 의지하고 있다. 농어촌도 60%로 높다. 또한 영아 비율이 낮아 기본보육료 수입 비율이 소규모 어린이집보다 낮은 10% 이하를 나타낸다. 특히 유아 비중이 높아 필요경비 수입이 많다. 대도시는 36.1%로 전체 수입의 1/3을 필요경비로 충당하고 있다.

〈표 IV-5-10〉 어린이집 수입 비율: 민간개인(99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 | 보조금 | | | | 필요경비 | | 잡수입 | 전입금 | 전체 |
|------|------|---------|-------|--------|--------|--------|-------|-----|------|-------|
| | | 인건비 보조금 | 기본보육료 | 기타 지원금 | 자본 보조금 | 기타필요경비 | 특별활동비 | | | |
| 대도시 | 48.8 | 0.8 | 6.1 | 8.2 | - | 7.1 | 29.0 | - | - | 100.0 |
| 중소도시 | 70.6 | 1.0 | 8.3 | 6.5 | - | 2.2 | 11.5 | - | - | 100.0 |
| 농어촌 | 60.3 | 1.1 | 8.9 | 3.8 | - | - | 11.8 | 0.5 | 13.6 | 100.0 |

〈표 IV-5-11〉 어린이집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민간개인(99인)

단위: %

| 구분 | 기본급 | 사회보험부담 비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기타후생 경비 | 제수당 | 일용잡급 | 전체 |
|------|------|-----------|-------------|---------|------|------|------|
| 대도시 | 26.4 | 7.0 | 2.5 | 0.1 | 0.7 | 7.8 | 44.5 |
| 중소도시 | 39.9 | 2.4 | 3.7 | 0.4 | 5.6 | 0.4 | 52.5 |
| 농어촌 | 33.2 | 5.2 | 11.5 | 2.1 | 12.5 | - | 64.5 |

총 지출대비 총 인건비 지출은 농어촌으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농어촌이 64.5%이고 대도시는 44.5%이다. 농어촌의 경우 기본급과 사회보험부담비용, 퇴직금 비중이 높다. 대도시는 임시직 및 일용직 인건비인 일용잡급 비율이 8% 정도로 높고 농어촌은 제수당이 12.5%로 높다(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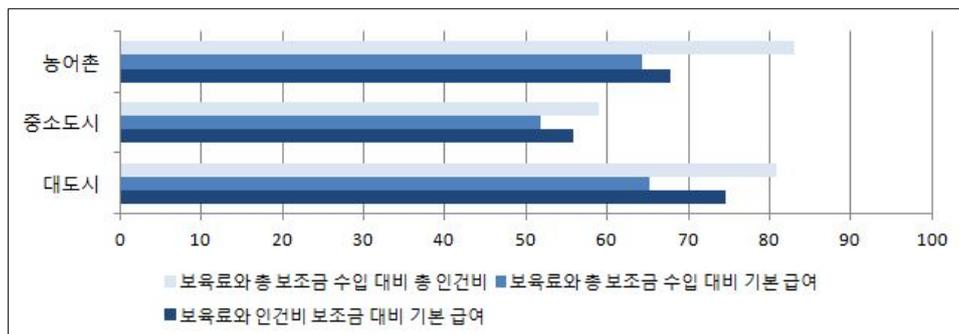
보육료와 총 보조금 대비 총 인건비 비율은 농어촌이 83%, 대도시 80.8%로 보육료와 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된다고 할 수 있다. 중소도시가 가장 안정적인 58.9%를 나타낸다. 기본 급여 비율은 낮아져서 대도시 65.2%, 농어촌 64.3%, 중소도시 51.3% 정도이다. 따라서 기타추생경비나 제수당 일용잡급 등의 추가 인건비만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는다면 인건비 운영이 안정적이다.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인건비 보조금 대비 기본급여 비율은 대도시가 74.5%로 다소 높아져서 인건비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표 IV-5-12〉 어린이집 보육료·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 민간개인(99인)

단위: %

| 구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¹⁾ 수입 대비 총 인건비 | 보육료와 총 보조금 수입 대비 기본 급여 ²⁾ | 보육료 ³⁾ 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기본 급여 |
|------|--------------------------------------|--------------------------------------|-------------------------------------|
| 대도시 | 80.8 | 65.2 | 74.5 |
| 중소도시 | 58.9 | 51.7 | 55.9 |
| 농어촌 | 83.0 | 64.3 | 67.8 |

- 주: 1) 총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포함된 금액임.
 2) 기본급여는 기본급과 4대 보험, 퇴직금 포함된 금액임.
 3) 보육료는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포함



[그림 IV-5-3] 인건비 지출 비율: 민간개인(99인)

V. 어린이집 모형별 수입과 지출 구조

제5장에서는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운영 모형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 분석하여 제시한 기준 모형에 따라 인건비 지원에 따른 유형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 구조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각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수입과 지출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누리과정에 따른 지원 수준은 2012년 수준을 적용하였다.

고려된 시설유형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전담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이며, 설정된 모형을 기본으로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다소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1.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모형별 수입과 지출

가. 기본 가정

1) 반별 아동 수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각 규모별로 연령반을 설정하였는데 각 정원 규모별로 반 구성을 아동수로 구체화하였다. 반 정원 충족률 100% 상태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 정원 초과보육과 아동 수를 가감하여 총수를 조정하였다. 정원 충족률 85% 및 60%는 전체 아동수를 먼저 결정한 이후에 반당 아동수를 기본으로 임의로 조정하였다.

어린이집의 반별 아동 기본 가정은 <표 IV-1-1>, <표 IV-1-2>와 같다.

(표 계속)

| 구분 | 0 | 1 | 2 | 3 | 4 | 5 | 계 | 비고 |
|------|---|----|----|----|----|----|-----|-------------|
| 99인 | | | | | | | | |
| 반수 | 0 | 2 | 2 | 2 | 1 | 1 | 8 | |
| 아동수 | | | | | | | | |
| 100% | 0 | 11 | 15 | 31 | 21 | 21 | 99 | 반 정원 5인 초과 |
| 85% | | 10 | 12 | 26 | 18 | 18 | 84 | |
| 60% | | 7 | 10 | 18 | 12 | 12 | 59 | |
| 131인 | | | | | | | | |
| 반수 | 0 | 3 | 2 | 2 | 2 | 1 | 10 | |
| 아동수 | | | | | | | | |
| 100% | 0 | 15 | 16 | 34 | 44 | 22 | 131 | 반 정원 12인 초과 |
| 85% | | 13 | 14 | 29 | 37 | 18 | 111 | |
| 60% | | 9 | 10 | 19 | 25 | 16 | 79 | |
| 150인 | | | | | | | | |
| 반수 | 0 | 0 | 3 | 4 | 2 | 1 | 10 | |
| 아동수 | | | | | | | | |
| 100% | 0 | 0 | 25 | 63 | 41 | 21 | 150 | 반정원 9인 초과 |
| 85% | 0 | 0 | 21 | 54 | 35 | 18 | 128 | |
| 60% | 0 | 0 | 16 | 38 | 24 | 12 | 90 | |

2) 인력구성 및 지원수준

인력구성 및 지원 수준은 기본 요소만으로 한정하였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표 V-1-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인건비 운영 모형

| 구분 | 원장 | 교사 | 취사부 |
|-------|----------------|--|-------------------------------------|
| 호봉 | 15호봉 | 7호봉 | 5호봉 |
| 지원 비율 | - 인건비 지급액의 80% | - 영아반 인건비 지급액의 80% - 유아반 인건비 지급액의 30% | - 월지급액의 100% |
| 비고 | | - 유아반 교사 1인에 한해 월지급액 100% 지원 | - 평가인증통과 시 1인 지원 - 4대 보험료 미지급 |

원장과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30%를 지원하고, 취사부 1인에 한해 월지급액 100%를 지원받는다. 보육료는 정부 지원단가로 수납한다. 정부로부터 받는 추가 운영지원으로는 2012년 현재 5세 누리과정 지원비이며, 5세 아동 1인 당 평균 약 45,000원의 운영보조를 지원받는다.³³⁾

나. 수입과 지출 구조 추정

5세 누리과정 적용 현재를 적용 전과 3~4세로의 확대를 가정하고 수입과 지출 구조를 제시하였다.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012년을 기준으로 고정하였다. 정원 20인 어린이집의 기본 모형은 영아반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누리과정 지원금은 수입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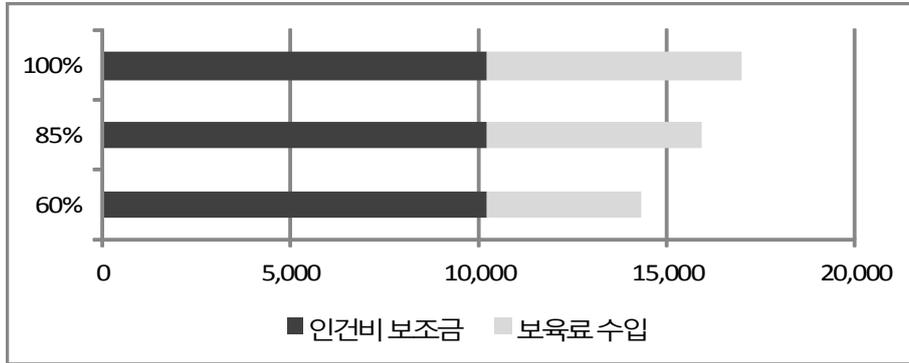
1) 20인: 정원충족률에 따른 차이: 2012

영아반 4개로 구성된 20인 정원의 소규모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별 수입과 지출구조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선 가정에서 살펴보았듯이, 20인 어린이집의 기본 모형은 영아반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5세 누리과정 지원금은 수입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V-1-4〉 20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지출 구조: 누리과정 미적용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
| 보육료수입 | 6,734 | 39.7 | 5,707 | 35.8 | 4,047 | 28.3 |
| 인건비 보조금 | 10,235 | 60.3 | 10,235 | 64.2 | 10,235 | 71.7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0 | 0.0 |
| 총액 | 16,969 | 100.0 | 15,942 | 100.0 | 14,282 | 100.0 |
| 지출 | | | | | | |
| 인건비 | 12,693 | 74.8 | 12,693 | 79.6 | 12,693 | 88.9 |
| 기타운영비 | 4,275 | 25.2 | 3,248 | 20.4 | 1,588 | 11.1 |
| 총액 | 16,969 | 100.0 | 15,942 | 100.0 | 14,282 | 100.0 |

33) 이 지원금은 시·군·구에 따라 차이가 있음.



[그림 V-1-1] 20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 구조: 누리과정 미적용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전체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0.3%이고 정원충족률이 85%이면 약 64.2%이며, 60%가 되면 71.7%로 증가한다.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74.8%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서 인건비가 고정될 경우 인건비 비중은 정원 충족률 85%시 79.6%이고 정원 충족률이 60%가 되면 88.9% 수준으로 높아져서 운영비는 월 159만원 정도만 남게 된다.

2) 27인

가) 정원충족률에 따른 차이: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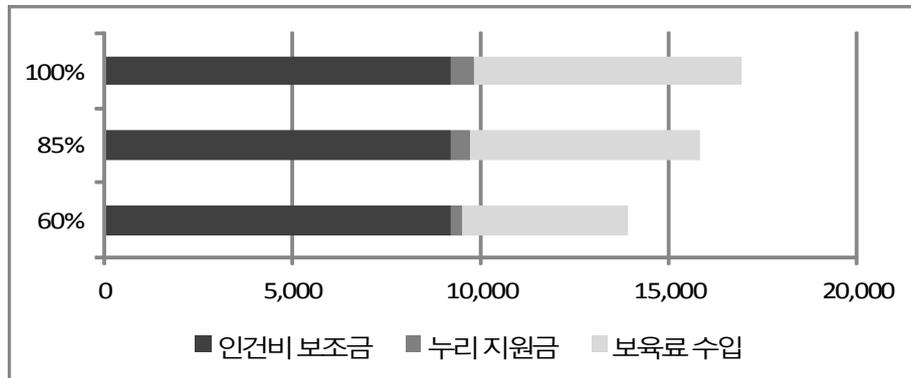
영아반 3개반과 3세아반 2개 등 4개반으로 구성된 27인 정원의 소규모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전체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6.4%이며 정원 충족률이 85%이면 약 60.1%이며 정원충족률이 60%가 되면 이 비율은 67.9%가 된다.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은 정원 대비 현원이 100%이면 77.7%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서 인건비가 고정될 경우 인건비 비중은 85%시 82.9%, 60% 시 93.6%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 경우에 운영비는 월 87만원 정도 남게 되어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다.

〈표 V-1-5〉 27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지출 구조: 누리과정 미적용 및 3~5세 누리과정 적용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보육료수입 | 7,133 | 43.6 | 6,106 | 39.9 | 4,352 | 32.1 |
| 인건비 보조금 | 9,210 | 56.4 | 9,210 | 60.1 | 9,210 | 67.9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0 | 0.0 |
| 총액 | 16,343 | 100.0 | 15,316 | 100.0 | 13,562 | 100.0 |
| 3~5세 누리 적용 | | | | | | |
| 보육료수입 | 7,133 | 42.1 | 6,106 | 38.6 | 4,352 | 31.4 |
| 인건비 보조금 | 9,210 | 54.4 | 9,210 | 58.2 | 9,210 | 66.4 |
| 누리 지원금 | 585 | 3.5 | 495 | 3.1 | 315 | 2.3 |
| 총액 | 16,928 | 100.0 | 15,811 | 100.0 | 13,877 | 100.0 |
| 지출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인건비 | 12,693 | 77.7 | 12,693 | 82.9 | 12,693 | 93.6 |
| 기타운영비 | 3,649 | 22.3 | 2,622 | 17.1 | 868 | 6.4 |
| 총액 | 16,343 | 100.0 | 15,316 | 100.0 | 13,562 | 100.0 |
| 3~5세 누리 적용 | | | | | | |
| 인건비 | 12,693 | 75.0 | 12,693 | 80.3 | 12,693 | 91.5 |
| 기타운영비 | 4,234 | 25.0 | 3,117 | 19.7 | 1,183 | 8.5 |
| 총액 | 16,928 | 100.0 | 15,811 | 100.0 | 13,877 | 100.0 |



〔그림 V-1-2〕 27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 구조: 3~5세 누리과정 적용

나) 3~5세 누리과정 적용과 정원충족률에 따른 차이

정원 27인 소규모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누리과정 도입시 수입과 지출구조를 살펴 보았다. 27인 어린이집은 5세아가 없는 모형이므로 유아 전체 누리과정 도입 시만을 고려하였다.

정원충족률이 100%일 때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기본적인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누리과정 미 적용 시 56.4%인데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54.4%로 감소한다. 3~5세 누리 과정 지원금은 기본 수입의 3.5%를 차지한다.

지출 측면을 보면 정원충족률 100%시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기본적인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누리과정 보조금 미지원 시 77.7%인데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75.0%로 다소 감소한다.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 기본 수입 대비 인건비 보조금의 비중은 증가하는데, 정원충족률 60%가 되면 유아 누리과정이 도입시 66.4%가 된다. 기본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역시 정원충족률이 감소하면서 모두 증가한다. 유아 누리과정이 도입 시에도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 이 비율은 각각 80.3%, 91.5%로 증가한다.

3) 39인

가) 정원충족률에 따른 차이: 2012년

영아반 4개반과 3세아반 2개반으로 구성된 39인 정원의 소규모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전체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0.5%이다. 정원 충족률이 85%로 줄어들면 전체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5.0%로 증가하고, 60%가 되면 약 62.8%로 증가한다.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은 정원충족률이 100%이면 68.6%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서 인건비가 고정될 경우 인건비 비중은 85%시 74.8%이고 정원 충족률이 60%가 되면 85.4%로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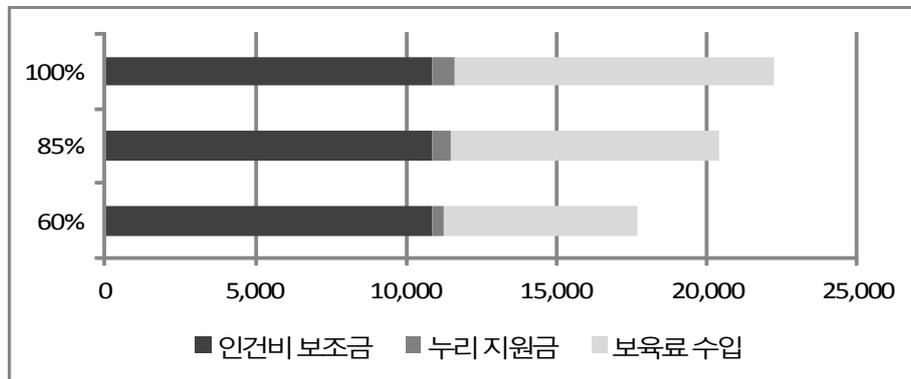
나) 3~5세 누리과정 적용과 정원충족률에 따른 차이

정원 39인 소규모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누리과정 도입시 수입과 지출구조를 살펴 보았다. 27인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5세아가 없는 모형이므로 유아 전체 누리과정 도입 시만을 고려하였다.

〈표 V-1-6〉 3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총족률별 수입·지출 구조: 누리과정 미적용 및 3-5세 누리과정 적용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보육료수입 | 10,636 | 49.5 | 8,868 | 45.0 | 6,420 | 37.2 |
| 인건비 보조금 | 10,849 | 50.5 | 10,849 | 55.0 | 10,849 | 62.8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0 | 0.0 |
| 총액 | 21,485 | 100.0 | 19,717 | 100.0 | 17,269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10,636 | 47.8 | 8,868 | 43.5 | 6,420 | 36.3 |
| 인건비 보조금 | 10,849 | 48.8 | 10,849 | 53.2 | 10,849 | 61.4 |
| 누리 지원금 | 765 | 3.4 | 675 | 3.3 | 405 | 2.3 |
| 총액 | 22,250 | 100.0 | 20,392 | 100.0 | 17,674 | 100.0 |
| 지출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인건비 | 14,743 | 68.6 | 14,743 | 74.8 | 14,743 | 85.4 |
| 기타운영비 | 6,742 | 31.4 | 4,974 | 25.2 | 2,526 | 14.6 |
| 총액 | 21,485 | 100.0 | 19,717 | 100.0 | 17,269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인건비 | 14,743 | 66.3 | 14,743 | 72.3 | 14,743 | 83.4 |
| 기타운영비 | 7,507 | 33.7 | 5,649 | 27.7 | 2,931 | 16.6 |
| 총액 | 22,250 | 100.0 | 20,392 | 100.0 | 17,674 | 100.0 |



[그림 V-1-3] 3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총족률별 수입 구조: 3~5세 누리과정 적용

정원충족률이 100%일 때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기본적인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누리과정 미 적용 시 50.5%인데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48.8%로 감소한다. 3~5세 누리 과정 지원금은 기본 수입의 3.4%를 차지한다. 지출 측면을 보면 정원충족률 100%시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기본적인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누리과정 보조금 미 적용 시 68.67%인데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66.3%로 다소 감소한다.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 기본 수입 대비 인건비 보조금의 비중은 증가하는데, 정원충족률 60%가 되면 유아 누리과정이 도입시 61.4%가 된다. 기본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역시 정원충족률이 감소하면서 모두 증가한다. 유아 누리과정이 도입 시에도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 이 비율은 각각 72.3%, 83.4%로 증가한다.

4) 49인

가) 정원충족률에 따른 차이: 2012년

0세아반과 5세아반 없이 1~4세아반 5개로 구성된 49인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이라는 기본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46.5%이고 정원충족률이 85%이면 50.5%이며, 60%가 되면 58.9%로 증가한다.

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 대비 인건비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69.8%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서 인건비가 고정될 경우 인건비 비중은 85%시 75.7%이고 정원 충족률이 60%가 되면 88.4% 수준으로 높아진다.

나) 3~5세 누리과정 적용과 정원충족률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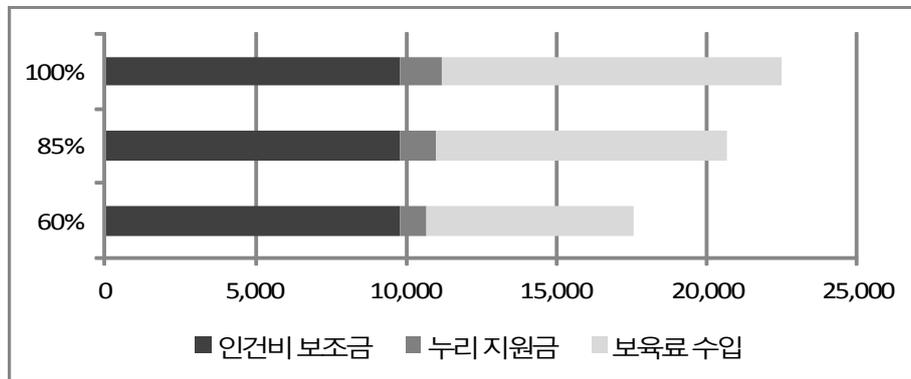
정원 4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누리과정 도입시 수입과 지출구조를 살펴보았다. 이 모형 어린이집도 5세아반이 없는 모형이므로 유아 전체 누리과정 도입 시만을 고려하였다.

정원충족률이 100%일 때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기본적인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누리과정 미 적용 시 46.5%인데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43.7%로 감소한다. 3~5세 누리 과정 지원금은 기본 수입의 6.0%를 차지한다.

〈표 V-1-7〉 4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지출 구조: 누리과정 미적용 및 3~5세 누리과정 적용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보육료수입 | 11,309 | 53.5 | 9,642 | 49.5 | 6,852 | 41.1 |
| 인건비 보조금 | 9,825 | 46.5 | 9,825 | 50.5 | 9,825 | 58.9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0 | 0.0 |
| 총액 | 21,134 | 100.0 | 19,467 | 100.0 | 16,677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11,309 | 50.3 | 9,642 | 46.7 | 6,852 | 39.1 |
| 인건비 보조금 | 9,825 | 43.7 | 9,825 | 47.6 | 9,825 | 56.0 |
| 누리 지원금 | 1,350 | 6.0 | 1,170 | 5.7 | 855 | 4.9 |
| 총액 | 22,484 | 100.0 | 20,637 | 100.0 | 17,532 | 100.0 |
| 지출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인건비 | 14,743 | 69.8 | 14,743 | 75.7 | 14,743 | 88.4 |
| 기타운영비 | 6,390 | 30.2 | 4,723 | 24.3 | 1,933 | 11.6 |
| 총액 | 21,134 | 100.0 | 19,467 | 100.0 | 16,677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인건비 | 14,743 | 65.6 | 14,743 | 71.4 | 14,743 | 84.1 |
| 기타운영비 | 7,740 | 34.4 | 5,893 | 28.6 | 2,788 | 15.9 |
| 총액 | 22,484 | 100.0 | 20,637 | 100.0 | 17,532 | 100.0 |



[그림 V-1-4] 4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 구조: 3~5세 누리과정 적용

지출 측면을 보면 정원충족률 100%시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기본적인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누리과정 보조금 미 적용 시 69.8%인데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65.6%로 다소 감소한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비중은 기본 수입 대비 6% 정도이다.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 기본 수입 대비 인건비 보조금의 비중은 증가하는데, 유아 누리과정이 도입시 정원충족률 85%는 47.6%, 60%는 56.0%가 된다. 누리과정 지원금 비중은 정원 충족률 60%시 4.9%로 낮아진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역시 정원충족률이 감소하면서 모두 증가한다. 유아 누리과정이 도입 시에도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 이 비율은 각각 71.4%, 84.1%로 각각 증가한다.

5) 79인

가) 정원충족률에 따른 차이: 2012년

0세아반은 없고 1~5세아반 7개로 구성된 정원 79인 시설은 보육료와 정부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39.0%이고 정원충족률이 85%이면 43.1%이며, 60%가 되면 51.9%로 증가한다. 1개 반인 5세 누리과정 지원금은 정원충족률에 따라 기본 수입의 2.9%~2.3% 정도가 된다.

보육료와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60.9%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서 인건비가 고정될 경우 인건비 비중은 85%시 67.2%이고, 정원 충족률이 60%가 되면 80.9% 수준으로 높아진다.

나) 3~5세 누리과정 적용 정원충족률에 따른 차이

정원 7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누리과정 미도입 시와 3~5세 누리과정 적용시 수입과 지출구조를 살펴보았다.

먼저 5세 누리과정 미도입 시 정원충족률이 100%일 때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기본적인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0.2%인데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37.1%로 감소한다. 3~5세 누리과정 지원금은 기본 수입의 7.6%를 차지한다.

지출 측면을 보면 정원충족률 100%시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기본적인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누리과정 보조금 미 적용 시 62.7%인데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57.9%로 다소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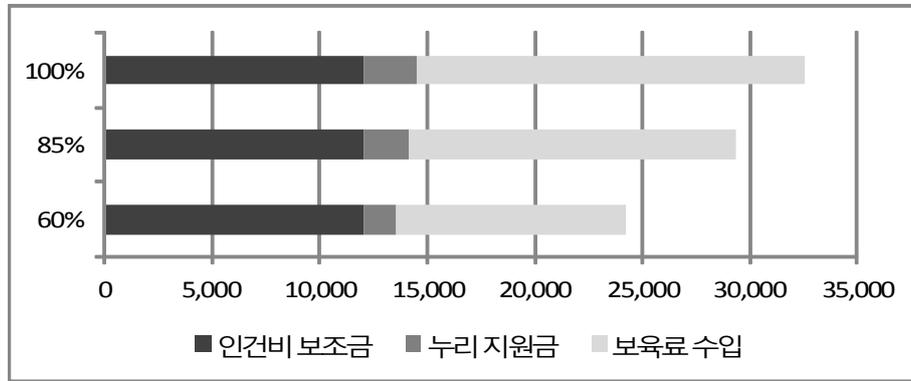
〈표 V-1-8〉 7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지출 구조: 누리과정 미적용
및 적용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보육료수입 | 17,969 | 59.8 | 15,178 | 55.7 | 10,667 | 46.9 |
| 인건비 보조금 | 12,079 | 40.2 | 12,079 | 44.3 | 12,079 | 53.1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0 | 0.0 |
| 총액 | 30,048 | 100.0 | 27,257 | 100.0 | 22,746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17,969 | 58.1 | 15,178 | 54.2 | 10,667 | 45.8 |
| 인건비 보조금 | 12,079 | 39.0 | 12,079 | 43.1 | 12,079 | 51.9 |
| 누리 지원금 | 900 | 2.9 | 765 | 2.7 | 540 | 2.3 |
| 총액 | 30,948 | 100.0 | 28,022 | 100.0 | 23,286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17,969 | 55.2 | 15,178 | 51.7 | 10,667 | 44.0 |
| 인건비 보조금 | 12,079 | 37.1 | 12,079 | 41.1 | 12,079 | 49.9 |
| 누리 지원금 | 2,475 | 7.6 | 2,115 | 7.2 | 1,485 | 6.1 |
| 총액 | 32,523 | 100.0 | 29,372 | 100.0 | 24,231 | 100.0 |
| 지출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인건비 | 18,843 | 62.7 | 18,843 | 69.1 | 18,843 | 82.8 |
| 기타운영비 | 11,206 | 37.3 | 8,415 | 30.9 | 3,904 | 17.2 |
| 총액 | 30,048 | 100.0 | 27,257 | 100.0 | 22,746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
| 인건비 | 18,843 | 60.9 | 18,843 | 67.2 | 18,843 | 80.9 |
| 기타운영비 | 12,106 | 39.1 | 9,180 | 32.8 | 4,444 | 19.1 |
| 총액 | 30,948 | 100.0 | 28,022 | 100.0 | 23,286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인건비 | 18,843 | 57.9 | 18,843 | 64.2 | 18,843 | 77.8 |
| 기타운영비 | 13,681 | 42.1 | 10,530 | 35.8 | 5,389 | 22.2 |
| 총액 | 32,523 | 100.0 | 29,372 | 100.0 | 24,231 | 100.0 |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 기본 수입 대비 인건비 보조금의 비중은 증가하는데, 유아 누리과정이 도입시 정원충족률 85%는 44.3%, 53.1%가 된다. 누리과정 지원금 비중은 정원 충족률 100% 7.6%에서 60%시 6.1%로 낮아진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역시 정원충족률이 감소하면서 모두 증가한다. 유아 누리과정이 도입 시에도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 이 비율은 각각 69.1%, 82.8%로 각각 증가한다.



[그림 V-1-5] 7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 구조: 3~5세 누리과정 적용

6) 99인

가) 정원충족률에 따른 차이: 2012년

정원 99인 시설은 0세아반은 없고 1~5세아반 8개로 구성된 어린이집으로, 기본적인 수입인 보육료와 정부 인건비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35.5%이고 정원충족률이 85%이면 39.3%이며, 60%가 되면 47.7%로 증가한다. 5세아반이 1반인데, 5세 누리과정 지원금은 정원 충족률에 따라서 기본 수입의 2.6%~ 2.0%이다.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62.6%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서 인건비가 고정될 경우 인건비 비중은 85%시 69.3%이고, 정원 충족률이 60%가 되면 78.6% 수준으로 높아진다.

나) 3~5세 누리과정 적용과 정원충족률에 따른 차이

정원 7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누리과정 도입시 수입과 지출구조를 살펴보았다. 이 모형은 5세아반이 있으므로 5세 누리과정 및 3~5세 누리과정 도입 시 모두를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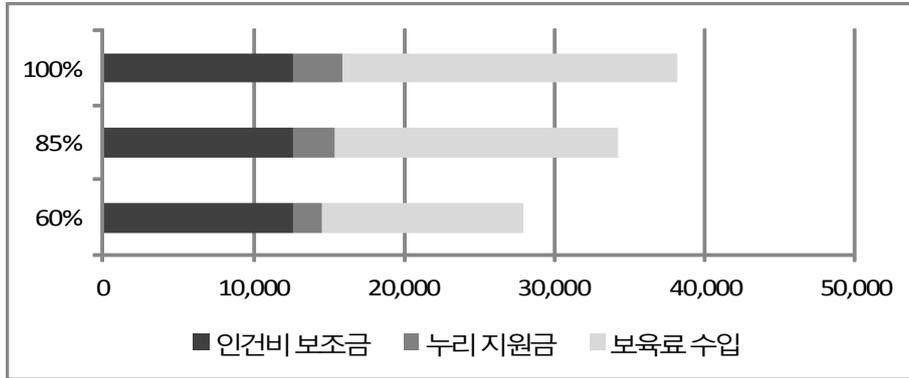
정원충족률이 100%일 때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기본적인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누리과정 미 적용 시 36.5%인데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33.3%로 감소한다. 3~5세 누리 과정 지원금은 기본 수입의 8.6%를 차지하게 된다.

〈표 V-1-9〉 9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누리과정 미적용 및 적용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보육료수입 | 22,131 | 63.5 | 18,810 | 59.7 | 13,359 | 51.3 |
| 인건비 보조금 | 12,694 | 36.5 | 12,694 | 40.3 | 12,694 | 48.7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0 | 0.0 |
| 총액 | 34,825 | 100.0 | 31,504 | 100.0 | 26,053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22,131 | 61.9 | 18,810 | 58.2 | 13,359 | 50.2 |
| 인건비 보조금 | 12,694 | 35.5 | 12,694 | 39.3 | 12,694 | 47.7 |
| 누리 지원금 | 945 | 2.6 | 810 | 2.5 | 540 | 2.0 |
| 총액 | 35,770 | 100.0 | 32,314 | 100.0 | 26,593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22,131 | 58.1 | 18,810 | 54.8 | 13,359 | 47.8 |
| 인건비 보조금 | 12,694 | 33.3 | 12,694 | 37.0 | 12,694 | 45.4 |
| 누리 지원금 | 3,285 | 8.6 | 2,790 | 8.1 | 1,890 | 6.8 |
| 총액 | 38,110 | 100.0 | 34,294 | 100.0 | 27,943 | 100.0 |
| 지출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인건비 | 22,391 | 64.3 | 22,391 | 71.1 | 20,893 | 80.2 |
| 기타운영비 | 12,434 | 35.7 | 9,113 | 28.9 | 5,161 | 19.8 |
| 총액 | 34,825 | 100.0 | 31,504 | 100.0 | 26,053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
| 인건비 | 22,391 | 62.6 | 22,391 | 69.3 | 20,893 | 78.6 |
| 기타운영비 | 13,379 | 37.4 | 9,923 | 30.7 | 5,701 | 21.4 |
| 총액 | 35,770 | 100.0 | 32,314 | 100.0 | 26,593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인건비 | 22,391 | 58.8 | 22,391 | 65.3 | 20,893 | 74.8 |
| 기타운영비 | 15,719 | 41.2 | 11,903 | 34.7 | 7,051 | 25.2 |
| 총액 | 38,110 | 100.0 | 34,294 | 100.0 | 27,943 | 100.0 |



[그림 V-1-6] 9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 구조: 3~5세 누리과정 적용

지출 측면을 보면 정원충족률 100%시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기본적인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누리과정 보조금 미 적용 시 64.3%인데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58.8%로 다소 감소한다.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 기본 수입 대비 인건비 보조금의 비중은 증가하는데, 유아 누리과정이 도입시 정원충족률 85%는 37.0%, 60%는 45.4%가 된다. 누리과정 지원금 비중은 정원충족률 60%시 6.8%로 낮아진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역시 정원충족률이 감소하면서 모두 증가한다. 유아 누리과정이 도입 시에도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 이 비율은 각각 65.3%, 74.8%로 각각 증가한다.

7) 131인

가) 정원충족률에 따른 차이: 2012년

정원 131인 시설은 0세아반은 없고 1~5세아반 10개로 구성된 어린이집이다. 이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정부 인건비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33.5%이고 정원충족률이 85%이면 37.2%이며, 60%가 되면 45.3%로 증가한다. 5세아반이 1반인데, 5세 누리과정 지원금은 기본 수입의 2%를 조금 넘는다.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59.4%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서 인건비가 고정될 경우 인건비 비중은 85%시 66.0%이고, 정원 충족률이 60%가 되면 75.7% 수준으로 높아진다.

〈표 V-1-10〉 131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총족률별 수입·지출 구조: 누리과정
미적용 및 적용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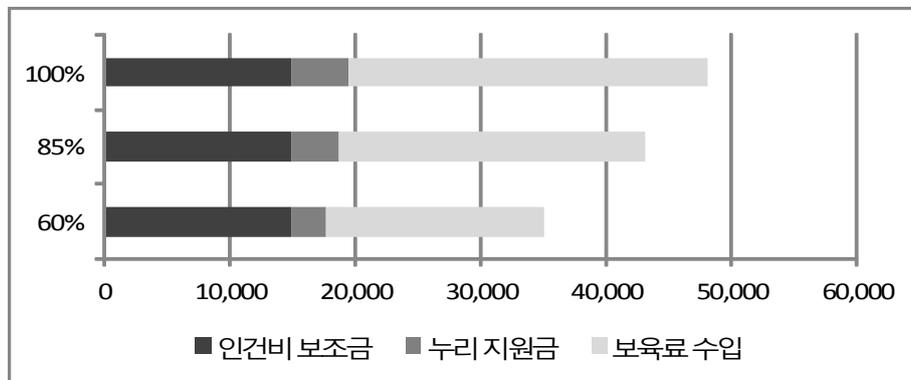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보육료수입 | 28,667 | 65.7 | 24,377 | 62.0 | 17,351 | 53.7 |
| 인건비 보조금 | 14,949 | 34.3 | 14,949 | 38.0 | 14,949 | 46.3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0 | 0.0 |
| 총액 | 43,616 | 100.0 | 39,326 | 100.0 | 32,300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28,667 | 64.3 | 24,377 | 60.7 | 17,351 | 52.5 |
| 인건비 보조금 | 14,949 | 33.5 | 14,949 | 37.2 | 14,949 | 45.3 |
| 누리 지원금 | 990 | 2.2 | 810 | 2.0 | 720 | 2.2 |
| 총액 | 44,606 | 100.0 | 40,136 | 100.0 | 33,020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28,667 | 59.6 | 24,377 | 56.6 | 17,351 | 49.6 |
| 인건비 보조금 | 14,949 | 31.1 | 14,949 | 34.7 | 14,949 | 42.7 |
| 누리 지원금 | 4,500 | 9.4 | 3,780 | 8.8 | 2,700 | 7.7 |
| 총액 | 48,116 | 100.0 | 43,106 | 100.0 | 35,000 | 100.0 |
| 지출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인건비 | 26,490 | 60.7 | 26,490 | 67.4 | 24,992 | 77.4 |
| 기타운영비 | 17,126 | 39.3 | 12,836 | 32.6 | 7,308 | 22.6 |
| 총액 | 43,616 | 100.0 | 39,326 | 100.0 | 32,300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
| 인건비 | 26,490 | 59.4 | 26,490 | 66.0 | 24,992 | 75.7 |
| 기타운영비 | 18,116 | 40.6 | 13,646 | 34.0 | 8,028 | 24.3 |
| 총액 | 44,606 | 100.0 | 40,136 | 100.0 | 33,020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인건비 | 26,490 | 55.1 | 26,490 | 61.5 | 24,992 | 71.4 |
| 기타운영비 | 21,626 | 44.9 | 16,616 | 38.5 | 10,008 | 28.6 |
| 총액 | 48,116 | 100.0 | 43,106 | 100.0 | 35,000 | 100.0 |

나) 3~5세 누리과정 적용 정원총족률에 따른 차이

정원 79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누리과정 미도입 시와 3~5세 누리과정 도입시 수입과 지출구조를 살펴보았다.

정원충족률이 100%일 때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기본적인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누리과정 미 적용 시 34.3%인데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31.1%로 감소한다. 3~5세 누리 과정 지원금은 기본 수입의 9.4%를 차지한다. 지출 측면을 보면 정원충족률 100%시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기본적인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누리과정 보조금 미 적용 시 60.7%인데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55.1%로 다소 감소한다.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 기본 수입 대비 인건비 보조금의 비중은 증가하는데, 유아 누리과정이 도입시 정원충족률 85%는 34.7%, 60%는 42.7%가 된다. 누리과정 지원금 비중은 정원충족률 60%시 4.9%로 낮아진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역시 정원충족률이 감소하면서 모두 증가한다. 유아 누리과정이 도입 시에도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 이 비율은 각각 61.5%, 71.4%로 각각 증가한다.



[그림 V-1-7] 131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 구조: 3~5세 누리과정 적용

8) 150인

가) 정원충족률에 따른 차이: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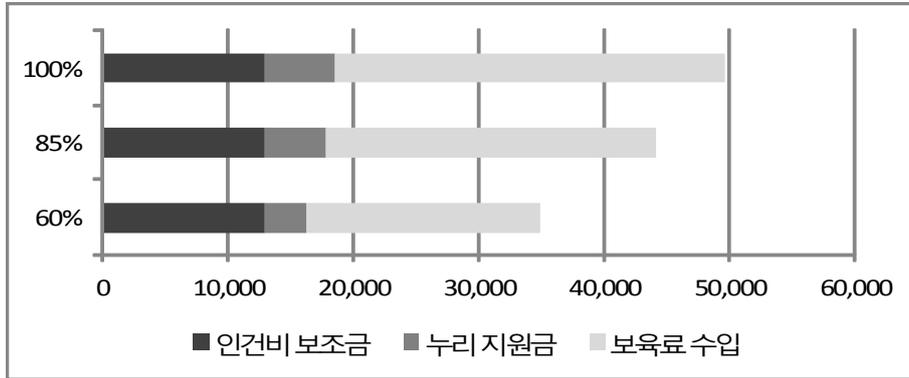
정원 150인 시설도 131인 시설과 마찬가지로 0세아반은 없고 1~5세아반 10개로 구성된 어린이집이다. 보육료와 정부 인건비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28.8%이고 정원충족률이 85%이면 32.1%이며, 60%가 되면 40.1%로 증가한다. 5세아반이 1반인데, 5세 누리과정 지

원금은 기본 수입의 2.1%~1.7%에 불과하다.

〈표 V-1-11〉 150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총족률별 수입·지출 구조: 누리과정 미 적용 및 적용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보육료수입 | 31,018 | 70.6 | 26,439 | 67.2 | 18,710 | 59.2 |
| 인건비 보조금 | 12,899 | 29.4 | 12,899 | 32.8 | 12,899 | 40.8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0 | 0.0 |
| 총액 | 43,917 | 100.0 | 39,338 | 100.0 | 31,609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31,018 | 69.1 | 26,439 | 65.9 | 18,710 | 58.2 |
| 인건비 보조금 | 12,899 | 28.8 | 12,899 | 32.1 | 12,899 | 40.1 |
| 누리 지원금 | 945 | 2.1 | 810 | 2.0 | 540 | 1.7 |
| 총액 | 44,862 | 100.0 | 40,148 | 100.0 | 32,149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31,018 | 62.6 | 26,439 | 59.9 | 18,710 | 53.6 |
| 인건비 보조금 | 12,899 | 26.0 | 12,899 | 29.2 | 12,899 | 36.9 |
| 누리 지원금 | 5,625 | 11.4 | 4,815 | 10.9 | 3,330 | 9.5 |
| 총액 | 49,542 | 100.0 | 44,153 | 100.0 | 34,939 | 100.0 |
| 지출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인건비 | 26,490 | 60.3 | 26,490 | 67.3 | 26,490 | 83.8 |
| 기타운영비 | 17,427 | 39.7 | 12,848 | 32.7 | 5,119 | 16.2 |
| 총액 | 43,917 | 100.0 | 39,338 | 100.0 | 31,609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
| 인건비 | 26,490 | 59.0 | 26,490 | 66.0 | 26,490 | 82.4 |
| 기타운영비 | 18,372 | 41.0 | 13,658 | 34.0 | 5,659 | 17.6 |
| 총액 | 44,862 | 100.0 | 40,148 | 100.0 | 32,149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인건비 | 26,490 | 53.5 | 26,490 | 60.0 | 26,490 | 75.8 |
| 기타운영비 | 23,052 | 46.5 | 17,663 | 40.0 | 8,449 | 24.2 |
| 총액 | 49,542 | 100.0 | 44,153 | 100.0 | 34,939 | 100.0 |



[그림 V-1-8] 150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충족률별 수입 구조: 3~5세 누리과정 적용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59.0%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서 인건비가 고정될 경우 인건비 비중은 85%시 66.0%이고, 정원 충족률이 60%가 되면 82.4% 수준으로 높아진다.

나) 3~5세 누리과정 적용 정원충족률에 따른 차이

정원 150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은 5세아반이 있으므로 누리과정 미도입시와 3~5세 도입시 수입과 지출구조를 살펴보았다.

정원충족률이 100%일 때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기본적인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누리과정 미 적용 시 29.4%인데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26.0%로 감소한다. 3~5세 누리 과정 지원금은 기본 수입의 11.0%를 차지한다. 지출 측면을 보면 정원충족률 100%시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기본적인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누리과정 보조금 미 적용 시 60.3%인데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53.5%로 다소 감소한다.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 기본 수입 대비 인건비 보조금의 비중은 증가하는데, 유아 누리과정이 도입시 정원충족률 85%는 29.2%, 60%는 36.9%가 된다. 누리과정 지원금 비중은 정원 충족률 60%시 9.5%로 낮아진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역시 정원충족률이 감소하면서 모두 증가한다. 유아 누리과정이 도입 시에도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 이 비율은 각각 60.0%, 75.8%로 각각 증가한다.

다. 누리과정 지원금 규모

<표 >는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 충족률별 누리지원금 규모의 변화를 나타낸다. 영아 중심인 20인 시설은 제외하였다.

27인과 39인 어린이집도 5세아반은 없으므로 누리과정이 3, 4세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수입 증가만 고려하였다. 이를 보면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대비 2% 정도 증가하고, 증가하는 수입의 인건비 지원금 대비 비율은 3~4% 정도이고 인건비의 30%를 지원하는 유아반 인건비 대비 비율은 정원충족률이 100%이면 27인 95%, 39인 124% 수준이다. 정원충족률이 낮아지면 이 비율은 낮아지는데 60%에서는 약 반 정도가 된다.

5세아 반이 없는 49인 어린이집은 3, 4세 누리가 도입되면 수입은 6% 정도 증가하는데 이는 인건비 지원금의 13.7%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는 유아반 인건비 대비 110% 정도가 되는 금액이다. 이는 해당 유아반 인건비 대비 110 정도가 되는 금액이다.

79인 어린이집은 5세 누리 지원으로 수입이 3% 증가하였고 3,4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8%가 증가하는데, 이 증가액수는 인건비 지원 대비 비율로 보면 각각 7.45%, 20.5%이다. 이는 해당 유아반 인건비 대비 146%, 134% 정도가 되는 금액이다.

99인 어린이집은 5세 누리 지원으로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 수입 대비 약 3% 증가하였고 3,4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9%가 증가하는데, 이 증가액수는 인건비 지원 대비비율로 보면 각각 7.44%, 25.9%이다. 이는 해당 유아반 인건비 대비 154%, 134% 정도가 되는 금액이다.

131인 어린이집은 5세 누리 지원으로 수입 약 2% 증가하였고 3,4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10%가 증가하는데, 이 증가액수는 인건비 지원 대비비율로 보면 각각 6.6%, 30.1%이다. 이는 해당 유아반 인건비 대비 161%, 146%이다.

150인 어린이집은 5세 누리 지원으로 수입 약 2% 증가하였고 3,4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12.8%가 증가하는데, 이 증가액수는 인건비 지원 대비비율로 보면 각각 7.3%, 43.6%이다. 이는 해당 유아반 인건비 대비 154%, 130% 정도가 되는 금액이다.

정원 충족률이 85%일 경우에도 5세 누리과정으로 인한 수입 증가는 대체로 2~3%이고, 3,4세로 확대되면 규모에 따라서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여 6~12%에 분포한다. 증가하는 수입의 인건비 지원금 대비 비율은 5세 누리과정 도입시는 5.4~6.4%에 분포하며, 3,4세로 확대되면 규모에 따라서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여 12~37%에 분포한다.

정원 충족률이 60%일 경우에도 5세 누리과정으로 인한 수입 증가는 대체로 2% 이고, 3,4세로 확대되면 규모에 따라서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여 6~11% 사이에 분포한다. 증가하는 수입의 인건비 지원금 대비 비율은 5세 누리과정 도입 시는 4~5%에 분포하며, 3,4세로 확대되면 규모에 따라서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여 8.7~25.8%에 분포한다.

〈표 V-1-1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누리지원금 규모

단위: %

| 구분 | 총수입 대비 | | 인건비 보조금 대비 | | 5세반 인건비 보조금 대비 5세 누리 지원금 | 유아반 인건비 보조금 대비 3-5세 누리 지원금 |
|------|--------|------------|--------------|----------------|--------------------------------|-------------------------------------|
| | 5세 누리 | 3-5세 누리 | 5세 누리 지원금 | 3-5세 누리 지원금 | | |
| 27인 | | | | | | |
| 100% | - | 103.58 | - | 6.35 | - | 95.13 |
| 85% | - | 103.23 | - | 5.37 | - | 80.50 |
| 60% | - | 102.32 | - | 3.42 | - | 51.23 |
| 39인 | | | | | | |
| 100% | - | 103.56 | - | 7.05 | - | 124.40 |
| 85% | - | 103.42 | - | 6.22 | - | 109.77 |
| 60% | - | 102.35 | - | 3.73 | - | 65.86 |
| 49인 | | | | | | |
| 100% | - | 106.39 | - | 13.74 | - | 109.77 |
| 85% | - | 106.01 | - | 11.91 | - | 95.13 |
| 60% | - | 105.13 | - | 8.70 | - | 69.52 |
| 79인 | | | | | | |
| 100% | 103.00 | 108.24 | 7.45 | 20.49 | 146.36 | 134.16 |
| 85% | 102.81 | 107.76 | 6.33 | 17.51 | 124.40 | 114.65 |
| 60% | 102.37 | 106.53 | 4.47 | 12.29 | 87.81 | 80.50 |
| 99인 | | | | | | |
| 100% | 102.71 | 109.43 | 7.44 | 25.88 | 153.68 | 133.55 |
| 85% | 102.57 | 108.86 | 6.38 | 21.98 | 131.72 | 113.43 |
| 60% | 102.07 | 107.25 | 4.25 | 14.89 | 87.81 | 76.84 |
| 131인 | | | | | | |
| 100% | 102.27 | 110.32 | 6.62 | 30.10 | 160.99 | 146.36 |
| 85% | 102.06 | 109.61 | 5.42 | 25.29 | 131.72 | 122.94 |
| 60% | 102.23 | 108.36 | 4.82 | 18.06 | 117.09 | 87.81 |
| 150인 | | | | | | |
| 100% | 102.15 | 112.81 | 7.33 | 43.61 | 153.68 | 130.68 |
| 85% | 102.06 | 112.24 | 6.28 | 37.33 | 131.72 | 111.86 |
| 60% | 101.71 | 110.53 | 4.19 | 25.82 | 87.81 | 77.36 |

2. 민간·가정어린이집 모형별 수입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모형별로 수입 구조만을 산출하였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또 산정한다고 하여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가. 기본가정

1) 반별 아동 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반별 아동 수는 국공립·법인의 기본가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 인력구성 및 지원수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다. 보육료는 지방정부 고시로 상한선을 두며, 이에 따라 차액보육료를 수납할 수 있다. 영아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으며, 5세누리 지원금은 5세 아동 수에 따라 받는다. 단, 취사부 운영에 있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소규모 모형에서는 현원 20인 이하의 시설은 취사부를 두지 않는 조건을 가정하였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건비 운영에 대한 모형 가정은 <표 V-2-1>과 같다.

〈표 V-2-1〉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건비 운영 모형

| 단위: 호봉 | | | |
|--------|------|-----|-----|
| 구분 | 원장 | 교사 | 취사부 |
| 호봉 | 10호봉 | 3호봉 | 2호봉 |
| 지원 비율 | 미지원 | 미지원 | 미지원 |
| 지원 기준 | - | - | - |

나. 수입 구조 추정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별 수입 구조를 추정해 보았다. 지출은 인건비 등을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서 모형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1) 20인: 정원충족률에 따른 차이: 2012년

앞서 가정에서 살펴보았듯이,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기본 모형은 영아반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누리과정 지원금은 수입구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건비 보조금 역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전체 수입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정부 지원단가와 보육료 상한선이 동일하므로 차액보육료 수입도 없다.

기본보육료외 보육료 수입만 보면 비율이 대체로 38:62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2〉 20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
| 보육료수입 | 6,734 | 63.7 | 5,707 | 62.1 | 4,047 | 61.4 |
| 기본보육료 | 3,841 | 36.3 | 3,480 | 37.9 | 2,541 | 38.6 |
| 총액 | 10,575 | 100.0 | 9,187 | 100.0 | 6,588 | 100.0 |

주: 인건비 보조금 없음

2) 27인

27인 이하 어린이집의 기본 모형은 영아반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3세아반이 있으므로 3~5세 확대시 누리과정 지원금이 발생한다. 인건비 보조금은 전체 수입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유아 지원단가와 보육료 상한선 차이로 인한 차액보육료 수입은 발생한다.

3~5세 누리과정 지원 시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체수입의 4.7~5.3%를 차지한다. 정원 충족률이 100%이고 3,4세 누리가 도입되면 수입의 약 5.3%를 차지하고, 정원 충족률이 낮아져도 차이는 크지 않다. 금액으로 보면 정원 100% 충족 시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약 60만원이 증가한다

〈표 V-2-3〉 27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미적용 | | | | | | |
| 보육료수입 | 7,133 | 68.5 | 6,106 | 67.9 | 4,352 | 67.6 |
| 차액보육료 | 702 | 6.7 | 594 | 6.6 | 378 | 5.9 |
| 기본보육료 | 2,584 | 24.8 | 2,295 | 25.5 | 1,704 | 26.5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0 | 0.0 |
| 총액 | 10,419 | 100.0 | 8,995 | 100.0 | 6,434 | 100.0 |
| 3~5세 적용 | | | | | | |
| 보육료수입 | 7,133 | 64.8 | 6,106 | 64.3 | 4,352 | 64.5 |
| 차액보육료 | 702 | 6.4 | 594 | 6.3 | 378 | 5.6 |
| 기본보육료 | 2,584 | 23.5 | 2,295 | 24.2 | 1,704 | 25.2 |
| 누리 지원금 | 585 | 5.3 | 495 | 5.2 | 315 | 4.7 |
| 총액 | 11,004 | 100.0 | 9,490 | 100.0 | 6,749 | 100.0 |

주: 인건비 보조금 없음

3) 39인

39인 이하 어린이집 모형에는 5세반이 없으므로 5세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전체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5세 누리과정 지원 시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체수입의 4.1~5.0%를 차지한다.

정원 충족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00%일 경우에 3, 4세 누리과정이 도입 되면 수입의 4.8%를 차지한다. 금액으로 보면 정원 100% 충족 시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약 77만원이 증가한다.

〈표 V-2-4〉 39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
| 보육료수입 | 10,636 | 70.1 | 8,868 | 69.4 | 6,420 | 68.1 |
| 차액보육료 | 918 | 6.0 | 810 | 6.3 | 486 | 5.2 |
| 기본보육료 | 3,628 | 23.9 | 3,093 | 24.2 | 2,515 | 26.7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0 | 0.0 |
| 총액 | 15,182 | 100.0 | 12,771 | 100.0 | 9,421 | 100.0 |

(표 계속)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10,636 | 66.7 | 8,868 | 66.0 | 6,420 | 65.3 |
| 차액보육료 | 918 | 5.8 | 810 | 6.0 | 486 | 4.9 |
| 기본보육료 | 3,628 | 22.8 | 3,093 | 23.0 | 2,515 | 25.6 |
| 누리 지원금 | 765 | 4.8 | 675 | 5.0 | 405 | 4.1 |
| 총액 | 15,947 | 100.0 | 13,446 | 100.0 | 9,826 | 100.0 |

주: 인건비 보조금 없음

4) 49인

정원 49인 이하 어린이집 모형에는 5세반이 없으므로 5세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전체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5세 누리과정 지원 시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체수입의 약 8% 정도를 차지한다.

누리과정으로 증가하는 수입 금액은 정원 100% 충족 시 3~5세 누리과정이 도입 되면 약 130만원이 증가한다.

〈표 V-2-5〉 49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
| 보육료수입 | 11,309 | 72.2 | 9,642 | 72.2 | 6,852 | 72.2 |
| 차액보육료 | 1,875 | 12.0 | 1,629 | 12.2 | 1,191 | 12.6 |
| 기본보육료 | 2,480 | 15.8 | 2,076 | 15.6 | 1,442 | 15.2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0 | 0.0 |
| 총액 | 15,664 | 100.0 | 13,347 | 100.0 | 9,485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11,309 | 66.5 | 9,642 | 66.4 | 6,852 | 66.3 |
| 차액보육료 | 1,875 | 11.0 | 1,629 | 11.2 | 1,191 | 11.5 |
| 기본보육료 | 2,480 | 14.6 | 2,076 | 14.3 | 1,442 | 13.9 |
| 누리 지원금 | 1,350 | 7.9 | 1,170 | 8.1 | 855 | 8.3 |
| 총액 | 17,014 | 100.0 | 14,517 | 100.0 | 10,340 | 100.0 |

5) 79인

정원 79인 이하 어린이집 모형에는 5세반이 없으므로 5세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등 지원금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 수준이고, 3~5세 누리과정 지원 시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체수입의 9.2% 정도를 차지한다.

증가하는 금액을 보면 정원 100% 충족시 5세 누리과정 시에는 약 90만원이고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약 250만원이 증가한다.

〈표 V-2-6〉 79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보육료수입 | 17,969 | 73.6 | 15,178 | 73.7 | 10,667 | 73.6 |
| 차액보육료 | 3,110 | 12.7 | 2,657 | 12.9 | 1,866 | 12.9 |
| 기본보육료 | 3,350 | 13.7 | 2,772 | 13.5 | 1,964 | 13.5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0 | 0.0 |
| 총액 | 24,429 | 100.0 | 20,607 | 100.0 | 14,497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17,969 | 70.9 | 15,178 | 71.0 | 10,667 | 70.9 |
| 차액보육료 | 3,110 | 12.3 | 2,657 | 12.4 | 1,866 | 12.4 |
| 기본보육료 | 3,350 | 13.2 | 2,772 | 13.0 | 1,964 | 13.1 |
| 누리 지원금 | 900 | 3.6 | 765 | 3.6 | 540 | 3.6 |
| 총액 | 25,329 | 100.0 | 21,372 | 100.0 | 15,037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17,969 | 66.8 | 15,178 | 66.8 | 10,667 | 66.7 |
| 차액보육료 | 3,110 | 11.6 | 2,657 | 11.7 | 1,866 | 11.7 |
| 기본보육료 | 3,350 | 12.5 | 2,772 | 12.2 | 1,964 | 12.3 |
| 누리 지원금 | 2,475 | 9.2 | 2,115 | 9.3 | 1,485 | 9.3 |
| 총액 | 26,904 | 100.0 | 22,722 | 100.0 | 15,982 | 100.0 |

6) 99인

정원 79인 이하 어린이집 모형에는 5세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등 지원금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수준이고, 3~5세 누리과정 지원

시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체수입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정원충족률별로 보육료와 보조금 등 기본 수입 대비 누리과정 지원금 비율은 유사하다.

금액으로 보면 정원 100% 충족시 5세 누리과정 시에는 약 100만원이고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약 330만원이 증가한다.

〈표 V-2-7〉 99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 적용과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보육료수입 | 22,131 | 74.8 | 18,810 | 74.0 | 13,359 | 73.9 |
| 차액보육료 | 4,089 | 13.8 | 3,474 | 13.7 | 2,352 | 13.0 |
| 기본보육료 | 3,350 | 11.3 | 3,120 | 12.3 | 2,368 | 13.1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0 | 0.0 |
| 총액 | 29,570 | 100.0 | 25,404 | 100.0 | 18,079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22,131 | 72.5 | 18,810 | 71.8 | 13,359 | 71.7 |
| 차액보육료 | 4,089 | 13.4 | 3,474 | 13.3 | 2,352 | 12.6 |
| 기본보육료 | 3,350 | 11.0 | 3,120 | 11.9 | 2,368 | 12.7 |
| 누리 지원금 | 945 | 3.1 | 810 | 3.1 | 540 | 2.9 |
| 총액 | 30,515 | 100.0 | 26,214 | 100.0 | 18,619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22,131 | 67.4 | 18,810 | 66.7 | 13,359 | 66.9 |
| 차액보육료 | 4,089 | 12.4 | 3,474 | 12.3 | 2,352 | 11.8 |
| 기본보육료 | 3,350 | 10.2 | 3,120 | 11.1 | 2,368 | 11.9 |
| 누리 지원금 | 3,285 | 10.0 | 2,790 | 9.9 | 1,890 | 9.5 |
| 총액 | 32,855 | 100.0 | 28,194 | 100.0 | 19,969 | 100.0 |

7) 131인

정원 131인 이하 어린이집 모형에는 5세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등 지원금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3% 수준이고, 3~5세 누리과정 지원시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체수입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정원충족률별로 보육료와 보조금 등 기본 수입 대비 누리과정 지원금 비율은 유사하다.

금액으로 보면 정원 100% 충족시 5세 누리과정 시에는 약 100만원이고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월 450만원이 증가한다.

〈표 V-2-8〉 131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보육료수입 | 28,667 | 73.9 | 24,377 | 73.4 | 17,351 | 73.7 |
| 차액보육료 | 5,884 | 15.2 | 4,947 | 14.9 | 3,487 | 14.8 |
| 기본보육료 | 4,220 | 10.9 | 3,872 | 11.7 | 2,716 | 11.5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0 | 0.0 |
| 총액 | 38,771 | 100.0 | 33,196 | 100.0 | 23,554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28,667 | 72.1 | 24,377 | 71.7 | 17,351 | 71.5 |
| 차액보육료 | 5,884 | 14.8 | 4,947 | 14.5 | 3,487 | 14.4 |
| 기본보육료 | 4,220 | 10.6 | 3,872 | 11.4 | 2,716 | 11.2 |
| 누리 지원금 | 990 | 2.5 | 810 | 2.4 | 720 | 3.0 |
| 총액 | 39,761 | 100.0 | 34,006 | 100.0 | 24,274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28,667 | 66.2 | 24,377 | 65.9 | 17,351 | 66.1 |
| 차액보육료 | 5,884 | 13.6 | 4,947 | 13.4 | 3,487 | 13.3 |
| 기본보육료 | 4,220 | 9.8 | 3,872 | 10.5 | 2,716 | 10.3 |
| 누리 지원금 | 4,500 | 10.4 | 3,780 | 10.2 | 2,700 | 10.3 |
| 총액 | 43,271 | 100.0 | 36,976 | 100.0 | 26,254 | 100.0 |

8) 150인

정원 150인 어린이집 모형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등 지원금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2.3% 수준이고, 3~5세 누리과정 지원 시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체수입의 약 12% 정도를 차지한다. 정원충족률별로 보육료와 보조금 등 기본 수입 대비 누리과정 지원금 비율은 유사하다.

금액으로 보면 정원 100% 충족시 5세 누리과정 시에는 약 100만원이고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월 560만원이 증가한다.

<표 V-2-9> 150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보육료수입 | 31,018 | 76.3 | 26,439 | 75.5 | 18,710 | 75.4 |
| 차액보육료 | 7,197 | 17.7 | 6,159 | 17.6 | 4,260 | 17.2 |
| 기본보육료 | 2,415 | 5.9 | 2,415 | 6.9 | 1,840 | 7.4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0 | 0.0 |
| 총액 | 40,630 | 100.0 | 35,013 | 100.0 | 24,810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31,018 | 74.6 | 26,439 | 73.8 | 18,710 | 73.8 |
| 차액보육료 | 7,197 | 17.3 | 6,159 | 17.2 | 4,260 | 16.8 |
| 기본보육료 | 2,415 | 5.8 | 2,415 | 6.7 | 1,840 | 7.3 |
| 누리 지원금 | 945 | 2.3 | 810 | 2.3 | 540 | 2.1 |
| 총액 | 41,575 | 100.0 | 35,823 | 100.0 | 25,350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31,018 | 67.1 | 26,439 | 66.4 | 18,710 | 66.5 |
| 차액보육료 | 7,197 | 15.6 | 6,159 | 15.5 | 4,260 | 15.1 |
| 기본보육료 | 2,415 | 5.2 | 2,415 | 6.1 | 1,840 | 6.5 |
| 누리 지원금 | 5,625 | 12.2 | 4,815 | 12.1 | 3,330 | 11.8 |
| 총액 | 46,255 | 100.0 | 39,828 | 100.0 | 28,140 | 100.0 |

다. 누리지원금 규모

<표 V-2-10>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누리지원 여부별 누리지원금 규모의 변화를 나타낸다.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총 기본 수입은 규모에 따라 2~4% 정도 증가한다.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원단가가 2012년과 동일할 경우에도 총 수입은 규모에 따라 4~13% 정도 증가한다.

정원충족률의 차이에 따른 비율 차이는 거의 없다,

〈표 V-2-10〉 민간개인 어린이집 기본수입 대비; 누리지원금 규모

단위: %

| 구분 | 5세 누리 지원시 총수입 비율 | | | 3-5세 누리 지원시 총수입 비율 | | |
|------|------------------|--------|--------|--------------------|--------|--------|
| | 100% | 85% | 60% | 100% | 85% | 60% |
| 27인 | - | - | - | 105.61 | 105.50 | 104.90 |
| 39인 | - | - | - | 105.04 | 105.29 | 104.30 |
| 49인 | - | - | - | 108.62 | 108.77 | 109.01 |
| 79인 | 103.68 | 103.71 | 103.72 | 110.13 | 110.26 | 110.24 |
| 99인 | 103.20 | 103.19 | 102.99 | 111.00 | 110.98 | 110.45 |
| 131인 | 102.55 | 102.44 | 103.06 | 111.61 | 111.39 | 111.46 |
| 150인 | 102.33 | 102.31 | 102.18 | 113.84 | 113.75 | 113.42 |

라. 국공립어린이집과 기본 수입 비교

인건비 지원시설과 민간 어린이집의 수입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표 V-2-11>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3가지 종류로 가정하고, 누리과정 미적용시 및 5세 누리과정, 그리고 3-5세 누리과정 도입시 수입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금 수준은 2012년 기준을 적용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는 7호봉으로 가정한 것이다.

민간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39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39인은 영아반이 4반, 유아반이 1반으로 총 5반으로 가정했을 때, 총 수입을 비교를 해보면 국공립 대비 비율이 누리과정 미적용, 5세누리, 3-5세 누리과정 적용시 모두 정원 대비 현원율이 100%이면 71~72%, 85%이면 65% 내외이고 60% 수준을 낮아지면 50% 아래로 차이가 난다.

〈표 V-2-11〉 어린이집 규모, 정원총족률 및 누리과정 도입별 수입구조 비교

단위: 천원, %

| 구분 | 100% | | | 85% | | | 60%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5세 누리과정 | 3-5세 누리과정 | 누리과정 미적용 | 5세 누리과정 | 3-5세 누리과정 | 누리과정 미적용 | 5세 누리과정 | 3-5세 누리과정 |
| 20인 | | | | | | | | | |
| 국공립(A) | 16,969 | 16,969 | 16,969 | 15,942 | 15,942 | 15,942 | 14,282 | 14,282 | 14,282 |
| 민간개인(B) | 10,575 | 10,575 | 10,575 | 9,187 | 9,187 | 9,187 | 6,588 | 6,588 | 6,588 |
| B/A | 62.32 | 62.32 | 62.32 | 57.63 | 57.63 | 57.63 | 46.13 | 46.13 | 46.13 |

(표 계속)

| 구분 | 100% | | | 85% | | | 60%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5세 누리과정 | 3-5세 누리과정 | 누리과정 미적용 | 5세 누리과정 | 3-5세 누리과정 | 누리과정 미적용 | 5세 누리과정 | 3-5세 누리과정 |
| 27인 | | | | | | | | | |
| 국공립(A) | 16,343 | 16,343 | 16,928 | 15,316 | 15,316 | 15,811 | 13,562 | 13,562 | 13,877 |
| 민간개인(B) | 10,419 | 10,419 | 11,004 | 8,995 | 8,995 | 9,490 | 6,434 | 6,434 | 6,749 |
| B/A | 63.75 | 63.75 | 65.00 | 58.73 | 58.73 | 60.02 | 47.44 | 47.44 | 48.63 |
| 39인 | | | | | | | | | |
| 국공립(A) | 21,485 | 21,485 | 22,250 | 19,717 | 19,717 | 20,392 | 17,269 | 17,269 | 17,674 |
| 민간개인(B) | 15,182 | 15,182 | 15,947 | 12,771 | 12,771 | 13,446 | 9,421 | 9,421 | 9,826 |
| B/A | 70.66 | 70.66 | 71.67 | 64.77 | 64.77 | 65.94 | 54.55 | 54.55 | 55.60 |
| 49인 | | | | | | | | | |
| 국공립(A) | 21,134 | 21,134 | 22,484 | 19,467 | 19,467 | 20,637 | 16,677 | 16,677 | 17,532 |
| 민간개인(B) | 15,664 | 15,664 | 17,014 | 13,347 | 13,347 | 14,517 | 9,485 | 9,485 | 10,340 |
| B/A | 74.12 | 74.12 | 75.67 | 68.56 | 68.56 | 70.34 | 56.87 | 56.87 | 58.98 |
| 79인 | | | | | | | | | |
| 국공립(A) | 30,048 | 30,948 | 32,523 | 27,257 | 28,022 | 29,372 | 22,746 | 23,286 | 24,231 |
| 민간개인(B) | 24,429 | 25,329 | 26,904 | 20,607 | 21,372 | 22,722 | 14,497 | 15,037 | 15,982 |
| B/A | 81.30 | 81.84 | 82.72 | 75.60 | 76.27 | 77.36 | 63.73 | 64.58 | 65.96 |
| 99인 | | | | | | | | | |
| 국공립(A) | 34,825 | 35,770 | 38,110 | 31,504 | 32,314 | 34,294 | 26,053 | 26,593 | 27,943 |
| 민간개인(B) | 29,570 | 30,515 | 32,855 | 25,404 | 26,214 | 28,194 | 18,079 | 18,619 | 19,969 |
| B/A | 84.91 | 85.31 | 86.21 | 80.64 | 81.12 | 82.21 | 69.39 | 70.01 | 71.46 |
| 131인 | | | | | | | | | |
| 국공립(A) | 43,616 | 44,606 | 48,116 | 39,326 | 40,136 | 43,106 | 32,300 | 33,020 | 35,000 |
| 민간개인(B) | 38,771 | 39,761 | 43,271 | 33,196 | 34,006 | 36,976 | 23,554 | 24,274 | 26,254 |
| B/A | 88.89 | 89.14 | 89.93 | 84.41 | 84.73 | 85.78 | 72.92 | 73.51 | 75.01 |
| 150인 | | | | | | | | | |
| 국공립(A) | 43,917 | 44,862 | 49,542 | 39,338 | 40,148 | 44,153 | 31,609 | 32,149 | 34,939 |
| 민간개인(B) | 40,630 | 41,575 | 46,255 | 35,013 | 35,823 | 39,828 | 24,810 | 25,350 | 28,140 |
| B/A | 92.52 | 92.67 | 93.37 | 89.01 | 89.23 | 90.20 | 78.49 | 78.85 | 80.54 |

3. 영아전담어린이집 모형별 수입과 지출

가. 영아전담어린이집의 특성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635개이고, 그 중 법인과 민간개인이 각각 220개

소 282개소로 다수를 차지한다. 평균 정원은 약 48명 규모이며, 정원충족률도 약 법인어린이집이 다소 낮으나 평균 90% 이상이다.

〈표 V-3-1〉 영아전담어린이집 규모

단위: 천원(%)

| | 계 | 국공립 | 법인 | 법인의외 | 민간개인 | 가정 | 부모협동 | 직장 |
|-------|-------|------|------|------|-------|-------|------|-----|
| 영아전담 | 635 | 57 | 220 | 21 | 282 | 55 | - | - |
| 전체 | 40709 | 2160 | 1449 | 877 | 14258 | 21377 | 104 | 484 |
| 비율 | 1.6 | 2.6 | 15.2 | 2.4 | 19.8 | 0.3 | - | - |
| 정원 | | | | | | | | |
| 평균 | 48.1 | 50.0 | 64.0 | 40.0 | 41.6 | 19.6 | | |
| 표준편차 | 22.2 | 16.2 | 24.1 | 10.4 | 14.9 | 1.5 | | |
| 정원충족률 | | | | | | | | |
| 평균 | 90.5 | 96.6 | 86.7 | 92.4 | 90.2 | 100.4 | | |
| 표준편차 | 16.3 | 6.6 | 17.7 | 16.5 | 16.8 | 5.9 | | |

〈표 V-3-2〉 민간·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 다 빈도 정원

단위: 천원(%)

| 정원 | 국공립 | | | 법인 | | | 민간개인 | | | 가정 | | |
|----|------|-----|------|-------|------|------|-------|------|------|------|------|-------|
| | 수 | 비율 | 누적비율 | 수 | 비율 | 누적비율 | 수 | 비율 | 누적비율 | 수 | 비율 | 누적비율 |
| 20 | 2 | 3.5 | 3.5 | - | - | - | - | - | - | 51 | 92.7 | 100.0 |
| 24 | - | - | - | - | - | - | 23 | 8.2 | 10.6 | | | |
| 36 | - | - | - | 3 | 1.4 | 2.7 | 38 | 13.5 | 42.6 | | | |
| 39 | 2 | 3.5 | 21.1 | 5 | 2.3 | 5.9 | 28 | 9.9 | 57.4 | | | |
| 48 | 5 | 8.8 | 57.9 | 20 | 9.1 | 9.1 | 21 | 7.4 | 79.8 | | | |
| 49 | 4 | 7.0 | 64.9 | 32 | 14.5 | 40.9 | 7 | 2.5 | 82.3 | | | |
| 60 | 1 | 1.8 | 78.9 | 12 | 5.5 | 59.1 | - | - | - | | | |
| 72 | - | - | - | 7 | 3.2 | 74.1 | 3 | 1.1 | 95.4 | | | |
| 99 | - | - | - | 6 | 2.7 | 93.6 | - | - | - | | | |
| | (57) | | | (220) | | | (282) | | | (55) | | |

법인이나 국공립보육시설과 같은 인건비 지원시설과의 차이는 20인 이하 시설이라도 아동 18명 시설까지는 원장 인건비를 80% 지원한다는 점과 농어촌이나 도시의 평가인증 통과시설이 아니어도 취사부 1인 인건비를 100% 지원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평가인증 통과시설이 증가하면서 취사부 지원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소규모어린이집에 중점을 두고 수입과 지출은 분석

하고자 한다.

나. 기본 가정

1) 반 구성

앞에서 논의한 반 구성을 기본으로 하되, 영아반 위주로 운영되는 운영 특성에 맞추어 39인 규모 어린이집의 반 구성을 다소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영아전담어린이집은 2004년 이전에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국고 보조금으로 영아전담어린이집 신축비를 지원 받은 시설이다. 영아 전담어린이집은 현재 유아를 정원 범위에서 40%까지 보육할 수 있으나 교사는 2세와 혼합반이고 영아가 4명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한다.

〈표 V-3-3〉 소규모 어린이집 반 구성 기본 가정

단위: 개(명)

| 구분 | 연령별 반 구성 | | | | | | | 비고 |
|------|----------|----|----|---|---|---|----|----------|
| | 0 | 1 | 2 | 3 | 4 | 5 | 계 | |
| 20인 | | | | | | | | |
| 반 수 | 2 | 1 | 1 | - | - | - | 4 | 2명 초과보육 |
| 아동 수 | 6 | 6 | 8 | | | | 20 | |
| 100% | 5 | 5 | 7 | | | | | |
| 85% | | | | | | | | |
| 39인 | | | | | | | | |
| 반수 | 3 | 3 | 2 | - | | | 5 | 1인 초과 보육 |
| 아동수 | 9 | 15 | 15 | | | | 39 | |
| 100% | 7 | 13 | 13 | | | | 33 | |
| 85% | | | | | | | | |

2) 인력구성 및 지원수준

영아전담으로 지정받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원장과 영아 교사는 월지급액의 80%를 받는다. 영아전담에서 별도로 유아반을 편성하여 운영 시, 국공립 및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한해 유아교사는 30%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취사부 1인에 한해 월지급액 100%를 지원받는다. 보육료는 정부 지원단가로 수납한다. 5세 누리 지원금은 5세 아동 수에 따라 지원받으나,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5세 누리 지원금 수혜를 받

고 있는 원의 수는 극히 적다.

〈표 V-3-4〉 민간·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 인건비 운영 모형

단위: 호봉

| 구분 | 원장 | 교사 | 취사부 |
|-------|-----------|----------------------------|------------|
| 호봉 | 10 | 3 | 2 |
| 지원 비율 | 월지급액의 80% | (영아반)월지급액의 80% (유아반)미지원 | 월지급액의 100% |
| 지원 기준 | | | |

나. 수입과 지출구조 추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은 기본 모형에서 영아반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원충족률과 관계없이 누리과정 적용 여부에 따라 전체 수입과 지출 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 20인

정원 20인 시설은 보육료와 정부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53.4%이고 정원충족률이 85%이면 57.4%로 증가한다.

〈표 V-3-5〉 20인 민간·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보육료수입 | 6,734 | 46.6 | 5,707 | 42.6 |
| 인건비 보조금 | 7,702 | 53.4 | 7,702 | 57.4 |
| 총액 | 14,436 | 100.0 | 13,409 | 100.0 |
| 지출 | | | | |
| 인건비 | 10,939 | 75.8 | 10,939 | 81.6 |
| 기타운영비 | 3,497 | 24.2 | 2,470 | 18.4 |
| 총액 | 14,436 | 100.0 | 13,409 | 100.0 |

보육료와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75.8% 수준인데 정

원 총족률이 85%시 81.6% 수준으로 높아진다.

2) 39인

정원 39인 시설은 보육료와 정부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총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48.8%이고 정원총족률이 85%이면 53.1%로 증가한다.

보육료와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70.1% 수준인데 정원 총족률이 85%시 76.3% 수준으로 높아진다.

〈표 V-3-6〉 39인 민간·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 정원총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보육료수입 | 13,041 | 51.2 | 10,987 | 46.9 |
| 인건비 보조금 | 12,428 | 48.8 | 12,428 | 53.1 |
| 총액 | 25,469 | 100.0 | 23,415 | 100.0 |
| 지출 | | | | |
| 인건비 | 17,862 | 70.1 | 17,862 | 76.3 |
| 기타운영비 | 7,607 | 29.9 | 5,553 | 23.7 |
| 총액 | 25,469 | 100.0 | 23,415 | 100.0 |

4.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모형별 수입과 지출

가.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특성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171개이고, 그 중 국공립과 법인이 100개, 법인 외 7개, 민간개인과 가정이 합쳐 2개이다. 평균 정원은 약 48명 규모이며, 정원총족률도 약 82%에 달한다.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특성은 연령별 구분 없이 교사대 아동비율이 1:3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장애아 종일반, 장애아 방과후 반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2012년부터는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해 5세 장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는 기관이

늘어났다. 전국의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평균 12개의 반을 구성하며, 그 중 종일반이 5개, 방과후반이 4개, 5세반이 약 3반이 되도록 반을 구성하고 있다.

〈표 V-4-1〉 장애아전담어린이집 규모

단위: 수(%)

| | 전체 | 국공립 | 법인 | 법인의외 | 민간개인 | 가정 |
|--------|------|------|------|------|------|------|
| 어린이집 수 | 171 | 34 | 100 | 7 | 82 | 2 |
| 정원 | | | | | | |
| 계 | 8272 | 1311 | 550 | 328 | 1092 | 40 |
| 평균 | 48.4 | 38.6 | 55.0 | 46.9 | 38.9 | 20.0 |
| 표준편차 | 20.6 | 14.8 | 21.4 | 17.8 | 14.7 | - |
| 정원 충족률 | | | | | | |
| 평균 | 81.9 | 88.1 | 80.1 | 80.7 | 80.4 | 92.5 |
| 표준편차 | 16.6 | 15.2 | 16.8 | 20.3 | 16.4 | 3.5 |

〈표 V-4-2〉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반 수

단위: 개

| | 전체 | 국공립 | 법인 | 법인의외 | 민간 개인 | 가정 |
|------|------|------|------|------|-------|-----|
| 전체 | 12.3 | 10.5 | 13.6 | 12.8 | 10.1 | 6.0 |
| 표준편차 | 5.0 | 3.2 | 5.4 | 6.7 | 3.7 | - |
| 종일반 | 5.2 | 5.4 | 5.5 | 5.6 | 3.9 | 4.0 |
| 표준편차 | 2.7 | 2.2 | 2.9 | 4.0 | 1.8 | 2.8 |
| 방과후 | 4.0 | 2.2 | 4.8 | 4.0 | 3.8 | 1.0 |
| 표준편차 | 2.8 | 2.2 | 2.7 | 2.8 | 2.8 | 1.4 |
| 5세반 | 2.6 | 2.5 | 2.7 | 3.0 | 2.2 | 1.0 |
| 표준편차 | 1.7 | 1.6 | 1.7 | 2.0 | 1.6 | 1.4 |

나. 기본 가정

1) 반 구성

앞에서 논의한 반구성과 동일한 유형 2개를 선택하였다. 2013년 3~4세 누리과정 지원 시, 5세 누리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3, 4세 반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3,4세반을 별도로 1~2개반씩 편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표 V-4-3 참조).

〈표 V-4-3〉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반 구성 기본 가정: 2012년 5세 누리과정

단위: 개(%)

| 구분 | 영아 | 3세아 | 4세아 | 5세아 | 방과후 | 계 |
|------|----|-----|-----|-----|-----|----|
| 39인 | | | | | | |
| 반 수 | 2 | 1 | 1 | 3 | 6 | 13 |
| 아동 수 | | | | | | |
| 100% | 6 | 3 | 3 | 9 | 18 | 39 |
| 85% | 5 | 3 | 2 | 8 | 15 | 33 |
| 48인 | | | | | | |
| 반수 | 2 | 2 | 2 | 4 | 6 | 16 |
| 아동수 | | | | | | |
| 100% | 6 | 6 | 6 | 12 | 18 | 48 |
| 85% | 5 | 5 | 5 | 10 | 15 | 40 |

2) 인력구성 및 지원수준

장애아전담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원장과 교사, 특수교사는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며, 아동 9명당 1명의 치료사에 대해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보육료는 정부 지원단가로 수납한다. 5세누리 지원금은 5세 아동 수에 따라 지원받으며, 추가적으로 차량운영비 월 20만원과 취사부의 월지급액 100%를 지원받는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에 대한 모형 가정은 <표 V-4-5>와 같다.

〈표 V-4-4〉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 모형

단위: 호봉

| 구분 | 원장 | 교사 | 특수교사 | 취사부 | 치료사 |
|-------|-----------|-----------|-----------|------------|------------|
| 호봉 | 15 | 7 | 2 | 5 | 2 |
| 지원 비율 | 월지급액의 80% | 월지급액의 80% | 월지급액의 80% | 월지급액의 100% | 월지급액의 100% |
| 지원 기준 | | | | | |

나. 수입과 지출구조 추정

1) 39인

5세 누리과정이 적용된 2012년 정원 39인 시설은 보육료와 정부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70.1%이고 정원 충족률이 85%이면 72.4%로 증가한다. 보육료와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87.4%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85%시 90.3%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원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전체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9인 어린이집이 약 69.7%이다.

〈표 V-4-5〉 39인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보육료수입 | 11,820 | 28.7 | 10,047 | 26.4 |
| 인건비 보조금 | 29,179 | 70.8 | 27,836 | 73.1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 차량운영비 | 200 | 0.5 | 200 | 0.5 |
| 총액 | 41,199 | 100.0 | 38,083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보육료수입 | 11,820 | 28.4 | 10,047 | 26.1 |
| 인건비 보조금 | 29,179 | 70.1 | 27,836 | 72.4 |
| 누리 지원금 | 405 | 1.0 | 360 | 0.9 |
| 차량운영비 | 200 | 0.5 | 200 | 0.5 |
| 총액 | 41,604 | 100.0 | 38,443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보육료수입 | 11,820 | 28.2 | 10,047 | 26.0 |
| 인건비 보조금 | 29,179 | 69.7 | 27,836 | 72.0 |
| 누리 지원금 | 675 | 1.6 | 585 | 1.5 |
| 차량운영비 | 200 | 0.5 | 200 | 0.5 |
| 총액 | 41,874 | 100.0 | 38,668 | 100.0 |

(표 계속)

| 구분 | 100% | | 85%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지출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인건비 | 36,374 | 88.3 | 34,695 | 91.1 |
| 기타운영비 | 4,825 | 11.7 | 3,388 | 8.9 |
| 총액 | 41,199 | 100.0 | 38,083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인건비 | 36,374 | 87.4 | 34,695 | 90.3 |
| 기타운영비 | 5,230 | 12.6 | 3,748 | 9.7 |
| 총액 | 41,604 | 100.0 | 38,443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인건비 | 36,374 | 86.9 | 34,695 | 89.7 |
| 기타운영비 | 5,500 | 13.1 | 3,973 | 10.3 |
| 총액 | 41,874 | 100.0 | 38,668 | 100.0 |

5세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체 수입의 1% 내외이며, 3~5세 누리과정 지원 시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체수입의 최소 1.6%에서 최대 2.1%를 차지한다.

인건비 보조금의 비율은 누리과정 보조금 미지원 시 39인 70.8%던 것이 3~5세 누리과정이 실시되는 2013년이면 지원단가를 고정할 경우에 각각 69.7%로 감소한다.

2) 48인

정원 48인 시설은 5세 누리과정 적용시 보육료와 정부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총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68.6%이고 정원총족률이 85%이면 71.5%로 증가한다. 보육료와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85.5% 수준인데 정원 총족률이 85%시 89.2%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원총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전체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9인 어린이집이 약 67.9%로 다소 감소한다. 5세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체 기본 수입의 1% 내외이며, 3~5세 누리과정 지원 시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체수입의 최소 1.6%에서 최대 2.1%를 차지한다.

기본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은 누리과정 보조금 미지원 시 86.4%던 것이 3~5세 누리과정이 실시되는 2013년이면 지원단가를 고정할 경우에 84.6%로 감소한다.

〈표 V-4-6〉 48인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정원총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보육료수입 | 15,366 | 30.3 | 12,805 | 27.4 |
| 인건비 보조금 | 35,145 | 69.3 | 33,802 | 72.2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 차량운영비 | 200 | 0.4 | 200 | 0.4 |
| 총액 | 50,711 | 100.0 | 46,807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보육료수입 | 15,366 | 30.0 | 12,805 | 27.1 |
| 인건비 보조금 | 35,145 | 68.6 | 33,802 | 71.5 |
| 누리 지원금 | 540 | 1.1 | 450 | 1.0 |
| 차량운영비 | 200 | 0.4 | 200 | 0.4 |
| 총액 | 51,251 | 100.0 | 47,257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보육료수입 | 15,366 | 29.7 | 12,805 | 26.8 |
| 인건비 보조금 | 35,145 | 67.9 | 33,802 | 70.9 |
| 누리 지원금 | 1,080 | 2.1 | 900 | 1.9 |
| 차량운영비 | 200 | 0.4 | 200 | 0.4 |
| 총액 | 51,791 | 100.0 | 47,707 | 100.0 |
| 지출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인건비 | 43,832 | 86.4 | 42,153 | 90.1 |
| 기타운영비 | 6,879 | 13.6 | 4,654 | 9.9 |
| 총액 | 50,711 | 100.0 | 46,807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인건비 | 43,832 | 85.5 | 42,153 | 89.2 |
| 기타운영비 | 7,419 | 14.5 | 5,104 | 10.8 |
| 총액 | 51,251 | 100.0 | 47,257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인건비 | 43,832 | 84.6 | 42,153 | 88.4 |
| 기타운영비 | 7,959 | 15.4 | 5,554 | 11.6 |
| 총액 | 51,791 | 100.0 | 47,707 | 100.0 |

다. 누리과정 지원금 규모

<표 V-47>은 누리과정 지원 여부별 누리지원금 규모의 변화를 나타낸다.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총 기본 수입은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 정도 증가한다.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원단가가 2012년과 동일할 경우에도 총 수입은 규모에 따라 1.5~2.0% 정도 증가한다. 정원충족률의 차이에 따른 비율 차이는 거의 없다.

이 금액은 5세 누리과정 적용시는 5세아반 인건비 대비 7~9%가 증가한 것이며, 3~5세 누리과정 적용시는 3~5세반 교사 인건비 지원금의 7~8%가 된다. 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이 80%이므로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금의 비중이 크지 않다.

<표 V-4-7>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누리지원금 규모

단위: %

| 구분 | 39인 | | 48인 | |
|--------------------|--------|--------|--------|--------|
| | 100% | 85% | 100% | 85% |
| 미적용시 총수입 대비 | | | | |
| 5세 누리 지원시 총수입 비율 | 100.98 | 100.95 | 101.06 | 100.96 |
| 3-5세 누리 지원시 총수입 비율 | 101.64 | 101.54 | 102.13 | 101.92 |
| 5세반 인건비 보조금 대비 | | | | |
| 5세 누리 지원금 비율 | 8.23 | 7.32 | 8.23 | 6.86 |
| 유아반 인건비 보조금 대비 | | | | |
| 3-5세 누리 지원금 비율 | 8.23 | 7.13 | 8.23 | 6.86 |

5. 공공형어린이집 모형별 수입과 지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특성

공공형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664개가 있으며, 그 중 법인외가 3개, 민간개인이 444개, 가정어린이집이 217개이다. 평균 정원은 55명이지만, 소규모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에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형별 정원차이가 크다.

〈표 V-5-1〉 공공형어린이집 규모

| | 단위: 개(%) | | | |
|--------|----------|------|--------|-------|
| | 전체 | 법인외 | 민간개인 | 가정 |
| 어린이집 수 | 664 | 3 | 444 | 217 |
| 정원 | | | | |
| 총 정원 | 36,494 | 164 | 32,298 | 4,032 |
| 평균 | 55.0 | 54.7 | 72.7 | 18.6 |
| 표준편차 | 38.6 | 16.6 | 35.5 | 2.2 |
| 정원 충족률 | | | | |
| 평균 | 92.4 | 90.0 | 90.9 | 95.7 |
| 표준편차 | 12.6 | 10.5 | 12.6 | 12.0 |

정원충족률은 모든 유형에서 90% 이상이며 전체 민간개인어린이집의 평균 정원충족률이 84.8%, 가정어린이집은 88.4%임을 감안할 때, 공공형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높은 편이다.

나. 기본 가정

1) 반별 아동 수

어린이집 규모와 정원 충족률별 반별 아동 수를 기본가정으로 설정하였다.

<표 V-5-2> 공공형어린이집 반 구성 기본 가정(민간과 동일)

단위: 개

| 구분 | 연령별 반 구성 | | | | | | | 비고 |
|------|----------|----|----|----|----|----|----|-----------|
| | 0 | 1 | 2 | 3 | 4 | 5 | 계 | |
| 20인 | | | | | | | | |
| 반 수 | 2 | 1 | 1 | - | - | - | 4 | 2명 초과보육 |
| 아동 수 | 6 | 6 | 8 | | | | 20 | |
| 100% | 5 | 5 | 7 | | | | 17 | |
| 39인 | | | | | | | | |
| 반수 | 1 | 2 | 1 | 1 | | | 5 | 4인 초과 보육 |
| 아동수 | 3 | 11 | 8 | 17 | | | 39 | |
| 100% | 2 | 9 | 7 | 15 | | | 33 | |
| 49인 | | | | | | | | |
| 반 수 | 0 | 1 | 2 | 1 | 1 | 0 | 5 | 반정원 6명 감축 |
| 아동 수 | 0 | 5 | 14 | 13 | 17 | 0 | 49 | |
| 100% | 0 | 4 | 12 | 11 | 15 | 0 | 42 | |
| 79인 | | | | | | | | |
| 반 수 | 0 | 2 | 2 | 1 | 1 | 1 | 7 | |
| 아동 수 | 0 | 10 | 14 | 15 | 20 | 20 | 79 | |
| 100% | 0 | 8 | 12 | 13 | 17 | 17 | 67 | |
| 99인 | | | | | | | | |
| 반수 | 0 | 2 | 2 | 2 | 1 | 1 | 8 | 5인 초과 보육 |
| 아동수 | 0 | 11 | 15 | 31 | 21 | 21 | 99 | |
| 100% | 0 | 10 | 12 | 26 | 18 | 18 | 84 | |

2) 인력구성 및 지원수준

공공형어린이집은 일정 간격의 규모별로 운영비를 차등 지원받으며(표 V-5-3 참조) 보육료는 지방정부 고시로 상한선을 두며, 이에 따라 차액보육료를 수납할 수 있다. 영아 기본보육료는 변동 없이 지원받으며,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5세 누리 지원금은 5세 아동 수에 따라 받는다.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운영에 대한 모형 가정은 <표 V-5-4>와 같다.

〈표 V-5-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기준

| 구분 | 20인 이하 | 21~49인 | 50~76인 | 77인~97인 | 98인 이상 |
|-------|--------|--------|--------|---------|--------|
| 월 지원액 | 96만원 | 248만원 | 440만원 | 560만원 | 824만원 |

〈표 V-5-4〉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운영 모형

| 단위: 호봉 | | | |
|--------|-----|-----|-----|
| 구분 | 원장 | 교사 | 취사부 |
| 호봉 | 10 | 3 | 2 |
| 지원 비율 | 미지원 | 미지원 | 미지원 |
| 지원 기준 | - | - | - |

다. 수입과 지출구조 추정

1) 20인

정원 충족률과 관계없이,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전체 수입구조에 인건비 보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추가로 지원받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금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20인 시설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8.3%이고 정원충족률이 85%이면 9.5%로 증가한다.

〈표 V-5-5〉 20인 공공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보육료수입 | 6,734 | 58.4 | 5,707 | 56.2 |
| 차액보육료 | 0 | 0.0 | 0 | 0.0 |
| 기본보육료 | 3,841 | 33.3 | 3,480 | 34.3 |
| 5세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 공공형 지원액 | 960 | 8.3 | 960 | 9.5 |
| 총액 | 11,535 | 100.0 | 10,147 | 100.0 |
| 지출 | | | | |
| 인건비 | 9,559 | 82.9 | 9,559 | 94.2 |
| 기타운영비 | 1,975 | 17.1 | 588 | 5.8 |
| 총액 | 11,535 | 100.0 | 10,147 | 100.0 |

보육료와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82.9%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85%시 94.2% 수준으로 높아진다.

2) 39인

정원 39인 시설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전체 수입 중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14.0%이고 정원충족률이 85%이면 16.3%로 증가한다.

보육료와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71.7%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85%시 83.1% 수준으로 높아진다.

〈표 V-5-6〉 39인 공공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보육료수입 | 10,636 | 60.2 | 8,868 | 58.1 |
| 차액보육료 | 918 | 5.2 | 810 | 5.3 |
| 기본보육료 | 3,628 | 20.5 | 3,093 | 20.3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 공공형지원액 | 2,480 | 14.0 | 2,480 | 16.3 |
| 총액 | 17,662 | 100.0 | 15,251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보육료수입 | 10,636 | 57.7 | 8,868 | 55.7 |
| 차액보육료 | 918 | 5.0 | 810 | 5.1 |
| 기본보육료 | 3,628 | 19.7 | 3,093 | 19.4 |
| 누리 지원금 | 765 | 4.2 | 675 | 4.2 |
| 공공형지원액 | 2,480 | 13.5 | 2,480 | 15.6 |
| 총액 | 18,427 | 100.0 | 15,926 | 100.0 |
| 지출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인건비 | 12,670 | 71.7 | 12,670 | 83.1 |
| 기타운영비 | 4,992 | 28.3 | 2,581 | 16.9 |
| 총액 | 17,662 | 100.0 | 15,251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인건비 | 12,670 | 68.8 | 12,670 | 79.6 |
| 기타운영비 | 5,757 | 31.2 | 3,256 | 20.4 |
| 총액 | 18,427 | 100.0 | 15,926 | 100.0 |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누리지원금은 기본 총 수입의 4.2%를 차지한다. 인건비 지출 비율은 약 3% 정도 낮아진다.

3) 49인

정원 49인 시설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전체 수입 중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13.7%이고 정원충족률이 85%이면 15.7%로 증가한다.

보육료와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69.8%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85%시 80.1% 수준으로 높아진다.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정원충족률 100%시에 누리지원금은 기본 총 수입의 6.9%를 차지한다. 기본 수입에서 인건비 지출 비율은 약 4.8% 정도 낮아진다.

〈표 V-5-7〉 49인 공공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누리과정 미적용 | | | | 3~5세 누리과정 적용 | | | |
|--------|----------|-------|--------|-------|--------------|-------|--------|-------|
| | 100% | | 85% | | 100% | | 85%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 | |
| 보육료수입 | 11,309 | 62.3 | 9,642 | 60.9 | 11,309 | 58.0 | 9,642 | 56.7 |
| 차액보육료 | 1,875 | 10.3 | 1,629 | 10.3 | 1,875 | 9.6 | 1,629 | 9.6 |
| 기본보육료 | 2,480 | 13.7 | 2,076 | 13.1 | 2,480 | 12.7 | 2,076 | 12.2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1,350 | 6.9 | 1,170 | 6.9 |
| 공공형지원액 | 2,480 | 13.7 | 2,480 | 15.7 | 2,480 | 12.7 | 2,480 | 14.6 |
| 총액 | 18,144 | 100.0 | 15,827 | 100.0 | 19,494 | 100.0 | 16,997 | 100.0 |
| 지출 | | | | | | | | |
| 인건비 | 12,670 | 69.8 | 12,670 | 80.1 | 12,670 | 65.0 | 12,670 | 74.5 |
| 기타운영비 | 5,474 | 30.2 | 3,157 | 19.9 | 6,824 | 35.0 | 4,327 | 25.5 |
| 총액 | 18,144 | 100.0 | 15,827 | 100.0 | 19,494 | 100.0 | 16,997 | 100.0 |

4) 79인

5세 누리과정 적용시 정원 79인 시설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전체 수입 중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18.1%이고 정원충족률이 85%이면 17.1%이다. 보육료와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정

원이 다 찰 경우 52.2%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85%시 62.6% 수준으로 높아진다.

<표 V-5-8> 79인 공공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보육료수입 | 17,969 | 59.8 | 15,178 | 60.7 |
| 차액보육료 | 3,110 | 10.4 | 2,657 | 10.6 |
| 기본보육료 | 3,350 | 11.2 | 2,772 | 11.1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 공공형지원액 | 5,600 | 18.6 | 4,400 | 17.6 |
| 총액 | 30,029 | 100.0 | 25,007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보육료수입 | 17,969 | 58.1 | 15,178 | 58.9 |
| 차액보육료 | 3,110 | 10.1 | 2,657 | 10.3 |
| 기본보육료 | 3,350 | 10.8 | 2,772 | 10.8 |
| 누리 지원금 | 900 | 2.9 | 765 | 3.0 |
| 공공형지원액 | 5,600 | 18.1 | 4,400 | 17.1 |
| 총액 | 30,929 | 100.0 | 25,772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보육료수입 | 17,969 | 55.3 | 15,178 | 56.0 |
| 차액보육료 | 3,110 | 9.6 | 2,657 | 9.8 |
| 기본보육료 | 3,350 | 10.3 | 2,772 | 10.2 |
| 누리 지원금 | 2,475 | 7.6 | 2,115 | 7.8 |
| 공공형지원액 | 5,600 | 17.2 | 4,400 | 16.2 |
| 총액 | 32,504 | 100.0 | 27,122 | 100.0 |
| 지출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인건비 | 16,132 | 53.7 | 16,132 | 64.5 |
| 기타운영비 | 13,897 | 46.3 | 8,875 | 35.5 |
| 총액 | 30,029 | 100.0 | 25,007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인건비 | 16,132 | 52.2 | 16,132 | 62.6 |
| 기타운영비 | 14,797 | 47.8 | 9,640 | 37.4 |
| 총액 | 30,929 | 100.0 | 25,772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인건비 | 16,132 | 49.6 | 16,132 | 59.5 |
| 기타운영비 | 16,372 | 50.4 | 10,990 | 40.5 |
| 총액 | 32,504 | 100.0 | 27,122 | 100.0 |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전체 수입 중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17.2%로 약간 낮아지고 정원충족률이 85%이면 16.2%이다. 보육료와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49.6%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85%시 59.5% 수준으로 높아진다.

5) 99인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정원 99인 시설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전체 수입 중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충족률 100% 때 21.3%이고 정원충족률이 85%이면 17.6%이다. 보육료와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49.7%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85%시 60.5% 수준으로 높아진다.

<표 V-5-9> 99인 공공형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보육료수입 | 22,131 | 58.5 | 18,810 | 60.7 |
| 차액보육료 | 4,089 | 10.8 | 3,474 | 11.2 |
| 기본보육료 | 3,350 | 8.9 | 3,120 | 10.1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 공공형지원액 | 8,240 | 21.8 | 5,600 | 18.1 |
| 총액 | 37,810 | 100.0 | 31,004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보육료수입 | 22,131 | 57.1 | 18,810 | 59.1 |
| 차액보육료 | 4,089 | 10.6 | 3,474 | 10.9 |
| 기본보육료 | 3,350 | 8.6 | 3,120 | 9.8 |
| 누리 지원금 | 945 | 2.4 | 810 | 2.5 |
| 공공형지원액 | 8,240 | 21.3 | 5,600 | 17.6 |
| 총액 | 38,755 | 100.0 | 31,814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보육료수입 | 22,131 | 53.9 | 18,810 | 55.7 |
| 차액보육료 | 4,089 | 10.0 | 3,474 | 10.3 |
| 기본보육료 | 3,350 | 8.2 | 3,120 | 9.2 |
| 누리 지원금 | 3,285 | 8.0 | 2,790 | 8.3 |
| 공공형지원액 | 8,240 | 20.1 | 5,600 | 16.6 |
| 총액 | 41,095 | 100.0 | 33,794 | 100.0 |

(표 계속)

| 구분 | 100% | | 85%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지출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인건비 | 19,242 | 50.9 | 19,242 | 62.1 |
| 기타운영비 | 18,568 | 49.1 | 11,762 | 37.9 |
| 총액 | 37,810 | 100.0 | 31,004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인건비 | 19,242 | 49.7 | 19,242 | 60.5 |
| 기타운영비 | 19,513 | 50.3 | 12,572 | 39.5 |
| 총액 | 38,755 | 100.0 | 31,814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인건비 | 19,242 | 46.8 | 19,242 | 56.9 |
| 기타운영비 | 21,853 | 53.2 | 14,552 | 43.1 |
| 총액 | 41,095 | 100.0 | 33,794 | 100.0 |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전체 수입 중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20.1%로 약간 낮아지고 정원충족률이 85% 이면 16.6%이다. 보육료와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46.8%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85%시 56.9% 수준으로 높아진다.

다. 누리지원금 규모

<표 V-5-10>는 공공형어린이집의 누리지원 여부별 수입 규모 변화를 나타낸다.

<표 V-5-10> 공공형어린이집 누리지원금 규모

단위: %

| 구분 | 20인 | | 39인 | | 49인 | | 79인 | | 99인 | |
|--------------------|--------|--------|--------|--------|--------|--------|--------|--------|--------|--------|
| | 100% | 85% | 100% | 85% | 100% | 85% | 100% | 85% | 100% | 85% |
| 미적용시 총수입 대비 | | | | | | | | | | |
| 5세 누리 지원시 총수입 비율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3.00 | 103.06 | 102.50 | 102.61 |
| 3-5세 누리 지원시 총수입 비율 | 100.00 | 100.00 | 104.33 | 104.43 | 107.44 | 107.39 | 108.24 | 108.46 | 108.69 | 109.00 |
| 운영비 지원금 대비 | | | | | | | | | | |
| 5세 누리 지원금 비율 | - | - | - | - | - | - | 16.07 | 17.39 | 11.47 | 14.46 |
| 3-5세 누리 지원금 비율 | - | - | 30.85 | 27.22 | 54.44 | 47.18 | 44.20 | 48.07 | 39.87 | 49.82 |

누리과정으로 인한 수입증가는 5세누리 시 약 2.5~3% 수준이며, 3~4세로 확대되면 그 비중이 증가하여 약 4~9%에 분포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금 대비 누리과정 지원금 비율은 5세누리 시 약 11~17% 수준이며, 3~4세로 확대되면 그 비중이 증가하여 약 27~50%에 분포한다.

6. 농어촌어린이집 모형별 수입과 지출

가. 기본 가정

1) 반별 아동 수

농어촌 지역의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정원 충족률별 반별 아동 수는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의 기본가정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나 79인, 99인 규모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2) 인력구성 및 지원수준

국공립·법인 등의 인건비 지원시설 중 취약지역에 위치한 농어촌어린이집은 기본적인 인건비 지원 외에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인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때 보육교사는 시설 내 평균호봉 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받으며, 취사부는 평가인증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받는다. 모형에서는 보육교사 평균 7호봉 유아반 교사 월지급액의 100%를 추가로 지원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추가로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은 연 240만원(월 20만원)의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다.

〈표 V-6-1〉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인건비 운영 모형

| 구분 | 원장 | 교사 | 취사부 |
|-------|----------------|--|-------------------------|
| 호봉 | 15호봉 | 7호봉 | 5호봉 |
| 지원 비율 | - 인건비 지급액의 80% | - 영아반 인건비 지급액의 80% - 유아반 인건비 지급액의 30% | - 월지급액의 100% |
| 비고 | | - 유아반 교사 1인에 한해 월지급액 100% 지원 | - 1인 지원 - 4대 보험료 미지급 |

나. 수입과 지출구조 추정

1) 79인

2012년 현재 정원 79인 시설은 보육료와 정부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40.9%이고 정원충족률이 85%이면 45.0%이며, 60%가 되면 53.7%로 증가한다.

보육료와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58.4%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서 인건비가 고정될 경우 인건비 비중은 85%시 64.2%이고, 정원 충족률이 60%가 되면 76.5% 수준으로 높아진다.

〈표 V-6-2〉 79인 농어촌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보육료수입 | 17,969 | 57.3 | 15,178 | 53.1 | 10,667 | 44.3 |
| 인건비 보조금 | 13,213 | 42.1 | 13,213 | 46.2 | 13,213 | 54.9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0 | 0.0 |
| 차량운영비 | 200 | 0.6 | 200 | 0.7 | 200 | 0.8 |
| 총액 | 31,382 | 100.0 | 28,591 | 100.0 | 24,080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17,969 | 55.7 | 15,178 | 51.7 | 10,667 | 43.3 |
| 인건비 보조금 | 13,213 | 40.9 | 13,213 | 45.0 | 13,213 | 53.7 |
| 누리 지원금 | 900 | 2.8 | 765 | 2.6 | 540 | 2.2 |
| 차량운영비 | 200 | 0.6 | 200 | 0.7 | 200 | 0.8 |
| 총액 | 32,382 | 100.0 | 29,356 | 100.0 | 24,620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17,969 | 53.1 | 15,178 | 49.4 | 10,667 | 41.7 |
| 인건비 보조금 | 13,213 | 39.0 | 13,213 | 43.0 | 13,213 | 51.7 |
| 누리 지원금 | 2,475 | 7.3 | 2,115 | 6.9 | 1,485 | 5.8 |
| 차량운영비 | 200 | 0.6 | 200 | 0.7 | 200 | 0.8 |
| 총액 | 33,857 | 100.0 | 30,706 | 100.0 | 25,565 | 100.0 |

(표 계속)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지출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인건비 | 18,843 | 60.0 | 18,843 | 65.9 | 18,843 | 78.2 |
| 기타운영비 | 12,540 | 40.0 | 9,749 | 34.1 | 5,238 | 21.8 |
| 총액 | 31,382 | 100.0 | 28,591 | 100.0 | 24,080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
| 인건비 | 18,843 | 58.4 | 18,843 | 64.2 | 18,843 | 76.5 |
| 기타운영비 | 13,440 | 41.6 | 10,514 | 35.8 | 5,778 | 23.5 |
| 총액 | 32,282 | 100.0 | 29,356 | 100.0 | 24,620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인건비 | 18,843 | 55.7 | 18,843 | 61.4 | 18,843 | 73.7 |
| 기타운영비 | 15,015 | 44.3 | 11,864 | 38.6 | 6,723 | 26.3 |
| 총액 | 33,857 | 100.0 | 30,706 | 100.0 | 25,565 | 100.0 |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보육료와 정부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39.0%로 다소 낮아지고, 정원충족률이 85%이면 43.0%이며, 60%가 되면 51.7%로 증가한다. 5세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체 수입의 2.5~2.8% 수준이며, 3~5세 누리과정 지원 시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체수입의 최소 7.3%에서 최대 8.3%를 차지한다.

보육료와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55.7%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서 인건비가 고정될 경우 인건비 비중은 85%시 61.4%이고, 정원 충족률이 60%가 되면 73.75% 수준으로 높아진다.

2) 99인

정원 99인 시설은 2012년 현재 보육료와 정부 보조금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했을 때 37.3%이고 정원충족률이 85%이면 41.1%이며, 60%가 되면 49.5%로 증가한다.

보육료와 보조금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은 정원이 다 찰 경우 60.3% 수준인데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서 인건비가 고정될 경우 인건비 비중은 85%시 66.5%이고, 정원 충족률이 60%가 되면 74.8% 수준으로 높아진다.

〈표 V-6-3〉 99인 농어촌어린이집 누리과정 적용과 정원충족률에 따른 수입과 지출 구조

단위: 천원(%)

| 구분 | 100% | | 85% | | 60%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수입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보육료수입 | 22,131 | 61.2 | 18,810 | 57.3 | 13,359 | 48.8 |
| 인건비 보조금 | 13,828 | 38.2 | 13,828 | 42.1 | 13,828 | 50.5 |
| 누리 지원금 | 0 | 0.0 | 0 | 0.0 | 0 | 0.0 |
| 차량운영비 | 200 | 0.6 | 200 | 0.6 | 200 | 0.7 |
| 총액 | 36,159 | 100.0 | 32,838 | 100.0 | 27,387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22,131 | 59.6 | 18,810 | 55.9 | 13,359 | 47.8 |
| 인건비 보조금 | 13,828 | 37.3 | 13,828 | 41.1 | 13,828 | 49.5 |
| 누리 지원금 | 945 | 2.5 | 810 | 2.4 | 540 | 1.9 |
| 차량운영비 | 200 | 0.5 | 200 | 0.6 | 200 | 0.7 |
| 총액 | 37,104 | 100.0 | 33,648 | 100.0 | 27,927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보육료수입 | 22,131 | 56.1 | 18,810 | 52.8 | 13,359 | 45.6 |
| 인건비 보조금 | 13,828 | 35.1 | 13,828 | 38.8 | 13,828 | 47.2 |
| 누리 지원금 | 3,285 | 8.3 | 2,790 | 7.8 | 1,890 | 6.5 |
| 차량운영비 | 200 | 0.5 | 200 | 0.6 | 200 | 0.7 |
| 총액 | 39,444 | 100.0 | 35,628 | 100.0 | 29,277 | 100.0 |
| 지출 | |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 | | | | |
| 인건비 | 22,391 | 61.9 | 22,391 | 68.2 | 20,893 | 76.3 |
| 기타운영비 | 13,768 | 38.1 | 10,447 | 31.8 | 6,495 | 23.7 |
| 총액 | 36,159 | 100.0 | 32,838 | 100.0 | 27,387 | 100.0 |
| 5세 누리과정 | | | | | | |
| 인건비 | 22,391 | 60.3 | 22,391 | 66.5 | 20,893 | 74.8 |
| 기타운영비 | 14,713 | 39.7 | 11,257 | 33.5 | 7,035 | 25.2 |
| 총액 | 37,104 | 100.0 | 33,648 | 100.0 | 27,927 | 100.0 |
| 3-5세 누리과정 | | | | | | |
| 인건비 | 22,391 | 56.8 | 22,391 | 62.8 | 20,893 | 71.4 |
| 기타운영비 | 17,053 | 43.2 | 13,237 | 37.2 | 8,385 | 28.6 |
| 총액 | 39,444 | 100.0 | 35,628 | 100.0 | 29,277 | 100.0 |

정원 충족률 100%를 가정하면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농어촌어린이집의 전체 수입 중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9인 어린이집은 약 35%이다. 5

세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체 수입의 2.5~2.8% 수준이며, 3~5세 누리과정 지원 시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체수입의 최소 7.3%에서 최대 8.3%를 차지한다.

인건비 보조금의 비율은 누리과정 보조금 미지원 시 99인 38.2%이던 것이 3~5세 누리과정이 실시되는 2013년이면 지원단가를 고정할 경우에 35.1%로 감소한다.

정원충족률 100% 가정 시, 농어촌어린이집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농어촌어린이집의 전체 지출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9인 어린이집은 55.7%이며 99인 어린이집은 56.8%이다.

인건비 비율은 누리과정 보조금 미지원시 79인 60.0%, 99인 시설 61.9%이던 것이 3~5세 누리과정이 실시되는 2013년이면 모든 규모의 시설에서 인건비 비율이 감소한다.

다. 누리지원금 규모

<표 V-6-6>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수입 증가를 나타낸다. 79인 어린이집은 5세 누리 지원으로 수입이 약 3%정도 증가하였고 3,4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약 8%가 증가하는데, 이 증가액수는 인건비 지원 대비비율로 보면 각각 6.81%, 18.73%이다. 해당되는 유아반 인건비만을 기준으로 보면 5세 누리는 약 146%이고, 3,4세 누리 도입 시에는 83%가 된다. 이 비율은 정원충족이 감소하면 이에 따라 감소한다.

99인 어린이집은 5세 누리 지원으로 수입 2.61% 증가하였고 3,4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약 9%가 증가하는데, 이 증가액수는 영유아 인건비 보조금 대비 지원 대비 비율로 보면 각각 6.83%, 23.76%이다. 해당되는 유아반 인건비만을 기준으로 보면 5세 누리는 154%이고, 3,4세 누리 도입 시에는 91%가 된다. 이 비율은 정원충족이 감소하면 이에 따라 감소한다.

<표 V-6-4> 농어촌어린이집 누리지원금 규모

| 구분 | 79인 | | | 99인 | | |
|-------------------|--------|--------|--------|--------|--------|--------|
| | 100% | 85% | 60% | 100% | 85% | 60% |
| 미적용시총수입대비 | | | | | | |
| 5세누리 지원시 총수입 비율 | 103.19 | 102.68 | 102.24 | 102.61 | 102.47 | 101.97 |
| 3-5세누리 지원시 총수입 비율 | 107.89 | 107.40 | 106.17 | 109.08 | 108.50 | 106.90 |
| 인건비보조금대비 | | | | | | |
| 5세누리 지원금 비율 | 6.81 | 5.79 | 4.09 | 6.83 | 5.86 | 3.91 |
| 3-5세누리 지원금 비율 | 18.73 | 16.01 | 11.24 | 23.76 | 20.18 | 13.67 |

단위: %

| | | | | | | |
|--------------------------------|--------|--------|-------|--------|--------|-------|
| 5세반 인건비보조금 대비 5세누리 지원금 비율 | 146.36 | 124.40 | 87.81 | 153.68 | 131.72 | 87.81 |
| 유아반 인건비보조금 대비 3·5세누리 지원금 비율 | 83.09 | 71.00 | 49.85 | 91.41 | 77.63 | 52.59 |

정원 충족률이 85%일 경우에도 5세 누리과정으로 인한 수입 증가는 대체로 약 2.5% 내외이고, 3·4세로 확대되면 규모에 따라서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여 7~8%대에 분포한다. 증가하는 수입의 인건비 지원금 대비 비율은 5세 누리과정 도입 시는 대략 6% 수준이며, 3·4세로 확대되면 규모에 따라서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여 약 16~20%에 분포한다.

정원 충족률이 65%일 경우에도 5세 누리과정으로 인한 수입 증가는 대체로 2%이고, 3·4세로 확대되면 규모에 따라서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여 6~7% 사이에 분포한다. 증가하는 수입의 인건비 지원금 대비 비율은 5세 누리과정 도입 시는 약 4% 정도이며, 3·4세로 확대되면 규모에 따라서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여 11.24~13.67%에 분포한다.

7. 지방정부시책별 차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정책은 매우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고,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비용은 크게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교사 처우 및 특수사업별 인건비 지원, 그리고 운영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모보육료 무상 지원이나 차액지원은 사실 부모 부담을 대신하는 비용이므로 총 수입의 범주에 이미 들어와 있는 비용이다. 지방정부의 인건비 지원도 대부분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사업의 실시와 연계되어 있다. 교사처우개선비, 수당 또는 야간보육교사 인건비와 같이 사용처가 명시된 채 지원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보육교사나 장애아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교사수당은 이를 빌미로 급여를 깎지 않는 한 어린이집 운영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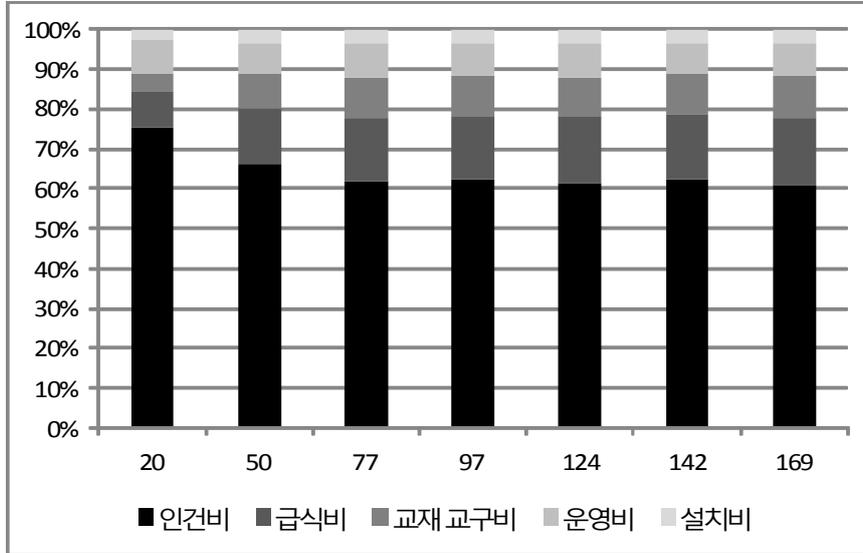
다만, 어린이집에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급간식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지원금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규모가 크지 않다. 교재교구비는 대부분 년 1회 지원된다. 차량운영비도 인천에서 장애아 시설에 한하여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이외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뿐이다. 이러한 비용은 인건비 대비 비율을 매우 낮다.

따라서 특수보육시책을 이유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비율 조정 여지는 매우 낮다.

〈표 V-7-1〉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 중 일반 운영비 지원 사례

| 구분 | 운영비 지원 |
|----|---|
| 서울 | - 민간·가정·부모협동 보육시설에 0세아반(장애아반) 월 20만원, 1, 2세아반 월 15만원 지원. 현원 40인 미만 시설의 경우 3개 반 범위 내에서 지원. |
| 인천 | - 난방 연료비 및 여름철 냉방기기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년 40만원부터 200만원 지원.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연 200만원 지원. 평가인증 미통과하고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미지원. -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강화군, 옹진군 해당)으로 시설당 월 300천원을 추가 지원. 2013년부터는 평가인증을 통과를 전제로 함. - 장애아전담시설에는 차량운영비 80만원 추가 지원 |
| 경기 | - 교재교구비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120만원이고 영아전담은 61인이상 120만원, 60인 이하 100만원임. |
| 충남 | - 영유아 급·간식비를 지원 - 인건비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추가 지원 -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을 지원. |
| 전북 | -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냉난방비 지원, - 시단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
| 경북 | - 정부지원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시설당 43만원을 지원 - 소득 하위 70% 저소득보육 이동간식비를 하루 500원 지원. - 어린이집차량유지비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에 한하여 연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문화어린이집에도 차량운영비를 지원 - 1인이상 다문화아동재원시설에 1인당 1만원을 지원 - 보육시설환경개선비로 평가인증통과시설, 신청 당해연도에 100만원 지원 |



자료: 조세연구원(2005)

[그림 V-8-1] 보육시설 규모별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 구성

2005년 조세연구원이 산출한 보육비용 자료에서도 어린이집 규모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60%이상이다(표 IV-8-2, 그림 IV-8-1 참조).

그러나 각반별로 정원충족률이 60% 정도 이하로 낮아지면 인건비 지원이 중지되기 때문에 교사수를 줄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반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다만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 어린이집 공간 규모에 비하여 인력 규모가 적으므로 각종 기관 유지에 필요한 업무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교사 확보에 애로가 생기게 된다.

VI. 정책 대안 검토

1.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 정책방안을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첫째는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최소한으로 개선한다는 전제이다. 즉, 누리과정 지원으로 추가 지원되는 금액을 최소한만 교재교구 등으로 사용하고 일정 부분을 절약한다는 관점이다.

둘째는 다른 하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현재보다는 훨씬 개선되어야 한다는 전제이다. 이는 필요한 교재교구는 물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추가 배치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전제이다

2. 인건비 지원 비율 조정 가능성 검토

가. 기본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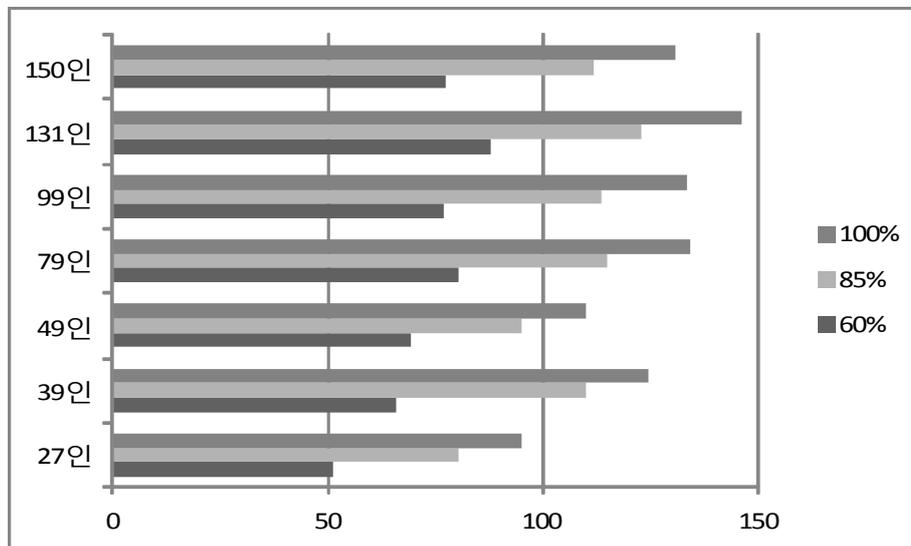
제4장 1절에서는 국공립, 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2012년 기준으로 3-5세 누리과 도입된다고 가정하고 추정된 수입의 증가를 토대로 인건비 감축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지출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나. 조정 대상

<표 VI-2-1>를 보면 총 누리과정 지원금이 전체 인건비 지원금 및 유아반 인건비 지원 대비 비율을 나타낸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반구성, 그리고 정원 충족률에 의한 차이는 있으나 상당한 정도의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고, 이 수준은 인건비 지원금의 상당 수준이다.

〈표 VI-2-1〉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규모별 각 기준 대비 3-5세 누리지원금 비율: 2012년 수준
단위: %

| 구분 | 100% | | | 85% | | | 60% | | |
|------|--------|------------|----------------|--------|------------|----------------|--------|------------|----------------|
| | 총수입 대비 | 인건비 지원금 대비 | 유아반 인건비 지원금 대비 | 총수입 대비 | 인건비 지원금 대비 | 유아반 인건비 지원금 대비 | 총수입 대비 | 인건비 지원금 대비 | 유아반 인건비 지원금 대비 |
| 20인 | 100 | 0 | 0 | 100 | 0 | 0 | 100 | 0 | 0 |
| 27인 | 103.58 | 6.35 | 95.13 | 103.23 | 5.37 | 80.5 | 102.32 | 3.42 | 51.23 |
| 39인 | 103.56 | 7.05 | 124.4 | 103.42 | 6.22 | 109.77 | 102.35 | 3.73 | 65.86 |
| 49인 | 106.39 | 13.74 | 109.77 | 106.01 | 11.91 | 95.13 | 105.13 | 8.7 | 69.52 |
| 79인 | 108.24 | 20.49 | 134.16 | 107.76 | 17.51 | 114.65 | 106.53 | 12.29 | 80.5 |
| 99인 | 109.43 | 25.88 | 133.55 | 108.86 | 21.98 | 113.43 | 107.25 | 14.89 | 76.84 |
| 131인 | 110.32 | 30.1 | 146.36 | 109.61 | 25.29 | 122.94 | 108.36 | 18.06 | 87.81 |
| 150인 | 112.81 | 43.61 | 130.68 | 112.24 | 37.33 | 111.86 | 110.53 | 25.82 | 77.36 |



[그림 VI-2-1]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규모별 각 기준 대비 3-5세 누리지원금 유아반 인건비 지원금 대비 비율

그러면 인건비 지원 수준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가 과제인데, 어린이집 단위에서 영아반 인건비 조정까지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유아반 인건비 지원 비율만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현재 표준보육비용 단가는 각 반이 독립 재정 방식으로 구성한 하였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수입 구조에 영향을 안 받는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다. 조정 수준

평균 정원 대비 현원비율이 85% 이상인 수준인 경우에는 유아반 인건비 대비 수입 증가가 80~112%이다. 즉, 27인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유아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누리과정 지원 이전의 수준으로 반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소규모 어린이집을 고려하고 교재교구 등 누리과정 운영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감을 감안하여도 50%를 낮춘 15% 정도로의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정원 충족률이 60% 수준으로 낮은 어린이집은 유아반 인건비 지원금의 50~70%의 수입 증가가 있으므로 33%를 낮춘 20% 정도의 인건비 지원으로도 수입 구조 상으로는 종전보다 낮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원 충족률이 높은 어린이집과는 차등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누리과정 보육료가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현재 지원 수준의 50%까지 증가될 예정이므로 이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완전 중복 지원이 된다.

라. 정원충족률 낮은 어린이집 차등 지원 방안

특히 농어촌 등에서 아동수가 감소하면서 운영이 어렵다는 어린이집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원 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은 60%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그 이유는 인건비 지원 기준이 되는 최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아동수 60% 기준이 되므로 그 이하로 낮아지면 교사수를 줄이기 때문이다.

<표 VI-2-2>를 보면 기본 어린이집 모형에서 전체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원충족률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정원충족률이 85%이면 소규모 어린이집은 인건비 비율이 70% 이상이 되고 정원충족률이 60%이면 모두 인건비 비율이 70% 이상이 되고 최대는 91%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 이들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의 지원이 더 있어야 정상적 수준의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았다. 필요한 추가 운영비는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여 추정하고, 이를 인건비 지원 대비 비율로 제시하였다.

〈표 VI-2-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시설규모 및 정원충족률별 3-5세 누리과정 도입시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 구분 | 단위: % | | |
|------|-------|------|------|
| | 100% | 85% | 60% |
| 20인 | 74.8 | 79.6 | 88.9 |
| 27인 | 75.0 | 80.3 | 91.5 |
| 39인 | 66.3 | 72.3 | 83.4 |
| 49인 | 65.6 | 71.4 | 84.1 |
| 79인 | 57.9 | 64.2 | 77.8 |
| 99인 | 58.8 | 65.3 | 74.8 |
| 131인 | 55.1 | 61.5 | 71.4 |
| 150인 | 53.5 | 60.0 | 75.8 |

소규모 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 60%인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100% 대비 상대적 운영비 부족액의 인건비 대비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15% 미만이다. 이들은 영아반 비율이 높고 유아반은 없거나 있어도 한반 정도이다(표 VI-2-3 참조).

〈표 VI-2-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규모 및 정원충족률별 운영비 부족 정도: 39인 이하
단위: 천원, %

| 구분 | 100% | 85% | 60% | |
|---------------|--------|--------|----------|-----------------|
| 20인 | | | | |
| 기타운영비 총액 | 4,275 | 3,248 | 1,588 | - 영아반 4반 |
| 1인당 기타운영비 | 213.75 | 191.06 | 132.33 | - 유아반 없음 |
| 100%와의 차 | 0 | 22.69 | 81.42 | |
| 총 부족액 | 0 | 385.75 | 977 | |
| 인건비 보조금 대비 비율 | 0.00 | 0.04 | 0.10 | - 인건보조금: 10,235 |
| 27인 | | | | |
| 기타운영비 총액 | 4,234 | 3,117 | 1,183 | - 영아반 3반 |
| 1인당 기타운영비 | 156.81 | 135.52 | 73.94 | - 유아반 1반 |
| 100%와의 차 | 0 | 21.29 | 82.88 | |
| 총 부족액 | 0 | 489.74 | 1,326.04 | |
| 인건비 보조금 대비 비율 | 0.00 | 0.05 | 0.14 | - 인건보조금: 9,210 |
| 39인 | | | | |
| 기타운영비 총액 | 7,507 | 5,649 | 2,931 | - 영아반 4반 |
| 1인당 기타운영비 | 192.49 | 171.18 | 127.43 | - 유아반 1반 |
| 100%와의 차 | 0 | 21.31 | 65.05 | |
| 총 부족액 | 0 | 703.08 | 1,496.21 | |
| 인건비 보조금 대비 비율 | 0.00 | 0.06 | 0.14 | - 인건보조금: 10,849 |

<표 VI-2-4>에서 49인 이상 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 100% 대비 상대적 운영비 부족액의 인건비 대비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20% 정도이고 150인 어린이집은 4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의 반 구성과 관계가 있다. 150인 어린이집 모형은 유아반이 영아반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을 호소하는 정도가 더 심하다.

<표 VI-2-4>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규모 및 정원충족률별 운영비 부족 정도: 49인 이상

단위: 천원, %

| 구분 | 100% | 85% | 60% | 비고 |
|---------------|--------|----------|----------|-----------------|
| 49인 | | | | |
| 기타운영비 총액 | 7,740 | 5,893 | 2,788 | - 영아반 3반 |
| 1인당 기타운영비 | 157.96 | 140.31 | 92.93 | - 유아반 2반 |
| 100%와의 차이 | - | 17.65 | 65.03 | |
| 총 부족액 | - | 741.29 | 1,950.78 | |
| 인건비 보조금 대비 비율 | - | 0.08 | 0.20 | - 인건보조금: 9825 |
| 79인 | | | | |
| 기타운영비 총액 | 13,681 | 10,530 | 5,389 | - 영아반 4반 |
| 1인당 기타운영비 | 173.18 | 157.16 | 114.66 | - 유아반 3반 |
| 100%와의 차 | 0 | 16.01 | 58.52 | |
| 총 부족액 | 0 | 1,072.87 | 2,750.33 | |
| 인건비 보조금 대비 비율 | 0.00 | 0.09 | 0.23 | - 인건보조금: 12,079 |
| 99인 | | | | |
| 기타운영비 총액 | 15,719 | 11,903 | 7,051 | - 영아반 4반 |
| 1인당 기타운영비 | 158.78 | 141.7 | 119.51 | - 유아반 5반 |
| 100%와의 차 | | 17.08 | 39.27 | |
| 총 부족액 | | 1,434.33 | 2,316.89 | |
| 인건비 보조금 대비 비율 | | 0.11 | 0.18 | - 인건보조금: 12,694 |
| 131인 | | | | |
| 기타운영비 총액 | 12,694 | 12,694 | 12,694 | |
| 기타운영비 총액 | 21,626 | 16,616 | 10,008 | - 영아반 5반 |
| 1인당 기타운영비 | 165.08 | 149.69 | 126.68 | - 유아반 5반 |
| 100%와의 차 | 0 | 15.39 | 38.4 | |
| 총 부족액 | 0 | 1,708.32 | 3,033.63 | |
| 인건비 보조금 대비 비율 | 0.00 | 0.11 | 0.20 | - 인건보조금: 14,949 |
| 150인 | | | | |
| 기타운영비 총액 | 23,052 | 17,663 | 8,449 | - 영아반 3반 |
| 1인당 기타운영비 | 153.68 | 137.99 | 93.88 | - 유아반 7반 |
| 100%와의 차 | 0 | 15.69 | 59.8 | |
| 총 부족액 | 0 | 2,008.04 | 5,382.20 | |
| 인건비 보조금 대비 비율 | 0.00 | 0.16 | 0.42 | - 인건보조금: 12,899 |

현재 영아는 80%, 유아는 30%를 지원하는데 각 어린이집별로 사정이 다르므로 운영비 부족분을 일률적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그러면 영아는 100%를 넘는 경우도 발생하고 유아반 인건비 비율로만 조정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인건비 지원 비율 자체의 조정보다는 총액대비 적정 비율은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영아반과 유아반의 구성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이미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는 현재 교사 1인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교사 중 1인 인건비 30%를 100%로 확대한 것이므로 실제로 교사 인건비의 70%를 더 지원하는 셈이다. 액수로는 7호봉을 적용하면 122만원 정도가 된다.

<표>를 보면 부족한 운영비가 정원 충족률 85%에서는 정원 150인이 되어야 200만원 정도 부족하고, 정원 충족률 60%가 되면 정상적 운영에 비하여 200만원~500만원이 운영비로 부족하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농어촌 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시설규모별로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어린이집은 1인으로 하되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100인 미만까지는 2인, 그 이상은 3인 등으로 그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기준

인건비 지원시설과 민간 어린이집의 수입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3 종류로 가정하고, 누리과정 미적용시 및 5세 누리과정, 그리고 3-5세 누리과정 도입시 수입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금 수준은 2012년 기준을 적용하였다.

민간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39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39인은 영아반이 4반, 유아반이 1반으로 총 5반으로 가정했을 때, 총 수입을 비교를 해보면 국공립 대비 비율이 누리과정 미적용, 5세누리, 3-5세 누리과정 적용시 모두 정원 대비 현원율이 100%이면 71~72%, 85^이면 65% 내외이고 60% 수준을 낮아지면 50% 아래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지출을 이러한 비율에 맞추어서 낮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원충족률이 100%이어도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는 국공립 대비 70% 수준으로 밖에는 지출할 수 없다.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기준이 7호봉이라면 월 지급액이 1,748,950원인데 총 수입 비율이 70%대임으로 그 비율을 적용을 하면 1,224,265원으로 1호봉인 1,392,2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의 인건비 기준선을 1호봉 이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고, 그 이하를 적절한 가이드라인으로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별활동 등의 부가적 수입이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언급하는 것 역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현재 보육료와 운영비 수준으로 지원된다고하여도 수입 증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리적용 이전의 국공립 어린이집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 2016년 누리과정 지원 수준이 30만원으로 증가한다면 이때는 인건비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 VI-2-6>는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7호봉을 기준으로, 민간개인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3호봉을 기준으로 지출구조를 비교한 것인데 민간개인어린이집의 경우에 3호봉을 지급할 경우 수입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빠져나가고 사실상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된다. 따라서 3호봉을 맞추어 주기 어렵다. 부족한 부분은 특별활동이나 기타운영비를 수납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욱이 정원충족률이 낮아질 경우에는 더욱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표 VI-2-5> 어린이집 규모, 정원충족률 및 누리과정 도입별 수입구조 비교

단위: 천원, %

| 구분 | 100% | | | 85% | | | 60% | | |
|------|----------|---------|-----------|----------|---------|-----------|----------|---------|-----------|
| | 누리과정 미적용 | 5세 누리과정 | 3-5세 누리과정 | 누리과정 미적용 | 5세 누리과정 | 3-5세 누리과정 | 누리과정 미적용 | 5세 누리과정 | 3-5세 누리과정 |
| 20인 | 62.32 | 62.32 | 62.32 | 57.63 | 57.63 | 57.63 | 46.13 | 46.13 | 46.13 |
| 27인 | 63.75 | 63.75 | 65.00 | 58.73 | 58.73 | 60.02 | 47.44 | 47.44 | 48.63 |
| 39인 | 70.66 | 70.66 | 71.67 | 64.77 | 64.77 | 65.94 | 54.55 | 54.55 | 55.60 |
| 49인 | 74.12 | 74.12 | 75.67 | 68.56 | 68.56 | 70.34 | 56.87 | 56.87 | 58.98 |
| 79인 | 81.30 | 81.84 | 82.72 | 75.60 | 76.27 | 77.36 | 63.73 | 64.58 | 65.96 |
| 99인 | 84.91 | 85.31 | 86.21 | 80.64 | 81.12 | 82.21 | 69.39 | 70.01 | 71.46 |
| 131인 | 88.89 | 89.14 | 89.93 | 84.41 | 84.73 | 85.78 | 72.92 | 73.51 | 75.01 |
| 150인 | 92.52 | 92.67 | 93.37 | 89.01 | 89.23 | 90.20 | 78.49 | 78.85 | 80.54 |

〈표 VI-2-6〉 39인 이하 어린이집 규모 및 누리과정 도입별 지출구조: 정원충족률 100%

단위: 천원, %

| 구분 | 누리과정 미적용 | | 5세누리과정 | | 3-5세누리과정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20인 | | | | | | |
| 국공립 | | | | | | |
| 인건비(7호봉) | 12,693 | 74.8 | 12,693 | 74.8 | 12,693 | 74.8 |
| 기타운영비 | 4,275 | 25.2 | 4,275 | 25.2 | 4,275 | 25.2 |
| 총액 | 16,969 | 100.0 | 16,969 | 100.0 | 16,969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3호봉) | 9,559 | 90.4 | 9,559 | 90.4 | 9,559 | 90.4 |
| 기타운영비 | 1,016 | 9.6 | 1,016 | 9.6 | 1,016 | 9.6 |
| 총액 | 10,575 | 100.0 | 10,575 | 100.0 | 10,575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2호봉) | 9,352 | 88.4 | 9,352 | 88.4 | 9,352 | 88.4 |
| 기타운영비 | 1,223 | 11.6 | 1,223 | 11.6 | 1,223 | 11.6 |
| 총액 | 10,575 | 100.0 | 10,575 | 100.0 | 10,575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1호봉) | 9,163 | 86.6 | 9,163 | 86.6 | 9,163 | 86.6 |
| 기타운영비 | 1,412 | 13.4 | 1,412 | 13.4 | 1,412 | 13.4 |
| 총액 | 10,575 | 100.0 | 10,575 | 100.0 | 10,575 | 100.0 |
| 27인 | | | | | | |
| 국공립 | | | | | | |
| 인건비(7호봉) | 12,693 | 77.7 | 12,693 | 77.7 | 12,693 | 75.0 |
| 기타운영비 | 3,649 | 22.3 | 3,649 | 22.3 | 4,234 | 25.0 |
| 총액 | 16,343 | 100.0 | 16,343 | 100.0 | 16,928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3호봉) | 10,939 | 105.0 | 10,939 | 105.0 | 10,939 | 99.4 |
| 기타운영비 | -520 | -5.0 | -520 | -5.0 | 65 | 0.6 |
| 총액 | 10,419 | 100.0 | 10,419 | 100.0 | 11,004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2호봉) | 10,732 | 103.0 | 10,732 | 103.0 | 10,732 | 97.5 |
| 기타운영비 | -313 | -3.0 | -313 | -3.0 | 272 | 2.5 |
| 총액 | 10,419 | 100.0 | 10,419 | 100.0 | 11,004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1호봉) | 10,543 | 101.2 | 10,543 | 101.2 | 10,543 | 95.8 |
| 기타운영비 | -124 | -1.2 | -124 | -1.2 | 461 | 4.2 |
| 총액 | 10,419 | 100.0 | 10,419 | 100.0 | 11,004 | 100.0 |
| 39인 | | | | | | |
| 국공립 | | | | | | |
| 인건비(7호봉) | 14,743 | 68.6 | 14,743 | 68.6 | 14,743 | 66.3 |
| 기타운영비 | 6,742 | 31.4 | 6,742 | 31.4 | 7,507 | 33.7 |

| | | | | | | |
|----------|--------|-------|--------|-------|--------|-------|
| 총액 | 21,485 | 100.0 | 21,485 | 100.0 | 22,250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3호봉) | 12,670 | 83.5 | 12,670 | 83.5 | 12,670 | 79.5 |
| 기타운영비 | 2,512 | 16.5 | 2,512 | 16.5 | 3,277 | 20.5 |
| 총액 | 15,182 | 100.0 | 15,182 | 100.0 | 15,947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2호봉) | 12,411 | 81.7 | 12,411 | 81.7 | 12,411 | 77.8 |
| 기타운영비 | 2,771 | 18.3 | 2,771 | 18.3 | 3,536 | 22.2 |
| 총액 | 15,182 | 100.0 | 15,182 | 100.0 | 15,947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1호봉) | 12,175 | 80.2 | 12,175 | 80.2 | 12,175 | 76.3 |
| 기타운영비 | 3,007 | 19.8 | 3,007 | 19.8 | 3,772 | 23.7 |
| 총액 | 15,182 | 100.0 | 15,182 | 100.0 | 15,947 | 100.0 |

〈표 VI-2-7〉 49인 이상 어린이집 규모 및 누리과정 도입별 지출구조: 정원충족률 100%

단위: 천원, %

| 구분 | 누리과정 미적용 | | 5세누리과정 | | 3-5세누리과정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49인 | | | | | | |
| 국공립 | | | | | | |
| 인건비(7호봉) | 14,743 | 69.8 | 14,743 | 69.8 | 14,743 | 65.6 |
| 기타운영비 | 6,390 | 30.2 | 6,390 | 30.2 | 7,740 | 34.4 |
| 총액 | 21,134 | 100.0 | 21,134 | 100.0 | 22,484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3호봉) | 12,670 | 80.9 | 12,670 | 80.9 | 12,670 | 74.5 |
| 기타운영비 | 2,994 | 19.1 | 2,994 | 19.1 | 4,344 | 25.5 |
| 총액 | 15,664 | 100.0 | 15,664 | 100.0 | 17,014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2호봉) | 12,411 | 79.2 | 12,411 | 79.2 | 12,411 | 72.9 |
| 기타운영비 | 3,253 | 20.8 | 3,253 | 20.8 | 4,603 | 27.1 |
| 총액 | 15,664 | 100.0 | 15,664 | 100.0 | 17,014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1호봉) | 12,175 | 77.7 | 12,175 | 77.7 | 12,175 | 71.6 |
| 기타운영비 | 3,489 | 22.3 | 3,489 | 22.3 | 4,839 | 28.4 |
| 총액 | 15,664 | 100.0 | 15,664 | 100.0 | 17,014 | 100.0 |
| 79인 | | | | | | |
| 국공립 | | | | | | |
| 인건비(7호봉) | 18,843 | 62.7 | 18,843 | 60.9 | 18,843 | 57.9 |
| 기타운영비 | 11,206 | 37.3 | 12,106 | 39.1 | 13,681 | 42.1 |
| 총액 | 30,048 | 100.0 | 30,948 | 100.0 | 32,523 | 100.0 |

| | | | | | | |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3호봉) | 16,132 | 66.0 | 16,132 | 63.7 | 16,132 | 60.0 |
| 기타운영비 | 8,297 | 34.0 | 9,197 | 36.3 | 10,772 | 40.0 |
| 총액 | 24,429 | 100.0 | 25,329 | 100.0 | 26,904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2호봉) | 15,769 | 64.6 | 15,769 | 62.3 | 15,769 | 58.6 |
| 기타운영비 | 8,660 | 35.4 | 9,560 | 37.7 | 11,135 | 41.4 |
| 총액 | 24,429 | 100.0 | 25,329 | 100.0 | 26,904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1호봉) | 15,438 | 63.2 | 15,438 | 61.0 | 15,438 | 57.4 |
| 기타운영비 | 8,991 | 36.8 | 9,891 | 39.0 | 11,466 | 42.6 |
| 총액 | 24,429 | 100.0 | 25,329 | 100.0 | 26,904 | 100.0 |
| 99인 | | | | | | |
| 국공립 | | | | | | |
| 인건비(7호봉) | 22,391 | 64.3 | 22,391 | 62.6 | 22,391 | 58.8 |
| 기타운영비 | 12,434 | 35.7 | 13,379 | 37.4 | 15,719 | 41.2 |
| 총액 | 34,825 | 100.0 | 35,770 | 100.0 | 38,110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3호봉) | 19,242 | 65.1 | 19,242 | 63.1 | 19,242 | 58.6 |
| 기타운영비 | 10,328 | 34.9 | 11,273 | 36.9 | 13,613 | 41.4 |
| 총액 | 29,570 | 100.0 | 30,515 | 100.0 | 32,855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2호봉) | 18,828 | 63.7 | 18,828 | 61.7 | 18,828 | 57.3 |
| 기타운영비 | 10,742 | 36.3 | 11,687 | 38.3 | 14,027 | 42.7 |
| 총액 | 29,570 | 100.0 | 30,515 | 100.0 | 32,855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1호봉) | 18,450 | 62.4 | 18,450 | 60.5 | 18,450 | 56.2 |
| 기타운영비 | 11,120 | 37.6 | 12,065 | 39.5 | 14,405 | 43.8 |
| 총액 | 29,570 | 100.0 | 30,515 | 100.0 | 32,855 | 100.0 |
| 131인 | | | | | | |
| 국공립 | | | | | | |
| 인건비(7호봉) | 26,490 | 60.7 | 26,490 | 59.4 | 26,490 | 55.1 |
| 기타운영비 | 17,126 | 39.3 | 18,116 | 40.6 | 21,626 | 44.9 |
| 총액 | 43,616 | 100.0 | 44,606 | 100.0 | 48,116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3호봉) | 22,704 | 58.6 | 22,704 | 57.1 | 22,704 | 52.5 |
| 기타운영비 | 16,067 | 41.4 | 17,057 | 42.9 | 20,567 | 47.5 |
| 총액 | 38,771 | 100.0 | 39,761 | 100.0 | 43,271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2호봉) | 22,186 | 57.2 | 22,186 | 55.8 | 22,186 | 51.3 |
| 기타운영비 | 16,585 | 42.8 | 17,575 | 44.2 | 21,085 | 48.7 |
| 총액 | 38,771 | 100.0 | 39,761 | 100.0 | 43,271 | 100.0 |

| | | | | | | |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1호봉) | 21,713 | 56.0 | 21,713 | 54.6 | 21,713 | 50.2 |
| 기타운영비 | 17,058 | 44.0 | 18,048 | 45.4 | 21,558 | 49.8 |
| 총액 | 38,771 | 100.0 | 39,761 | 100.0 | 43,271 | 100.0 |
| 150인 | | | | | | |
| 국공립 | | | | | | |
| 인건비(7호봉) | 26,490 | 60.3 | 26,490 | 59.0 | 26,490 | 53.5 |
| 기타운영비 | 17,427 | 39.7 | 18,372 | 41.0 | 23,052 | 46.5 |
| 총액 | 43,917 | 100.0 | 44,862 | 100.0 | 49,542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3호봉) | 22,704 | 55.9 | 22,704 | 54.6 | 22,704 | 49.1 |
| 기타운영비 | 17,926 | 44.1 | 18,871 | 45.4 | 23,551 | 50.9 |
| 총액 | 40,630 | 100.0 | 41,575 | 100.0 | 46,255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2호봉) | 22,186 | 54.6 | 22,186 | 53.4 | 22,186 | 48.0 |
| 기타운영비 | 18,444 | 45.4 | 19,389 | 46.6 | 24,069 | 52.0 |
| 총액 | 40,630 | 100.0 | 41,575 | 100.0 | 46,255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1호봉) | 21,713 | 53.4 | 21,713 | 52.2 | 21,713 | 46.9 |
| 기타운영비 | 18,917 | 46.6 | 19,862 | 47.8 | 24,542 | 53.1 |
| 총액 | 40,630 | 100.0 | 41,575 | 100.0 | 46,255 | 100.0 |

<표 VI-2-8> 39인 이하 어린이집 규모 및 누리과정 도입별 지출구조: 정원충족률 85%

단위: 천원, %

| 구분 | 누리과정 미적용 | | 5세누리과정 | | 3-5세누리과정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20인 | | | | | | |
| 국공립 | | | | | | |
| 인건비(7호봉) | 12,693 | 79.6 | 12,693 | 79.6 | 12,693 | 79.6 |
| 기타운영비 | 3,248 | 20.4 | 3,248 | 20.4 | 3,248 | 20.4 |
| 총액 | 15,942 | 100.0 | 15,942 | 100.0 | 15,942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3호봉) | 9,559 | 104.1 | 9,559 | 104.1 | 9,559 | 104.1 |
| 기타운영비 | -372 | -4.1 | -372 | -4.1 | -372 | -4.1 |
| 총액 | 9,187 | 100.0 | 9,187 | 100.0 | 9,187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2호봉) | 9,352 | 101.8 | 9,352 | 101.8 | 9,352 | 101.8 |
| 기타운영비 | -165 | -1.8 | -165 | -1.8 | -165 | -1.8 |
| 총액 | 9,187 | 100.0 | 9,187 | 100.0 | 9,187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 | | | | | |
|----------|--------|-------|--------|-------|--------|-------|
| 인건비(1호봉) | 9,163 | 99.7 | 9,163 | 99.7 | 9,163 | 99.7 |
| 기타운영비 | 24 | 0.3 | 24 | 0.3 | 24 | 0.3 |
| 총액 | 9,187 | 100.0 | 9,187 | 100.0 | 9,187 | 100.0 |
| 27인 | | | | | | |
| 국공립 | | | | | | |
| 인건비(7호봉) | 12,693 | 82.9 | 12,693 | 82.9 | 12,693 | 80.3 |
| 기타운영비 | 2,622 | 17.1 | 2,622 | 17.1 | 3,117 | 19.7 |
| 총액 | 15,316 | 100.0 | 15,316 | 100.0 | 15,811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3호봉) | 10,939 | 121.6 | 10,939 | 121.6 | 10,939 | 115.3 |
| 기타운영비 | -1,944 | -21.6 | -1,944 | -21.6 | -1,449 | -15.3 |
| 총액 | 8,995 | 100.0 | 8,995 | 100.0 | 9,490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2호봉) | 10,732 | 119.3 | 10,732 | 119.3 | 10,732 | 113.1 |
| 기타운영비 | -1,737 | -19.3 | -1,737 | -19.3 | -1,242 | -13.1 |
| 총액 | 8,995 | 100.0 | 8,995 | 100.0 | 9,490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1호봉) | 10,543 | 117.2 | 10,543 | 117.2 | 10,543 | 111.1 |
| 기타운영비 | -1,548 | -17.2 | -1,548 | -17.2 | -1,053 | -11.1 |
| 총액 | 8,995 | 100.0 | 8,995 | 100.0 | 9,490 | 100.0 |
| 39인 | | | | | | |
| 국공립 | | | | | | |
| 인건비(7호봉) | 14,743 | 74.8 | 14,743 | 74.8 | 14,743 | 72.3 |
| 기타운영비 | 4,974 | 25.2 | 4,974 | 25.2 | 5,649 | 27.7 |
| 총액 | 19,717 | 100.0 | 19,717 | 100.0 | 20,392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3호봉) | 12,670 | 99.2 | 12,670 | 99.2 | 12,670 | 94.2 |
| 기타운영비 | 101 | 0.8 | 101 | 0.8 | 776 | 5.8 |
| 총액 | 12,771 | 100.0 | 12,771 | 100.0 | 13,446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2호봉) | 12,411 | 97.2 | 12,411 | 97.2 | 12,411 | 92.3 |
| 기타운영비 | 360 | 2.8 | 360 | 2.8 | 1,035 | 7.7 |
| 총액 | 12,771 | 100.0 | 12,771 | 100.0 | 13,446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1호봉) | 12,175 | 95.3 | 12,175 | 95.3 | 12,175 | 90.5 |
| 기타운영비 | 596 | 4.7 | 596 | 4.7 | 1,271 | 9.5 |
| 총액 | 12,771 | 100.0 | 12,771 | 100.0 | 13,446 | 100.0 |

<표 VI-2-9> 49인 이상 어린이집 규모 및 누리과정 도입별 지출구조: 정원충족률 85%

단위: 천원, %

| 구분 | 누리과정 미적용 | | 5세누리과정 | | 3·5세누리과정 | |
|------------|----------|-------|--------|-------|----------|-------|
|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49인 | | | | | | |
| 국공립 | | | | | | |
| 인건비(7호봉) | 14,743 | 75.7 | 14,743 | 75.7 | 14,743 | 71.4 |
| 기타운영비 | 4,723 | 24.3 | 4,723 | 24.3 | 5,893 | 28.6 |
| 총액 | 19,467 | 100.0 | 19,467 | 100.0 | 20,637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3호봉) | 12,670 | 94.9 | 12,670 | 94.9 | 12,670 | 87.3 |
| 기타운영비 | 677 | 5.1 | 677 | 5.1 | 1,847 | 12.7 |
| 총액 | 13,347 | 100.0 | 13,347 | 100.0 | 14,517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2호봉) | 12,411 | 93.0 | 12,411 | 93.0 | 12,411 | 85.5 |
| 기타운영비 | 936 | 7.0 | 936 | 7.0 | 2,106 | 14.5 |
| 총액 | 13,347 | 100.0 | 13,347 | 100.0 | 14,517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1호봉) | 12,175 | 91.2 | 12,175 | 91.2 | 12,175 | 83.9 |
| 기타운영비 | 1,172 | 8.8 | 1,172 | 8.8 | 2,342 | 16.1 |
| 총액 | 13,347 | 100.0 | 13,347 | 100.0 | 14,517 | 100.0 |
| 79인 | | | | | | |
| 국공립 | | | | | | |
| 인건비(7호봉) | 18,843 | 69.1 | 18,843 | 67.2 | 18,843 | 64.2 |
| 기타운영비 | 8,415 | 30.9 | 9,180 | 32.8 | 10,530 | 35.8 |
| 총액 | 27,257 | 100.0 | 28,022 | 100.0 | 29,372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3호봉) | 16,132 | 78.3 | 16,132 | 75.5 | 16,132 | 71.0 |
| 기타운영비 | 4,475 | 21.7 | 5,240 | 24.5 | 6,590 | 29.0 |
| 총액 | 20,607 | 100.0 | 21,372 | 100.0 | 22,722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2호봉) | 15,769 | 76.5 | 15,769 | 73.8 | 15,769 | 69.4 |
| 기타운영비 | 4,838 | 23.5 | 5,603 | 26.2 | 6,953 | 30.6 |
| 총액 | 20,607 | 100.0 | 21,372 | 100.0 | 22,722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1호봉) | 15,438 | 74.9 | 15,438 | 72.2 | 15,438 | 67.9 |
| 기타운영비 | 5,169 | 25.1 | 5,934 | 27.8 | 7,284 | 32.1 |
| 총액 | 20,607 | 100.0 | 21,372 | 100.0 | 22,722 | 100.0 |
| 99인 | | | | | | |
| 국공립 | | | | | | |
| 인건비(7호봉) | 22,391 | 71.1 | 22,391 | 69.3 | 22,391 | 65.3 |
| 기타운영비 | 9,113 | 28.9 | 9,923 | 30.7 | 11,903 | 34.7 |

| | | | | | | |
|----------|--------|-------|--------|-------|--------|-------|
| 총액 | 31,504 | 100.0 | 32,314 | 100.0 | 34,294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3호봉) | 19,242 | 75.7 | 19,242 | 73.4 | 19,242 | 68.2 |
| 기타운영비 | 6,162 | 24.3 | 6,972 | 26.6 | 8,952 | 31.8 |
| 총액 | 25,404 | 100.0 | 26,214 | 100.0 | 28,194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2호봉) | 18,828 | 74.1 | 18,828 | 71.8 | 18,828 | 66.8 |
| 기타운영비 | 6,576 | 25.9 | 7,386 | 28.2 | 9,366 | 33.2 |
| 총액 | 25,404 | 100.0 | 26,214 | 100.0 | 28,194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1호봉) | 18,450 | 72.6 | 18,450 | 70.4 | 18,450 | 65.4 |
| 기타운영비 | 6,954 | 27.4 | 7,764 | 29.6 | 9,744 | 34.6 |
| 총액 | 25,404 | 100.0 | 26,214 | 100.0 | 28,194 | 100.0 |
| 131인 | | | | | | |
| 국공립 | | | | | | |
| 인건비(7호봉) | 26,490 | 67.4 | 26,490 | 66.0 | 26,490 | 61.5 |
| 기타운영비 | 12,836 | 32.6 | 13,646 | 34.0 | 16,616 | 38.5 |
| 총액 | 39,326 | 100.0 | 40,136 | 100.0 | 43,106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3호봉) | 22,704 | 68.4 | 22,704 | 66.8 | 22,704 | 61.4 |
| 기타운영비 | 10,492 | 31.6 | 11,302 | 33.2 | 14,272 | 38.6 |
| 총액 | 33,196 | 100.0 | 34,006 | 100.0 | 36,976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2호봉) | 22,186 | 66.8 | 22,186 | 65.2 | 22,186 | 60.0 |
| 기타운영비 | 11,010 | 33.2 | 11,820 | 34.8 | 14,790 | 40.0 |
| 총액 | 33,196 | 100.0 | 34,006 | 100.0 | 36,976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1호봉) | 21,713 | 65.4 | 21,713 | 63.9 | 21,713 | 58.7 |
| 기타운영비 | 11,483 | 34.6 | 12,293 | 36.1 | 15,263 | 41.3 |
| 총액 | 33,196 | 100.0 | 34,006 | 100.0 | 36,976 | 100.0 |
| 150인 | | | | | | |
| 국공립 | | | | | | |
| 인건비(7호봉) | 26,490 | 67.3 | 26,490 | 66.0 | 26,490 | 60.0 |
| 기타운영비 | 12,848 | 32.7 | 13,658 | 34.0 | 17,663 | 40.0 |
| 총액 | 39,338 | 100.0 | 40,148 | 100.0 | 44,153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3호봉) | 22,704 | 64.8 | 22,704 | 63.4 | 22,704 | 57.0 |
| 기타운영비 | 12,309 | 35.2 | 13,119 | 36.6 | 17,124 | 43.0 |
| 총액 | 35,013 | 100.0 | 35,823 | 100.0 | 39,828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2호봉) | 22,186 | 63.4 | 22,186 | 61.9 | 22,186 | 55.7 |
| 기타운영비 | 12,827 | 36.6 | 13,637 | 38.1 | 17,642 | 44.3 |

| | | | | | | |
|----------|--------|-------|--------|-------|--------|-------|
| 총액 | 35,013 | 100.0 | 35,823 | 100.0 | 39,828 | 100.0 |
| 민간개인 | | | | | | |
| 인건비(1호봉) | 21,713 | 62.0 | 21,713 | 60.6 | 21,713 | 54.5 |
| 기타운영비 | 13,300 | 38.0 | 14,110 | 39.4 | 18,115 | 45.5 |
| 총액 | 35,013 | 100.0 | 35,823 | 100.0 | 39,828 | 100.0 |

바. 기타 어린이집 관련

공공형 어린이집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시 지원시 공공형 지원금의 약 54% 정도를 차지하므로 이 정도의 수입 증가가 발생하므로 공공형 지원금 수준 조정이 가능하다.

농어촌 어린이집의 문제는 정원충족률의 차이로 귀결되므로 인건비 추가지원 대상 규모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3. 기타 정책적 대안

가. 보조교사 배치 등 질적 수준 개선

앞에서는 단순히 누리과정으로 증가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보다는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출의 증가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정책 제언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보육교사의 추가 배치이다. 현재 서울시는 월 70만원 추가 지원하면서 단시간 보조교사 채용을 권장하고 있다. 누리 지원금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형편에 따라 종일제 또는 단시간제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교재교구 구입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하겠다.

나. 인건비 지원 비율 산정 방법 개선안

현재 영아반교사는 80%, 유아반교사는 30%를 지원하므로 호봉이 높은 교사가 영아반을 담당하게 된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경력이 높은 교사를 누리과정 교사로 활

용하고자 하는 기변 방향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개선방안은 제1안은 호봉수가 높은 순서대로 80%를 영아반 수만큼 지원하고 그 나머지 유아반 수만큼은 30%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각각의 교사가 자신의 인건비가 몇% 지원되는 알기 때문에 문제발생 소지는 있다.

제2안은 영아반과 유아반 교사 수에 각 지원 비율을 곱하여 평균 지원 비율을 자동으로 산정하여 총 인건비 대비 이 평균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반 구성마다 적용 비율이 달라지지만 전산체계가 질되어 있으므로 행정상 문제는 없다. 현재 기준의 적용방식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교사들 간의 갈등 소지도 줄어들 것이다.

4. 맺는 말

누리과정 추진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기존의 시설보조금을 통한 보육비용 지원 근거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집 재정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인건비 지원 대상·지원 비율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인건비 지원 여부별 어린이집 실제 재정 운영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재정 운영상 차이를 파악한다. 어린이집의 유형별·지역별·규모별 수입 지출 규모 및 재정 수지를 파악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유형을 분석하여 어린이집 규모별로 운영 모형을 설정하고 5세 누리과정 및 2013년 시행 예정인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원의 증가로 인한 재정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원장, 유아·영아반 교사의 인건비 지원 비율 조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미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단순하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인건비 지원 비율은 2013년부터 20% 이하로 조정하고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가 30만원으로 오르면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현재 수준 이상으로의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보다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가정 바람직한 방법은 보조교사 배치를 통한 교사 인적 환경의 개선이다. 추후 2016년 누리과정 기준 단가 30만원으로 증가 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어린이집은 현재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교사 급여를 1호봉 수준으로 주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주기 적절하지 않다.

정원 충족률이 낮은 농어촌 어린이집은 각 인건비 지원 비율을 높이기보다는 전체 인건비 지원금 대비 일정 비율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 현재 농어촌에는 교사 1인 100%를 지원하므로 소규모어린이집은 이러한 지원으로 충분하지만 대규모 어린이집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따라서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김현숙·신은수·유영의·전홍주·노재은(2007). 연령별 적정학급규모를 통한 유아의무 교육대비 표준교육비 산정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박기백·김현숙·김우철·김형준(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한국조세연구원
- 보건복지부(1995-2011).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구조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송신영(2011) 공공형 어린이집 모니터링 및 평가. 보건복지부
- 서문희·최혜선(2010). 2009년 보육정책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제갈현숙·김송이(2010).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공보육 확대를 위한 원칙. 사회공공연구소
- 조병구·조윤희·(2007). 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보고서: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사업. 한국개발연구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의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발행일 2012년 8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 75(계동 140-2)
전화: 02) 2023-8958
팩스: 02) 2023-8951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